

연구보고 2014-02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개선방안

권미경 김길숙 함철규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머리말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국가가 설치하고 관리하는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영유아 부모의 선호는 여전하다. 정부는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를 꾸준하게 확대해오고 있으며, 향후 5년간 316조를 투입하기로 한 사회보장 기본계획에도 국공립어린이집을 매년 150곳 이상 확충해가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하였다.

정부는 제한된 예산으로 최대한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효과를 위해 기존의 신축 방법과 병행하여 민간시설매입, 민관연대, 중·개축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이렇듯 다양화되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상황에서 현재 운용되는 위탁체 선정관리의 기준으로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는데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그와 동시에 보육의 질 제고라는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위탁운영체라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와 운영 주체 사이에 위탁체 선정관리 과정에서 우선점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우선점 사이의 균형 있는 절충점을 찾는 노력도 필요하다.

본 연구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과 관련된 법적·제도적 기준을 검토하고, 선정관리 현황을 파악하며, 선정업무 담당자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함을 토대로 현재 기준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의 투명성 확보와 공공성을 담보하는 정책으로 반영됨을 통해 보육의 질을 제고하는데 기여하리라 기대한다.

연구 과정에 설문과 면담에 참여하여 주신 전국의 지자체 국공립어린이집 업무담당 공무원과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들께 감사드린다. 또한, 연구내용에 대한 자문을 주신 교수님, 육아종합지원센터장 등 많은 분께도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끝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육아정책연구소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혀둔다.

2014년 8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이영

차 례

요약	1
I. 서론	7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7
2. 연구내용	8
3. 연구방법	9
4. 선행연구	11
II.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관련 법적기초	15
1. 관련법 및 기준	15
2. 전국 지방정부 보육조례 분석	19
3. 소결	27
III.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실태	28
1.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유형별 현황	28
2.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유형별 설치 및 계획 현황	29
3. 지방보육정책위원회 구성 현황	30
4. 공개경쟁예외 위탁 현황	32
5. 재위탁 관련 현황	33
6. 소결	37
IV.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적절성 검토	39
1.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기준	39
2.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신규·변경 공통심사 기준표	51
3.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재위탁 공통심사 기준표	59
V.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공공성 제고 노력	68
1.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유형별 고려점	68
2.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로서 사회적협동조합	78

VI.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기준 개선방안	100
1.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100
2. 국공립어린이집 위탁과정	102
3.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표	106
참고문헌	115
부록	117
부록 1. 전국 시군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업무 담당자 대상 조사 설문지	119
부록 2. 국공립어린이집 관련 전국 시군구 현황조사 결과	127
부록 3. 이탈리아 보육협동조합 사례	135

표 차례

〈표 I-3-1〉 설문조사 내용	10
〈표 I-3-2〉 심층면담 및 자문 개요	11
〈표 II-2-1〉 전국 시도별 보육조례 유형	20
〈표 II-2-2〉 국공립어린이집의 최초 위탁 기간	21
〈표 II-2-3〉 기존 수탁자 재위탁 허용여부 및 허용횟수	23
〈표 II-2-4〉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의 정년 연령 규정	25
〈표 II-2-5〉 보육조례 내 수탁 수 제한 규정	26
〈표 III-1-1〉 전국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유형별 개소수	28
〈표 III-2-1〉 전국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유형별 설치 및 계획	30
〈표 III-3-1〉 지방보육정책위원회 구성비율	31
〈표 III-3-2〉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 평균 재임 기간	32
〈표 III-4-1〉 공개경쟁 예외 위탁현황	33
〈표 III-5-1〉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방법	34
〈표 III-5-2〉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적용기준	37
〈표 IV-1-1〉 국공립어린이집 선정기준별 적절성 동의율	40
〈표 IV-2-1〉 신규·변경 공통심사 기준표 중 어린이집 운영계획 항목 및 배점	53
〈표 IV-2-2〉 신규·변경 공통심사 기준표 중 운영체 대표 및 원장 전문성 항목 및 배점	54
〈표 IV-2-3〉 신규·변경 공통심사 기준표 중 운영체의 시설운영 실적 항목 및 배점	56
〈표 IV-2-4〉 신규·변경 공통심사 기준표 중 운영체의 공신력 항목 및 배점	57
〈표 IV-2-5〉 신규·변경 공통심사 기준표 중 운영체의 재정능력 항목 및 배점	58
〈표 IV-3-1〉 재위탁 공통심사 기준표 중 운영체의 시설운영 및 사업 실적 배점 ..	61
〈표 IV-3-2〉 재위탁 공통심사 기준표 중 운영체 대표 및 원장의 전문성 배점 ..	63
〈표 IV-3-3〉 재위탁 공통심사 기준표 중 어린이집 운영계획 배점	65
〈표 IV-3-4〉 재위탁 공통심사 기준표 중 운영체의 공신력 배점	66
〈표 IV-3-5〉 재위탁 공통심사 기준표 중 운영체의 재정능력 배점	67
〈표 V-2-1〉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의 비교	83

〈표 V-2-2〉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설립 현황(2014. 5월말 현재)	84
〈표 V-2-3〉 소관부처별 사회적협동조합 설립현황	85
〈표 V-2-4〉 보육시설운영 및 공동육아를 위한 협동조합 설립현황	85
〈표 V-2-5〉 주별 보육협동조합 수	88
〈표 V-2-6〉 캐나다 보육협동조합 유형	89
〈표 V-2-7〉 캐나다 보육 협동조합 모델	90
〈표 V-2-8〉 린 벨리 유아원의 부모참여 종류	91
〈표 V-2-9〉 센트레타운 부모 협동조합 어린이집 프로그램의 대상 및 보육 시간	92
〈표 V-2-10〉 센트레타운 부모 협동조합 어린이집 프로그램의 보육비	93
〈표 VI-3-1〉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신규·변경) 공통심사 기준표 개선요구	107
〈표 VI-3-2〉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재위탁) 공통심사 기준표 개선요구	111

그림 차례

[그림 IV-1-1] 국공립어린이집 선정기준별 적절성 동의율	40
---	----

부록 표 차례

〈부록 표 2-1〉 전국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유형별 개소수	127
〈부록 표 2-2〉 전국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유형별 설치 및 계획	128
〈부록 표 2-3〉 지방보육정책위원회 구성비율	131
〈부록 표 2-4〉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 평균 재임 기간	132
〈부록 표 2-5〉 공개경쟁 예외 위탁현황	133
〈부록 표 2-6〉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방법	134
〈부록 표 3-1〉 카디아이 어린이집(카라박 프로젝트)	135

요약

1. 서론

가. 연구 목적 및 내용

- 본 연구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과 관련된 현황과 기준을 검토함으로써 국공립어린이집의 공공성을 담보하면서 보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연구목적에 따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음.
 - 현행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기준과 관련 법령 및 보육조례분석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실태 파악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기준 및 공통심사기준표와 재위탁 공통심사 기준표 적절성 검토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유형과 공공성 확보를 위한 방안 모색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개선방안을 위탁체, 위탁과정, 선정 관리기준으로 구분 고찰

나. 연구방법

- 문헌연구 및 관련자료 분석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와 관련한 법적·제도적 현황을 파악하고 선행연구를 고찰함.
 - 사회적협동조합 사례를 온라인 자료 검색 등의 방법으로 수합 및 분석함.
- 조사연구
 - 전국의 229개 지자체의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위탁체 선정 기준에 대한 적절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현재 사용 중인 위탁체 선정 관련 보육조례를 수합함.

사례연구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사례 및 보육을 중심으로 한 협동조합의 운영사례 고찰

심층면담

- 설문의 구성과 내용의 적절성 파악위해 지자체 국공립위탁 업무담당자 대상으로 면담과 개선 방안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전문가 간담회를 실시함.

선행연구는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운영과 더불어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연구를 고찰함.

2.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관련 법적기초

가. 관련법 및 기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 24조에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였고,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 2는 별도의 표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기준을 제시하고, 동 시행규칙 제 25조는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위탁의 취소 기준을 명시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위탁공고, 위탁신청서와 첨부 서류, 서류기재 사항, 위탁계약의 체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 항목, 재위탁규정, 위탁사항 변경, 운영위탁 근거 등을 제시함.

나. 전국 지방정부 보육조례 분석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 시 적용하는 지자체의 조례의 명칭과 그 수록 내용에 다소 차이 보이며, 2014년 현재 54.9%인 123개의 조례에서 위탁기간을 5년으로 명시하여 영유아보육법을 반영함.

보육조례에 재위탁을 허용하는 곳은 199곳으로 전체의 88.8%에 달하고, 79%에서 원장의 정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63건(72.8%)의 지자체 조례에서 수탁 수 제한에 대한 규정이 없었고, 2개로 제한 규정을 둔 경우가 38건(17%), 1개는 22건(9.8%)의 순서로 나타남.

3.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실태

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유형별 현황

- 2014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에 답한 205개 지자체의 전체 국공립어린이집 2,140개소로 개인에게 위탁한 경우가 48.8%로 가장 많았고, 사회복지법인 15.8%, 종교법인이 12.1%의 순으로 나타남.

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유형별 설치 및 계획 현황

- 최근 3년을 기준으로 전체 565개의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 사례 중 신축하는 경우가 40.7%로 여전히 가장 많았고, 리모델링이 20.7%, 민관연대가 18.2%로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함.

다. 지방보육정책위원회 구성 현황

- 지방보육정책위원회 구성비율은 보호자 및 공익 대표 47.1%, 보육전문가 17.7%, 관계공무원 15%, 어린이집원장 10.1%, 보육교사 8.6%로 나타나 전체 유형별 정원 권장 기준이 잘 준수되고 있으며, 위원 재임기간은 2년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최대 4년까지 재임하는 경우 있음.

라. 공개경쟁예외 위탁 현황

- 전체 80건의 사례 중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에게 위탁한 경우가 57건(71.3%)으로 가장 많음.

마. 재위탁 관련 현황

- 재위탁 방법은 ‘현재 운영 위탁자에 대해 단독평가 후 재위탁하는 경우’가 69.4%로 가장 많았고, ‘완전공개 경쟁하는 경우’가 22%로 조사되었고, ‘국공립어린이집 공통심사 기준표’를 그대로 적용한다는 응답이 52.2%, 기준표를 기초로 기타 보완 기준을 추가로 적용하는 경우도 25.4%, 지자체의 조례로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는 7.3%로 나타남.

4.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적절성 검토

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기준

- 선정기준 중 심사 시 현장 확인실시(98%), 위탁관련 절차와 방법, 결과를 공개하는 것(97.1%)과 신청 운영체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기피신청이 가능하다는 부분(97.1%)에 대해 적절하다는 비율이 높음. 선정시기(79.5%), 선정방법(84.4%), 과도한 연령제한 금지(85.4%), 위탁기간(85.9%) 등의 현 기준은 상대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음.

나.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신규·변경 공통심사 기준표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신규·변경 공통심사 기준표는 어린이집 운영계획(40점), 운영체의 대표 및 원장의 전문성(35점), 운영체의 시설운영 실적(10점), 운영체의 공신력(10점), 운영체의 재정능력(5점) 등 5개 항목 총점 100점으로 구성됨.

다.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재위탁 공통심사 기준표

- 재위탁 심사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 운영실적을 평가하는 것이므로 운영실적의 비율을 더 높여 40~50%까지 강화하여도 좋다는 의견 있음.
- 항목 평가 총점이 70점 이상인 경우 재위탁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에 대해 80점으로 기준을 강화하자는 의견 있음.

5.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공공성 제고 노력

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유형별 고려점

- 민간어린이집 매입의 경우
 - 민간매입을 확대하고자 한다면 적정매입가의 기준 개선이 필요함.
 - 이용자인 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존 운영자가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후 위탁체로의 참여 여부에 반영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음.

리모델링의 경우

- 공동주택의 경우, 최초 위탁을 기준 운영자에게 주나 그 기간을 제한하고 있어 공공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임대료 문제 등으로 입주자대표와의 조율이 어려움을 고려하여 신규 단지가 생기는 곳을 중심으로 처음부터 설치함이 효율적으로 여겨짐.

민관연대 또는 협력을 하는 경우

- 기업의 경우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을 통해 기업이미지의 홍보, 기업체 근로자 자녀의 일정비율 우선입소 혜택, 세금감면 등을 기대함.
- 종교시설이나 기업체 등 민간의 협력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최초 계약 시 예상되는 영향력의 배제를 문서화할 필요 있음.

나.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로서 사회적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은 설립의 목적에 있어서는 비슷하나,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이탈리아의 볼로냐는 협동조합 수가 8000개에 이를 정도로 활성화 되어 있고, 카라박 프로젝트는 협동조합들이 컨소시엄을 이루고 지방정부가 합작하여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업임.
- 캐나다에서는 유아원 협동조합(preschool co-op)이 가장 일반적인 유형의 보육협동조합임.

사회적협동조합의 강점

- 협동조합의 평등한 의결권을 반영할 수 있으며, 부모가 자녀를 보육 현장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해 증진 및 부모역할 기술 습득 촉진 가능함.
- 비영리법인으로 보육시설의 비영리화를 보장하며, 협동조합 간 컨소시엄으로 인한 효과의 극대화를 도모하고, 잉여금을 다양한 측면에 사용가능.

사회적협동조합의 제고사항

- 조합원의 출자금 모집의 한계 및 조합원의 출자금 유출 문제점과 더딘 의사결정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안정된 자본금 마련을 위한 법적 규제 마련,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시 사회적협동조합에 우선권 제공,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다양한 세제혜택 제공, 보육협동조합 관련 부서 마련임을 건의함.

6.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기준 개선방안

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 공공성 강화를 위한 비영리 법인 우선 위탁 고려할 것을 제언함.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의 수탁 수 제한에 대한 규정을 보육조례에 명시하고 위탁체의 총 위탁 기간제한 규정 마련이 필요함.

나. 국공립어린이집 위탁과정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선정과정에 있어서 정치적 이해관계가 개입될 소지가 있으며, 보육정책위원회의 대표성, 전문성, 의결권 문제 제기됨.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제시된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 비율을 조정하자는 의견이 지배적으로 나타났고, ‘공익을 대표하는 자’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보육정책위원의 선정과정과 결과 공개가 요구됨.
- 지원기관을 통해 그 공모내용, 자격, 응모과정준비 등을 관심 있는 위탁 회망 주체들에게 정기적으로 안내하는 기회를 마련할 것을 제언함.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관리체계에 포함되는 정관, 이사회 의결사항, 담당부서 및 담당자의 역할, 인사 및 회계 운영관리, 위탁전입금 지원 계획, 자체평가 등 운영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관련 자료 등 참고기준 자료의 보강이 필요함.
- 재위탁 심사 시 현장관찰 및 부모의견조사 등 평가 방법의 다면화와 재위탁 공통심사 기준표 적용의 제도화, 위탁관리 모니터링 강화가 요구됨.
- 합리적인 평가의 기준안을 명시함은 정치적 외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며, 위탁과정의 공정성, 투명성을 증진함으로써 공공성을 확보하는 하나의 방안임.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국가가 설치하고 관리한다는 점과 보육 서비스에 대한 질적 수준에 대한 신뢰로 인해 부모의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선호는 여전하다. 정부가 꾸준히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를 확대하여 옴에도 불구하고 그 수요에 비해 공급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이다.¹⁾ 이에 정부는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신축뿐만 아니라 민간시설의 매입, 리모델링, 민관연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국공립어린이집의 보육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역량 있는 위탁체의 선정이 필수적이다. 최근 국공립어린이집이 확장되는 유형과 추세를 감안할 때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전담할 위탁체의 선정과 관리를 위해 마련된 법적기준을 비롯하여 선정기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단일 기준으로 적용 중인 기준이 최근 다양화된 국공립어린이집의 상황에 일괄 적용함이 적절하지 않아 그 개선책 마련에 대한 요구가 높다.

기본적으로 전문성과 경험을 지닌 위탁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도모하고자 영유아보육법과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권장 표준안을 보육사업안내를 통해 제시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과 관련된 공통된 기준을 마련, 적용하도록 권장함으로써 전국적인 통일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고 위탁체 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도모하고 있다(2014 보육사업안내:14). 그러나 위탁체 선정과 관리 기준은 동일하더라도 지자체의 특성을 반영함에 따른 운용의 차이, 다양화되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상황으로 인해 현재 운용되는 기준을 적용하면서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는데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전국의 229개 지자체(2014년 6월 기준)는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체 선정관리

1) 2013년 말 현재 전체 43,770개 어린이집 중 5.3%인 2,332개의 국공립어린이집이 운영 중임 (2013 보육통계).

를 포함하여 지자체의 보육행정에 대한 법적 기초로 보육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한다. 전국 지자체 보육조례를 수합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와 관련된 부분을 분석하여 경향성을 파악함으로써 공공성 확보를 위한 시사점의 도출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실질적 선정 심사를 담당하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과 임기에 대한 통계와 그 고찰도 필요하다.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의 선정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공개경쟁으로 수탁자를 선정함이 원칙이나, 단서 조항에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 수탁 심의하고 있어 그 예외 조항²⁾ 운영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과 관련된 현황과 기준을 검토함으로써 국공립어린이집의 공공성을 담보하면서 보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전국 지자체의 보육조례를 수합 분석하고, 최근 확대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체 및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현황을 파악함으로써 현행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2. 연구내용

보육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현행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과 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기준과 관련 법령 및 선행연구를 문헌연구를 통해 검토한다.

둘째, 실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의 선정이 지방자치단체 보육관련 조례에 따름을 고려하여 전국 시군구 지자체의 위탁 기준인 보육조례를 수합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와 관련된 부분을 분석하고 그 경향성을 파악한다.

2) 예외조항: ① 민간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로 전환하는 경우 기부채납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 ②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 ③ '주택법'에 따라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하기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

셋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실태를 유형별 현황, 설치 및 설치계획,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 재위탁 관련 현황을 중심으로 파악한다.

넷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공통심사기준표와 재위탁 공통심사 기준표에 대해 시군구 업무담당자, 육아종합지원센터장,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 보육관련 교수 등 보육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적절성을 검토한다.

다섯째, 최근 다양한 형태로 확충되는 국공립어린이집의 유형을 파악하고 공공성 확보를 위해 위탁체 선정 시 고려할 점을 검토한다. 구체적으로 민간시설 매입,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 리모델링, 민관연대 등 확충 유형별 사례를 통해 그 특성을 고찰한다. 또한, 보육을 중심으로 한 협동조합 운영 국내외 사례를 찾아 고찰하여 사회적협동조합의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로서의 가능성을 가늠한다.

여섯째, 연구내용을 종합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개선방안을 제시한다.

3. 연구방법

가. 문헌연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과 관련한 법적·제도적 현황 파악을 위한 기초 정보를 수집한다. 국공립어린이집 위탁관련 선행 연구를 고찰하였다. 또한 문헌연구의 방법으로 해외의 관련 기준 및 우수사례, 보육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협동조합 사례 수집 및 분석하여 그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나. 조사연구

1) 조사대상 및 기간

전국의 229개 지자체의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2014년 5월 20일부터 6월 10일까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2) 조사내용

본 연구를 위한 설문지와 함께 관할 지자체의 지방보육조례를 첨부하여 수합

하였다. 조사내용은 <표 I-3-1>과 같다. 조사한 설문지는 <부록 1>로 제시한다.

<표 I-3-1> 설문조사 내용

조사항목	세부내용
1. 일반적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속 시군구 - 도시규모(대도시/중소도시/읍면지역)
2. 첨부 요청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관련 보육조례 - 공통심사기준표 외 보완 또는 특화한 심사지표 - 구성 인원수
3. 지방보육정책원회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 소속기관 - 재임기간 - 유형별 국공립어린이집 개소수 (직영/사회복지법인/학교법인/종교법인/재단법인 /단체/개인/사회적협동조합/기타) - 사회적협동조합 위탁운영 사례
4.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현황 확충 및 계획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3년~2015년 연도별 신축, 증개축, 민간매입, 민관연대, 리모델링 국공립어린이집 개소수
5. 최근 3년간 공개경쟁 예외 조항 해당 사례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어린이집 기부채납 - 건물 및 부지의 기부채납 또는 무상사용 수락 - 주택법상 설치한 민간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7. 재위탁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위탁 방법 - 재위탁 기준
8. 국공립어린이집 선정관리 기준 검토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개경쟁예외조항, 선정시기, 선정방법, 결과공개, 위탁기간, 운영체 신청자격, 운영조건, 선정심사위원회, 심사원칙, 심사결정
9.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공통심사 기준표 개선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변경의 경우 - 재위탁의 경우

다. 사례연구

민간시설매입,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 리모델링, 민관연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확충되는 국공립어린이집의 대표적인 사례조사를 통해 각 유형에서 발생 가능한 국공립어린이집의 공공성 저해요인을 찾고 그 대안을 모색하였다.

보육을 중심으로 한 협동조합의 운영사례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사례를 발굴하여 사례를 분석하고, 사회적협동조합의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로서의 가능성 진단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라. 심층면담

1) 개별 심층면담

연구내용을 반영한 설문의 구성과 그 내용의 적절성을 파악하기 위해 지자체 국공립위탁 업무담당자 3인을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였다.

2) 집단심층면담(Focus Group Interview)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기준 개선 방안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전문가 간담회를 실시하여 연구 전반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표 1-3-2〉 심층면담 및 자문 개요

구분	대상 및 일시	질의 내용
개별 면담	보육담당공무원(1인) (4.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내 국공립어린이집 현황 및 특징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개선요구
	보육담당공무원(2인) (4.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적협동조합의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에 대한 생각 -질문지 수정 및 응답 가능성 탐진
서면 자문	육아종합지원센터장(4인) 보육 관련학과 교수(3인) (6.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군구 담당자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수렴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선정기준안(신규/재위탁)에 대한 개정요구 수렴
FGI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유형별 위탁자(7.7)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로서의 경험공유 -공개경쟁 예외 사례에 대한 논의 -국공립어린이집 공공성 제고를 위한 방안

4. 선행연구

본 연구와 관련연구로는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 및 운영과 더불어 새로이 위탁운영 주체로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는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연구를 들 수 있다.

가.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 운영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과 운영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현황 파악을 토대로 한 개선방안 모색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많지는 않지만 2001년 이후 2013년까지 지속적으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국공립어린이집의 공공성 확보에 초점을 둔 연구는 그 법적기초가 되는 보육조례 분석과 현황 파악을 통한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서문희·신나리·유은영, 2007; 서문희·이상현·임유경, 2001; 서수경·유정민, 2013; 양미선·임지희, 2012)

서문희·이상현·임유경(2001)은 94개 시군구의 보육조례 분석과 운영방식 현황, 위탁체 선정의 과정을 분석하여 위탁의 투명성 확보와 보육 인력의 신분 안정성이라는 원칙을 중심으로 단기와 장기로 구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운영주체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개인위탁보다는 법인, 단체의 위탁이 바람직함과 위탁관련 평가의 법적제도화를 제의했다. 위탁기간의 합리적 설정, 위탁재계약 제도의 확립, 평가제도의 활용, 위탁금 및 운영체 부담금의 합리적 조정과 더불어 장기적 관점에서 위탁 및 시군구 직영제도의 전면개편을 제시하였다.

2007년(서문희 외, 2007) 연구에서는 국공립보육시설의 확충과 기능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위탁운영이 논의되었다. 국공립보육시설의 위탁운영 제도와 실태에 대해 위탁주체, 위탁기간 및 횟수, 공개경쟁, 심의 기준, 선정기준, 위탁자 기여로 나누어 고찰하고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공공연하게 요구되는 위탁체의 기여가 추후 위탁시설의 운영에 영향을 미침을 고려하여 제고할 것과 보육 시설장의 연령 상한선을 둘 것을 강조하였다.

양미선·임지희(2012)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형황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연구에서 위탁운영에 대해 고찰하였다. 보육조례와 제도를 분석하고, 시군구보육담당자, 어린이집 원장, 보육전문가 대상의 조사에 근거하여 위탁 운영의 실태와 요구를 검토하였다. 그를 통해 영유아보육법상 위탁기간의 조정, 위탁회수 제한기준의 필요성, 재위탁방법의 개선을 제안하였다. 또한 재위탁시 선정기준표 적용의 제도화와 선정기준 심사항목 및 배점의 조정 필요성, 심사 자료의 통일, 심사 시 현장 관찰 의무화, 위탁운영 관련공시의 제도화를 건의하였다.

서울시의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현황, 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 연구(서수경·유정민, 2013)에서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국공

립어린이집 위탁체, 위탁현황 선정기준과 과정의 공공성 확보의 문제를 고찰하였다. 개선방안으로 위탁체의 책무성 강화를 위해 신청기준을 책정할 것, 개인 위탁을 제외할 것, 보육분야에 전문성 있는 법인으로 선정할 것, 제출서류 강화,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의 활성화 등을 위탁체 자격기준개선요인으로 제언하였다. 위탁심사과정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서는 선정과정 및 결과의 공시 의무화, 보육정책위원회 구성을 위한 심사단의 구성, 운영과정의 평가가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심사지표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정량평가와 정성평가의 구분을 확실하게 할 것, 재위탁을 폐지하고 공개경쟁에 의한 신규위탁, 재위탁 심사의 다각화를 제시하였다.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다각화를 위한 노력으로 공공기관과 협동조합의 위탁 운영의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자의 입장에서 위탁 운영과정을 분석하는 질적 연구들(박윤자·이대균, 2013; 박윤자·이대균, 2014)도 이루어졌다. 면담내용을 통해 위탁 어린이집 원장으로의 어려움을 재위탁 준비과정의 어려움, 탈락으로 인한 명예실추 및 실직의 두려움, 기존교사와의 관계 어려움, 관련기관의 지나친 관리 감독으로 구체화하였다. 그 대처방안으로 전문성의 신장, 원만한 관계의 형성으로 제시하였다.

나. 사회적협동조합

최근 사회적협동조합의 활성화가 추진됨에 따라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비영리 법인형태의 국가 및 지자체 위탁사업을 주로 하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통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 연구(최윤선·김미정, 2013)가 이루어졌다. 선행연구(최윤선·김미정, 2013)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의 현안문제를 도출하고, 어린이집 전문위탁 사례로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과 푸르니보육지원재단, 한솔교육희망재단, 핸즈영유아지원센터의 사례를 소개하였다. 어린이집 운영의 전문성을 갖춘 기업의 부재로 인해 기존 사회적 기업의 활용가능성이 낮음을 지적하였다.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을 목적으로 한 사회적 기업의 설립가능성에 대해서는 사회적 기업의 인증요건이 미충족되어 어려움을 확인하였고, 사회적협동조합의 기준요건이 충족 가능하여 설립이 가능함을 제언하였다. 이에 기초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을 위한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과정과 현안을 제시하면서 영유아보육법과 지역조례 개정 요구도 담았다.

서울시(2013)에서는 사회적협동조합 활성화를 도모하면서 사회의 다양한 분야

에서 진행되고 있는 협동조합의 운영사례집을 발간하였다. 협동조합의 정의와 특성, 국제협동조합의 사례를 망라하는 내용으로 돌봄을 실천하는 협동조합으로 공동육아 협동조합인 신촌 우리어린이집, 아이쿱인천생협어린이집과 국외사례들을 소개하였다.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선행연구는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체로 사회적협동조합이 선정되기 시작하는 시점에서 이에 대한 운영의 지속성과 공공성의 확보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여 현재까지의 현황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제공한다.

II.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관련 법적기초

본 장에서는 영유아보육법 및 2014년 보육사업안내를 중심으로 중앙 정부에서 마련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고, 전국 229개 시군구³⁾ 지방정부의 관련 보육조례를 근거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의 법적 기준을 고찰하고자 한다.

1. 관련법 및 기준

가.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지 않고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운영하게 함은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고,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운영으로 보육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2014 보육사업안내, 2014:14).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운영 및 위탁은 영유아보육법 제12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와 어린이집 운영기준으로 제시된 동법 제24조 2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근거에 준한다.

영유아보육법 제24조 2항은 위탁방법의 기준으로 최초 위탁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함을 명시하였다.

- 민간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부채납 이전에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
-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
- 「주택법」에 따라 설치된 민간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3) 2014년 5월 1일 기준

경우 전환하기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

나.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는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에 대한 기준이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 2는 별도의 표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동 시행규칙 제25조는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위탁의 취소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기준의 상세 내용을 보육사업안내에는 항목별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1)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에 제시된 9개 항의 순서대로 그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위탁공고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지자체 장은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탁기준, 절차 방법 등을 해당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나) 위탁신청서와 첨부 서류

위탁운영을 받으려는 자는 전자문서로 된 신청서와 함께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지자체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법인의 경우는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
- 단체인 경우는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
- 개인의 경우는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
- 어린이집의 원장과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 포함)

4) 영유아보육법령집(보건복지부, 2014.3)을 기초로 구성함.

다) 서류기재 사항확인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지자체 장은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를 확인한다.

라) 위탁계약의 체결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지자체 장은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발급한다.

마)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 갈음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가 수탁기관을 결정할 수 있다.

바) 심의 항목

심의 항목은 보육관련 사업운영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어린이집 운영계획, 대표자 및 어린이집의 원장의 전문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사) 재위탁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지자체 장은 기존 수탁자의 운영실적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기존 수탁자에게 어린이집의 운영을 재위탁 할 수 있다.

아) 위탁사항 변경

수탁자가 어린이집의 대표자 또는 원장이나 어린이집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위탁사항 변경 신청서를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지자체 장에게 제출한다.

자) 운영위탁 근거

어린이집 운영위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립어린이집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고, 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지자체의 조례로 정한다.

2)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 2(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관리 기준)⁵⁾

별표8의 2로 2012.2.3. 신설된 기준으로 일반기준, 심사기준, 심사결정, 그 밖의 조례기준을 제시한다.

가) 일반기준

- 공개경쟁을 통해 최초로 선정하여 신규 위탁하는 경우 개원 예정일 6개월 전까지 선정한다.
- 위탁과 관련한 모든 절차, 방법 및 심의 결과는 공개한다. 이 경우 위탁을 하는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활용할 수 있다.
- 위탁기간은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한다. 다만, 원장의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등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신청자격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려는 운영체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어야 한다. 이 경우, 위탁운영을 신청하려는 운영체의 장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 제28조 각 호의 취약보육(영아·장애아·다문화아동·시간연장형 보육) 중 2 가지 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보육수요 조사 결과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취약보육 실시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심사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실시한다. 다만,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갈음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로서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및 위원회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5) 영유아보육법령집(보건복지부, 2014.3)을 기초로 구성함.

- 집합심사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 심사결과, 신청 운영체가 모두 부적격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다시 공개모집을 하여 위탁체를 결정한다.

나) 심사기준

심사항목 및 항목별 점수는 어린이집 운영계획(40점), 운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35점), 운영체의 운영실적(10점), 운영체의 공신력(10점), 운영체의 재정능력(5점)을 기준한다. 세부항목 등 심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 심사결정

개별위원 점수의 최고·최저점수는 점수합산에서 제외하고 합산 평균 70점 이상의 최다 득점을 받은 운영체를 위탁체로 결정한다. 운영체의 점수가 모두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다시 공개모집을 하여 위탁체를 결정한다. 심사결과 동점이 나온 경우에는 제2호의 심사항목 중 어린이집 운영계획, 운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운영체의 운영실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한다.

2. 전국 지방정부 보육조례 분석

지자체는 보육에 관한 자치조례를 제정하여 보육서비스의 제반 행정과 관리에 대한 기준을 두고 있다.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위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립어린이집의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고, 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지자체의 조례로 정한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 제9항). 본 연구에서는 지자체의 보육관련 조례를 수합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의 선정과 관리를 중심으로 한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기준과 그 경향성을 고찰하고자 2014년 5월 현재 전국의 전체 229개 지자체 중 보육관련 조례를 갖고 있는 224개의 조례 전체를 수합하였다.⁶⁾ 이를 기초로 보육조례 유형, 위탁기간 규정, 재위탁 여부 및 허용 횟수, 원장 정년, 수탁 수 제한 등을 중심으로 분석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6) 충남 부여, 전북 임실, 전남 강진, 경북 상주와 군위 지역은 보육 관련 조례 없음.

가. 보육조례 유형

국공립어린집의 위탁 시 적용하는 지자체 조례의 명칭과 그 수록 내용에 다소 차이를 보인다. 전체 중 60.2%인 135개 지자체에서는 '보육조례'라는 포괄적 범주 안에 위탁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39.8%에서는 보육조례이외의 다른 명칭을 사용하는데 조례명은 내용에 따라 '보육 및 지원', '어린이집(시설) 운영 및 지원', '설치 및 운영', '위탁운영' 등 크게 몇 가지로 유목화 할 수 있다.

〈표 II-2-1〉 전국 시도별 보육조례 유형

단위: 사례 수(%)

전체 224(100)	보육조례	타 조례	타 조례 유형
	135(60.2)	89(39.8)	
서울	20	5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보육 및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조례 어린이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부산	4	12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보육시설 또는)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어린이집 조례
대구	3	5	공립어린이집 설치 운영 조례
인천	9	1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광주	5	0	-
대전	1	4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공립어린이집 운영 조례 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울산	3	2	보육시설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조례
세종	1	0	-
경기	27	4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시립어린이집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강원	16	2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충북	9	3	어린이집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공립보육시설 운영 조례
충남	12	2	보육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공립보육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

(표 II-2-1 계속)

전북	7	6	-
전남	2	19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공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공립어린이집 운영 조례
경북	9	12	시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공립)어린이집 운영 조례 국공립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경남	10	8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주	1	0	-

주: 전국 지자체 보육관련조례를 수합하여 분석한 결과임.

양미선 외의 연구(2012:38)에서 보육조례의 비율이 약 50%이었으나, 현재 60% 정도로 증가하여, 점차 위탁운영과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에 대한 부분을 '보육조례'로 통합하여 제정하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개칭한 상황이나 보육관련 조례명에 아직까지 어린이집을 보육시설로 칭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 명칭의 개정이 필요해 보인다.

나. 위탁기간 규정

위탁기간은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한다.⁷⁾ 이는 2012년 이전의 '5년 이내'라는 부분이 '5년으로' 바뀐 것으로, 2014년 현재 54.9%인 123개의 조례에서 위탁기간을 5년으로 명시하여 영유아보육법을 반영하고 있다.

〈표 II-2-2〉 국공립어린이집의 최초 위탁 기간

지역	1년	2년	3년	5년	단위: 사례 수(%)	
					관련규정 없음	계
전체	1(0.4)	2(0.9)	94(42.0)	123(54.9)	4(1.8)	224(100)
서울	-	-	4	21	-	25
부산	-	-	9	7	-	16
대구	-	-	3	5	-	8
인천	-	-	9	1	-	10
광주	-	-	3	2	-	5

7)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 2

(표 II-2-2 계속)

지역	1년	2년	3년	5년	관련규정 없음	계
대전	-	-	1	2	2	5
울산	-	-	1	4	-	5
세종	-	-	-	1	-	1
경기	-	-	12	19	-	31
강원	-	-	10	8	-	18
충북	1	-	4	6	1	12
충남	-	1	6	7	-	14
전북	-	-	3	10	-	13
전남	-	1	11	9	-	21
경북	-	-	13	7	1	21
경남	-	-	5	13	-	18
제주	-	-	-	1	-	1

주: 전국 지자체 보육관련조례를 수합하여 분석한 결과임.

2012년 조사(양미선 외, 2012:92)할 당시에는 3년으로 규정한 비율이 89.8%이었으나, 2014년 현재에도 여전히 42%인 94개 지자체에서는 3년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의 조례 개정 시에는 영유아보육법을 반영하여 점차 5년으로 규정을 변경하는 추세이다. 이는 최초 위탁기간을 의미하며, 재위탁 허용 여부와 기준에 따라 실제 위탁기간은 결정된다.

다. 재위탁 여부 및 허용 횟수

보육조례에 재위탁을 허용하는 곳은 199곳으로 전체의 88.8%에 달했다. 규정이 없는 곳이 약 10%임을 고려하면, 실제로 재위탁을 불허함을 조례로 명시하고 1회로 수탁을 제한하는 비율은 1.3%로 극히 미미하였다.

재위탁의 허용횟수에 대한 규정을 찾아본 결과, 이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가 약 60% 정도이며, 1회 재위탁 허용 36.6%, 2회 허용이 4.9%로 나타났다. 위탁기간을 5년을 기준으로 볼 때, 1회 허용하는 경우는 총 10년을 운영하게 됨을 뜻한다.

〈표 II-2-3〉 기준 수탁자 재위탁 허용여부 및 허용횟수

지역	재위탁 허용여부			재위탁 허용횟수			단위: 사례 수(%)
	허용	불허	규정없음	1회	2회	규정없음	
전체	199(88.8)	3(1.3)	22(9.9)	82(36.6)	11(4.9)	131(58.5)	
서울	25	-	-	14	-	11	
부산	15	-	1	5	2	9	
대구	8	-	-	-	1	7	
인천	9	1	-	-	5	5	
광주	5	-	-	3	-	2	
대전	2	-	3	-	-	5	
울산	5	-	-	4	-	1	
세종	1	-	-	1	-	-	
경기	25	1	5	15	1	15	
강원	16	-	2	8	1	9	
충북	9	1	2	3	-	9	
충남	14	-	-	6	1	7	
전북	11	-	2	3	-	10	
전남	18	-	3	6	-	15	
경북	18	-	3	1	-	20	
경남	17	-	1	12	-	6	
제주	1	-	-	1	-	-	

주: 전국 지자체 보육관련조례를 수합하여 분석한 결과임.

다음은 위탁기간과 재위탁 여부와 재위탁 허용회수를 규정하는 보육조례의 다양한 원문 문구의 예8)이다.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평가실적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2회 이상 재계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다.”(경남 진주시)

“위탁 운영하는 기간은 변화하는 보육정책에 빠르게 대응하며 발전적인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하여 3년으로 하되 기간 만료 시에 재위탁할 수 있다. 다만, 같은 어린이집의 위탁횟수는 3회(총9년)로 한다.”(부산 수영구)

“위탁운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할 수 있다. 다만, 비영리법인·단체 및 기관에 위탁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충남 흥성군)

8) 전국 지자체 관련 보육조례 원문을 검토하여 관련 내용의 표기 사항을 인용함.

“위탁기간은 최초 위탁인 경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8의 2에 따라 5년으로 하고, 재위탁인 경우는 3년으로 하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 제7항에서 정하는 평가 기준에 따라 업무실적을 평가한 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경기 고양시)

“시설의 재위탁은 한 차례만 한다. 다만, 기부채납 또는 무상임대 등의 방법으로 토지 또는 건물을 지원한 단체, 개인의 경우 최초 위탁하고 협약 기간에 한해 재위탁 할 수 있다.”(서울 강서구)

라. 원장 정년 규정

선행연구(서수경 외, 2013:43)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정년규정이 자체별로 다르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정년기준에 따르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보육관련 조례에 원장의 정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지를 확인한 결과, 전체의 79%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을 두고 있지 않았다. 정년에 대한 규정을 두는 경우는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을 기준으로 「지방공무원법」에 준하여 60세로 제시한 경우가 31건(13.8%)로 가장 많았고, 65세가 13건(5.8%), 61세로 정한 것이 3건(1.3%)이었다. 일부 조례에는 원장과 교사(종사자)의 연령을 제한하는 기준을 공무원 5급과 6급에 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국공립어린이집의 원장의 정년에 대해 규정한 보육조례의 원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공립보육시설 종사자의 정년은 「지방공무원법」 상의 정년 규정을 준용하되 시설장은 5급 이상 공무원의 규정에 의하며 보육교사는 6급 이하 공무원의 규정에 따른다.”(충북 증평군)

“원장 및 종사자의 정년은 「지방공무원법」에 준하여 각각 60세 및 57세로 한다.”(경북 봉화군)

“원장의 신규임용 연령은 만 30세 이상으로 하고, 정년은 지방일반직 6급 공무원에 준한다.”(경북 김천시)

“보육교직원의 근무상한 연령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에 해당하는 연령으로 한다.”(전남 순천시)

〈표 II-2-4〉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의 정년 연령 규정

지역	60세	61세	65세	단위: 사례 수(%)	
				관련규정	없음
전체	31(13.8)	3(1.3)	13(5.8)	177(79.0)	
서울	-	1	5	19	
부산	1	-	2	13	
대구	-	-	-	8	
인천	-	-	-	10	
광주	-	-	-	5	
대전	1	-	-	4	
울산	-	-	-	5	
세종	-	-	-	1	
경기	1	-	1	29	
강원	1	1	-	16	
충북	2	-	-	10	
충남	-	-	-	14	
전북	-	-	1	12	
전남	5	-	4	12	
경북	11	-	-	10	
경남	9	1	-	8	
제주	-	-	-	1	

주: 전국 지자체 보육관련조례를 수합하여 분석한 결과임.

라. 수탁 개수 제한 규정

위탁체가 수탁 받을 수 있는 개수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163건(72.8%)의 지자체 조례에서 수탁 수 제한에 대한 규정이 없었고, 2개로 제한 규정을 둔 경우가 38건(17%), 1개는 22건(9.8%)의 순서로 나타났다.

제한을 두는 경우는 개인 위탁자의 수탁 개수를 제한함이 일반적이다. 서울 동대문구와 광진구를 비롯한 몇몇 지자체⁹⁾는 위탁체가 개인 또는 단체로 구분하여 차등적인 제한을 두기도 하였다.

9) 서울 광진구, 서울 동대문구, 경기 시흥시가 해당함.

〈표 II-2-5〉 보육조례 내 수탁 수 제한 규정¹⁾

지역	1개	2개	3개	단위: 사례 수(%)	
				관련규정 없음	계
전체	22(9.8)	38(17.0)	1(0.4)	163(72.8)	224(100)
서울	2 ²⁾	7 ³⁾	1	15	25
부산	-	-	-	16	16
대구	-	-	-	8	8
인천	-	-	-	10	10
광주	-	1	-	4	5
대전	-	-	-	5	5
울산	-	-	-	5	5
세종	-	-	-	1	1
경기	9 ⁴⁾	12	-	10	31
강원	1	7	-	10	18
충북	2	-	-	10	12
충남	-	4	-	10	14
전북	-	1	-	12	13
전남	3	-	-	18	21
경북	-	2	-	19	21
경남	5	4	-	9	18
제주	-	-	-	1	1

1) 전국 지자체 보육관련조례를 수합하여 분석한 결과임.

2) 서울 광진구 : 개인 1개 / 단체 2개

3) 서울 동대문구 : 개인 2개 / 단체 3개

4) 경기 시흥시 : 개인 1개 / 단체 2개

국공립어린이집 수탁 수 제한에 대한 보육조례 원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군수는 수탁자가 개인일 경우 군의 관할구역 안에서 2개소 이상의 어린이집을 위탁할 수 없다.”(강원 정선군)

“시장은 수탁자 1명에게 시의 관할구역에서 2개소 이상의 보육 시설을 위탁할 수 없다. 다만, 24 시간 어린이집 등 특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경기 이천시)

“구청장은 법인 및 단체에게는 3개소 이상, 개인에게는 2개소 이상의 보육시설을 위탁 운영할 수 없다.”(서울 동대문구)

“시장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 수탁자에게 시의 관할 구역에서 1개소 어린이집만 위탁할 수 있다.”(경남 통영시)

3. 소결

국공립어린이집의 질적 수준의 제고를 위해 어린이집 위탁체의 선정관리에 대한 기준을 영유아보육법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하여 명시하고 있다. 본장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보육조례 분석을 통해 다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체 선정관리를 포함하는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지원에 대한 내용을 포괄적으로 담은 ‘보육조례’라는 명칭으로 관련조례명이 점진적으로 변화되는 추세를 알 수 있었다. 현재 전체의 60.2%의 지자체에서 ‘보육조례’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39.8%에서는 타 조례명을 사용하고 있다.

둘째, 전체 위탁기간에 대한 상한선 마련이 필요하다. 조례 상 위탁기간을 5년으로 규정한 경우(54.9%)가 가장 일반적이다. 그러나 사실상 재위탁을 불허하는 경우는 단지 1.3%이고, 재위탁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경우(88.8%)가 많아 실질 운영기간은 훨씬 길 수 있다. 원장에게는 예측가능한 안정적 운영을 가능하게 하지만, 새로운 기회의 배분과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체 위탁기간에 대한 기준마련이 요구된다.

셋째, 조례 상 원장에 대한 정년기준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79%)가 일반적이고, 이 경우는 공무원 또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정년기준을 지자체마다 다르게 해석 적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원장과 교사를 구분하여 공무원 5급과 6급의 기준에 준하기도 한다.¹⁰⁾

넷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시 공정성과 형평성 제고를 위해 개인 위탁자의 수탁 수에 대한 제한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 지자체 조례 중 72.8%에서 위탁체의 국공립어린이집 수탁 수 제한에 대한 기준을 명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개인과 법인, 단체 사이에 차등을 두어 개인 위탁자의 수탁 수를 제한하는 경우도 있었다.

10) 현재는 2008년의 관련 법률 개정(국가공무원법 2008.6, 지방공무원법 2008.12 개정)에 의해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이 60세로 통일되었음. 단, 개정 이후 현재에도 일부 지역의 보육 관련 조례에서는 조문의 수정 없이 그대로 시행 중인 곳이 존재함.

III.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실태

본 장에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위탁체 유형별 개소수, 확충유형별 설치 및 계획, 지방보육정책위원회 구성, 공개경쟁예외 위탁, 재위탁 관련 현황을 조사하여 분석한 결과를 담았다. 현황 파악을 위해 전국 229개 지자체에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업무 담당자 전수를 대상으로 서면 조사를 실시하였고, 수합된 205개 지자체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이와 더불어 조사한 현황 자료에 기초하여 선행연구에서 공공성 확보를 위해 논의한 관련 내용을 함께 고찰하였다.

1.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유형별 현황

2014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에 답한 205개 지자체의 전체 국공립어린이집은 2,140개소이며, 이를 위탁체 유형별로 구분하여 보면 <표 III-1-1>과 같다. 전체적으로 개인에게 위탁한 경우가 48.8%로 가장 많았고, 사회복지법인 15.8%, 종교법인 12.1%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규모별로 살펴보면,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에서 개인위탁의 비율이 60%를 상회하였고, 법인위탁 비율은 대도시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지자체별 현황은 <부록 표 2-1>로 첨부한다.

<표 III-1-1> 전국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유형별 개소수

단위: 개소(%)

지역	직영	사회 복지 법인	학교 법인	종교 법인	재단 법인	단체	개인	사회적 협동 조합	기타	계
전체	83 (3.8)	340 (15.8)	100 (4.6)	259 (12.1)	123 (5.7)	139 (6.4)	1,046 (48.8)	9 (0.4)	41 (1.9)	2,140 (100.0)
대도시 <i>n=65</i>	1 (0)	264 (25.2)	55 (5.2)	193 (18.4)	105 (10.0)	80 (7.6)	315 (30.1)	8 (0.7)	23 (2.2)	1,044 (100.0)
중소도시 <i>n=80</i>	53 (5.8)	56 (6.2)	43 (4.7)	51 (5.6)	17 (1.8)	59 (6.5)	606 (67.2)	1 (0.1)	15 (1.6)	901 (100.0)
읍면지역 <i>n=60</i>	29 (14.8)	20 (10.2)	2 (1.0)	15 (7.6)	1 (0.5)	.	125 (64.1)	.	3 (1.5)	195 (100.0)

위탁체 유형에 대하여 선행연구(서수경 외, 2013; 양미선 외, 2012)는 국공립 어린이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개인 위탁을 제한하자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양미선 외(2012:202)는 위탁체의 비영리성 확보가 필요하나, 위탁 시 이행보증보험 의무가입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개인위탁자에게 문제 발생 시 해결이 어려움을 들어 개인을 가능한 배제하고,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우선적으로 운영권을 주자고 제언하였다. 서수경 외의 연구(2013:98)에서도 위탁체 유형별 장·단점을 분석¹¹⁾ 제시하면서, 안전성과 전문성 부족을 이유로 이미 개인위탁을 제한하는 자체가 있음을 들어 위탁신청에서 개인을 배제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2.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유형별 설치 및 계획 현황

보육수요자인 부모의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지속적인 확충요구에 부응하여 정부는 다양한 방법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의 확대에 노력하고 있다. 일반적이던 신축과 증개축¹²⁾을 통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방법뿐만 아니라 한정된 예산에서 확충의 효과를 도출하기 위해 다면적인 비용절감 방법들이 모색되고 있다. 민간시설을 국가나 지자체가 매입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민간매입, 기업이나 종교단체, 학교, 개인 등 민간이 제공하는 부지, 유휴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공공이 설치비, 운영비를 지원하는 방식인 민관연대, 기존 건물을 매입하여 리모델링하거나, 공동주택 어린이집 국공립 전환에 따른 리모델링 등의 방법이 대표적이다.

최근 3년을 기준하여 2012년부터 2015년까지의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유형별로 확충 현황 및 계획에 대한 자료를 수합한 결과는 다음 <표 III-2-1>과 같다. 지자체 보육담당자의 응답에 기초한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565개의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 사례 중 ‘신축하는 경우’가 40.7%로 여전히 가장 많았고, ‘리모델링’이 20.7%, ‘민관연대’가 18.2%로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지역규모와 상관없이 신축이 가장 보편적인 확충방법이나, 대도시에서 민관연대를 통한 방법의 비중(28.4%)이 다른 지역보다 높은 경향을 보인다. 이는 대도시에서 시설확충을 위한 토지나 건물 비용의 부담이 더 크기 때문에 나타난

11) 위탁체 유형별 장단점 비교표를 부록으로 소개함.

12) 증개축은 어린이집의 개소수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나, 기존 시설의 증축 또는 개축의 방법으로 보육 정원을 확대하는 것이기에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 방법으로 고려함.

결과로 보인다. 각 지자체별 설치유형별 설치 및 계획 현황 자료는 <부록 표 2-2>로 첨부한다.

〈표 III-2-1〉 전국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유형별 설치 및 계획

지역	년도	단위: 개소(%)						
		신축	증개축	민간매입	민관연대	리모델링	기타	계
전체	2012	37	5	2	14	24	12	94
	2013	44	8	7	28	31	23	141
	2014	79	13	10	35	38	14	189
	2015	70	8	1	26	24	12	141
	합계	230 (40.7)	34 (6.0)	20 (3.5)	103 (18.2)	117 (20.7)	61 (10.8)	565 (100.0)
대도시	94 (30.3)	7 (2.3)	15 (4.8)	88 (28.4)	66 (21.3)	40 (12.9)	310 (100.0)	
	중소도시	113 (54.3)	21 (10.1)	3 (1.4)	15 (7.2)	40 (19.2)	16 (7.7)	208 (100)
읍면지역	23 (48.9)	6 (12.8)	2 (4.3)	0 (0.0)	11 (23.4)	5 (10.6)	47 (100)	

주: 전국 205개 지자체 보육담당자의 응답을 기초로 구성한 자료임.

3. 지방보육정책위원회 구성 현황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의 선정심사를 담당하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비율과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조사하였다.

가. 지방보육정책위원회 구성비율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6조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 비율을 담고 있다. 전체위원 중 보호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100분의 45 이상, 보육전문가 100분의 20 이하, 관계공무원 100분의 15 이하, 어린이집 원장 100분의 10 이하, 보육교사 대표 100분의 10 이하로 구성함이 그 기준이다. 전체 평균을 중심으로 조사의 결과를 살펴보면, 보호자 및 공익 대표 47.1%, 보육전문가 17.7%, 관계공무원 15%, 어린이집원장 10.1%, 보육교사 8.6%로 나타나 전체 유형별 정원 권장 기준이 잘 준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양미선 외의 연구(2012:105)에서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 비율 조정에 대한 의견조사에 기초하여, 보육전문가의 비율을 높이고, 공무원이나 공익을 대표하는 자나 학부모, 교사대표의 비율을 줄이는 의견이 많음과 ‘공익을 대표하는 자’의 범주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본 조사의 과정에서도 시군구 담당업무자 사이에 ‘공익을 대표하는 자’의 범주에 대한 구분이 일치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시군구 담당업무자가 기타로 분류한 기업체의 대표, 소방시설 관리자, 자원봉사단체장, 사회복지시설 시설장 등은 구성기준인 5개 범주로 분류할 경우 ‘공익대표’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므로 그 범위가 매우 넓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서수경 외(2013:74)가 제언한 것처럼 보호자 및 공익대표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원의 비율 중 가장 높은 45% 이상임을 고려할 때, 대표성과 공정성,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공익대표자의 선정에 기준 수립이 필요하다.

전문가 의견조사에서도 현재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 비율에 대해 보육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여 심사에 적합하지 않은 공익을 대표하는 자의 비율을 하향 조정하고, 이권 없이 객관적 시각에서 심사할 수 있는 보육전문가의 비율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각 지자체별 현황은 <부록 표 2-3>으로 첨부한다.

〈표 III-3-1〉 지방보육정책위원회 구성비율

단위: 명(%)

구분	보호자 및 공익대표	보육 전문가	관계 공무원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기타	계
권장기준	45%이상	20%이하	15%이하	10%이하	10%이하		
전체	1,204 (47.1)	452 (17.7)	383 (15.0)	259 (10.1)	219 (8.6)	40 (1.6)	2,557 (100.0)
대도시	379 (46.6)	153 (18.8)	125 (15.4)	83 (10.2)	63 (7.7)	10 (1.2)	813 (100.0)
중소도시	508 (48.4)	195 (18.6)	143 (13.6)	99 (9.4)	90 (8.6)	15 (1.4)	1,050 (100.0)
읍면지역	317 (45.7)	104 (15.0)	115 (16.6)	77 (11.1)	66 (9.5)	15 (2.2)	694 (100.0)

주: 전국 205개 지자체 보육담당자의 응답을 기초로 구성한 자료임.

나. 위원 재임기간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재임기간을 조사한 결과는 <표 III-3-2>와 같다. 전반적으로는 2년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최대 4년까지 재임하는 경우도 있었다. 보호자 및 공익대표자의 경우는 평균 1.76년, 보육전문가 1.98년, 관계공무원 1.66년, 어린이집원장 1.88년, 보육교사 1.76년으로 조사되어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임기는 평균 2년 남짓임을 알 수 있다. 각 자체별 현황은 <부록 표 2-4>로 첨부한다.

<표 III-3-2>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 평균 재임 기간

단위: 년

지역	집단	평균(편차)				
		보호자 및 공익대표	보육전문가	관계공무원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전체	1.76(0.52)	1.98(0.60)	1.66(0.65)	1.88(1.30)	1.76(0.75)	
대도시	1.67(0.57)	1.96(0.57)	1.96(0.69)	1.57(0.69)	1.57(0.65)	
중소도시	1.74(0.48)	2.02(0.48)	2.02(0.59)	1.65(0.59)	1.65(0.70)	
읍면지역	1.87(0.49)	1.94(0.49)	1.94(0.50)	1.77(0.50)	1.77(0.56)	

주: 전국 205개 지자체 보육담당자의 응답을 기초로 구성한 자료임.

4. 공개경쟁예외 위탁 현황

영유아보육법 제25조 제2항의 단서로 명시된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체 선정 시 공개경쟁 예외에 해당하는 사례수를 최근 3년으로 한정하여 조사하였다.

전체 80건의 사례가 있었고, 세 가지의 유형 중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에게 위탁한 경우가 57건(71.3%)으로 가장 많았다.

'주택법'에 따라 설치된 민간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하기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에게 위탁한 경우가 11건 (13.8%), '민간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하여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부채납 이전에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에게 위탁한 경우가 9건(11.2%)로 조사되었다. 기타의 경우로는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국공립전환

시 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던 자에게 위탁한 경우와 종교시설이 운영 민간 어린이집 구립 전환 시 그 전 운영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등이 있었다. 지자체별 현황은 <부록 표 2-5>로 첨부한다.

〈표 III-4-1〉 공개경쟁 예외 위탁현황

단위: 사례 수(%)

지역	민간어린이집 기부채납	국공립어린이집 부지 및 건물 기부채납/무상 사용	주택법에 따른 민간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기타	계
전체	9(11.2)	57(71.3)	11(13.8)	3(3.7)	80(100.0)
대도시	5(9.2)	38(70.4)	8(14.8)	3(0.6)	54(100.0)
중소도시	1(6.6)	11(73.4)	3(20.0)	0	15(100.0)
읍면지역	3(27.2)	8(72.8)	0	0	11(100.0)

주: 전국 205개 지자체 보육담당자의 응답을 기초로 구성한 자료임.

5. 재위탁 관련 현황

가. 재위탁 방법

국공립어린이집의 재위탁 방법은 ‘현재 운영 위탁자에 대해 단독평가 후 재위탁 하는 경우’가 69.4%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완전공개 경쟁하는 경우’가 22%로 조사되었다. 이렇듯 단독평가 후 재위탁 방법을 선호함은 선행연구에서 (양미선 외, 2012:101) 지적하였듯이 이 방법이 운영권을 확보해주고 운영 전반의 지도감독 기회를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보육전문가 대상 의견조사에서도 능력 있는 운영체의 안정적 운영 여건조성을 위해 ‘단독평가 후 재위탁’이 바람직한 방법이라는 점에 대체로 동의하는 편이었다. 그러나 이는 변별력 있게 부적격 운영체를 구분하는 기준마련을 전제로 하며 ‘단독평가 후 재위탁’하지만 현장평가와 부모 면담 등 심사 시 운영에 대한 평가를 현재보다 강화할 것을 건의하였다. 지자체별 현황은 <부록 표 2-6>으로 첨부한다.

국공립어린이집의 공공성과 선정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지자체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어 재위탁도 완전 공개경쟁으로 전환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을 조례 개정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기타 방법으로는 이전에는 공개경쟁 했으나 2014년부터 단독평가 후 재위탁의 방법, 1회 자동 재위탁 후 공개 경쟁하는 경우, 2회에 한하여 평가 후 재위탁하고 3회부터는 완전 공개 경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극히 소수이기는 하나 지자체장의 재량으로 기간을 조정한다는 경우(1건)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시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을 첨부한 곳(1건)도 있었다.

〈표 III-5-1〉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방법

구분	단독평가 후 재위탁	자동 재위탁	공개경쟁 시 가산점 부여	완전 공개경쟁	기타	단위: 사례 수(%)
						계
전체	142(69.4)	3(1.4)	6(2.9)	45(22.0)	9(4.3)	205(100.0)
대도시	50(76.9)	2(3.1)	2(3.1)	9(13.8)	2(3.1)	65(100.0)
중소도시	49(61.3)	0(0)	1(1.2)	26(32.5)	4(5.0)	80(100.0)
읍면지역	43(71.7)	1(1.6)	3(5.0)	10(16.7)	3(5.0)	60(100.0)

주: 전국 205개 지자체 보육담당자의 응답을 기초로 구성한 자료임.

서술형으로 응답한 조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시 단독재심사를 하지만 그 구체적인 심사기준과 내용에는 자체개발 지표를 사용한다든지, 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한다든지, 면접을 강화한다든지, 현장평가를 추가하는 등 공공성확보를 위한 노력이 병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지자체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시 사용하고 있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사례13)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단독 재심사 후 결정하는 경우

- 사업운영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어린이집 운영계획, 대표자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평균점수 70점 이상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재위탁 결정함.
- 위탁 운영체 재위탁 신청을 통한 보육정책위원회 단독 심사함.
절대평가제로 보육정책위원회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이 평가하여 최종 득점의 평균이 70점 이상인 경우 재위탁을 결정함. 개별위원 점수가 선정결과를 왜곡할 수 있는 현상을 방지

13) 본 연구 조사 시 시군구 보육담당자의 서술형 응답에 기초하여 제시함.

하기 위하여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를 부여한 위원 각 1인의 점수는 점수 합산 및 평균에서 제외함.

- 재위탁체 공통심사 기준표에 의거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일 때 재위탁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 단, 평가 미달 시 신규절차에 의거 공모 추진함.
- 별도의 심사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임.
 -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결과 평균 70점 미만일 경우 공개경쟁, 이상일 경우 재위탁함. 별도기준 적용하여 심사함.
 - 서면심사(20%): 운영체의 시설운영 및 사업실적(20), 원장의 전문성(20), 어린이집 운영계획(40), 운영체의 공신력(10), 운영체 재정능력(10)
 - 현장심사(80%): 보육사업 평가(22), 어린이집 운영관리(32), 어린이집 안전, 급식, 위생, 건강관리(14) 학부모 및 교사관리(12), 지역사회 협력관계(4), 예산관리(16)
 - 시설장의 시설운영 경력, 전문성/ 예산편성의 타당성, 효율성/ 프로그램 운영의 적합성, 개발노력/ 시설운영 및 관리의 적절성/ 종사자 교육 및 연수계획/ 종사자 및 영유아복지대책 등
 - 지자체 기준적용
 - 서류심사: 시설장의 자격, 전문성, 재정능력, 지역사회기여도(50점)
 - 사업설명: 보육시설 운영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30점)
 - 종합판단: 수탁자의 의지 및 수행능력((20점))
 - 운영 기간 동안 보조금 부당수령 등 행정처분 대상이 아니어야 하며 어린이집 부당 운영 및 관리에 따른 민원 제기가 없어야 함.
 - 배점 기준표에 의거 서류심사와 면접심사 병행
 - 수탁자 선정위원회 심의 후 심사결과에 따라 결정
 - 개별위원 점수의 최고와 최저점수는 점수합산에서 제외하고 70점 이상의 최다득점을 받은 운영체로 결정하고, 운영체의 점수가 모두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수탁자 선정위원회에서 위탁체 재모집 결정
 - 심사결과 동점이 나온 경우에는 동점자인 경우 심사항목 중 1. 어린이집 운영계획, 2. 운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3. 운영체의 운영실적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위탁운영자로 선정된 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및 시 홈페이지 게재
- 부모대상 설문을 실시하여 결과를 반영하는 경우임.
 - 재위탁 대상 어린이집 보호자 설문조사 결과 70% 이상 현 원장을 재위탁으로 희망하고, 보육정책위원회원들의 심의결과 평균 70이상 점수를 득하면 재위탁 결정함.
- 운영 중인 어린이집 현장평가를 추가하는 경우임.
 - 1차 서면 및 현지 확인 평가 기준표 점수 및 2차 보육정책위원회의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인 최다 득점자를 선정
 - 현장심사 후, 위원별 배점 결과, 최고와 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 점수가 70점 이상 시 재위탁을 결정
 - 서류심사 및 현장점검 심사로 진행하며 어린이집 사업계획서에 의한 평가, 위탁자의 운영능력, 시설운영 및 사업실적 현장점검 평가 등

2) 재위탁 완전 공개 경쟁

신규위탁과 같이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거나, 재위탁도 신규나 변경위탁에 준하여 공개경쟁으로의 전환 추세를 보여주는 응답이 보인다.

- 재위탁 없이 모두 신규 위탁처럼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함.
- 재위탁도 공고에 의한 공개경쟁을 통해 위탁함.
- 전문가 평가결과 평균점수 70점 이상일 경우 보육정책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하여 웠으나 2014. 3. 13 조례 개정으로 어린이집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재위탁 규정 삭제함.
- 당초 2012년 영유아보육법 개정(위탁기간 변경) 전에는 보육정책위원회 위원들의 평가 후 재위탁 계약을 맺었으나 법 개정 후 기존 위탁기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 변경 후 재위탁 시는 공개경쟁으로 위탁자(체)를 선발할 예정임.

나. 재위탁 적용 기준

현재 지자체에서 사용하는 재위탁의 기준에 대해 조사한 결과 보육사업안내

에 제시된 ‘국공립어린이집 공통심사 기준표’를 그대로 적용한다는 응답이 52.2%로 가장 높았고, 기준표를 기초로 평가를 위한 기타 보완 기준을 추가로 적용하는 경우도 25.4%로 많았고, 자체의 조례로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는 7.3%로 나타났다. 대도시에서 공통심사 기준표의 적용 비율(60.0%)이 다른 지역 보다 다소 높은 경향을 보였다.

〈표 III-5-2〉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적용기준

구분	공통심사 기준표	지자체 조례로 규정	기타 보완	무응답 해당없음	단위: 사례 수(%)
					계
전체	107(52.2)	15(7.3)	52(25.4)	31(15.1)	205(100.0)
대도시	39(60.0)	4(6.2)	16(24.6)	6(9.2)	65(100.0)
중소도시	38(48.2)	5(6.3)	25(31.6)	11(13.9)	80(100.0)
읍면지역	30(50.0)	6(10.0)	11(18.3)	13(21.7)	60(100.0)

주: 전국 205개 지자체 보육담당자의 응답을 기초로 구성한 자료임.

재위탁의 결정은 공정성 유지와 지자체의 특성에 따른 융통성 발휘 사이에서 균형점이 필요한 부분이다. 선행연구(서수경 외, 2013; 양미선 외, 2012)에서의 제언에 기초하여 재위탁 시 ‘국공립어린이집 공통심사 기준표’ 의무적용을 제도화하는 것에 대한 보육 전문가의 의견¹⁴⁾은 재위탁 시에도 공통기준표를 의무적 용함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또한, 기준표의 내용을 수정하여 일정 비율은 자체 특수지표를 반영할 수 있는 여지를 두자는 의견도 나왔다.

유사한 의견으로 공통심사기준표를 의무적용을 원칙으로 하고, 희망하는 경우 각 자체별 가산점 제도를 두어 20% 이내의 범위에서 지역의 여건이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러한 근거는 현재 신규 위탁이나 재위탁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심사표의 문제이기보다는 자체의 상황이 가장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6. 소결

전국 자체의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업무 담당자 대상 서면조사를 토대로 파

14) 보육 전공 교수 3인, 육아종합지원센터장 4인,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1인의 의견을 서면자문을 통해 모음.

악한 위탁체 선정관리 실태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는다.

첫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은 개인위탁이 48.8%로 가장 많았다. 보육소신과 전문성을 지니고 운영하는 개인 위탁자가 많으나, 법인이나 단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탁체로서의 안전성과 전문성에 대한 우려가 높음도 사실인 만큼 개인 위탁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둘째,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유형이 다양화되고 있다. 2012년~2015년 사이 확충 현황을 살펴보면 여전히 신축이 40.7%로 가장 우위를 차지하나, 제한된 자원으로 최대한의 확충을 위해 민간매입, 리모델링, 민관연대 등의 방법이 병행되고 있다. 이런 추세는 적은 확충비용이라는 경제성의 효과 기대만큼이나 국공립 어린이집이 지니는 공공성에의 침해 가능성도 열려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검토와 진단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셋째,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체 선정 심사를 담당하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서 제시한 기준에 적합하였다. 그러나 지자체마다 공익대표라는 범주를 해석하는 기준에는 차이가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요구된다.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임기는 평균 2년 남짓 된다.

넷째, 최근 3년 동안의 신규나 변경 위탁 시 공개경쟁 예외 위탁 현황을 조사한 결과 총 80건의 사례 중 71.3%인 57건이 국공립어린이집 부지 및 건물의 기부채납이나 무상사용의 경우로 확충 방법으로 보면 민관연대에 해당한다. 공개경쟁을 예외로 하고 운영권을 부여함은 일종의 특혜로 위탁체의 보육관련 전문성에 대한 검토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재위탁과 관련한 실태결과는 지자체 수준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의 질적 수준의 제고를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재위탁 방법은 ‘단독평가 후 재위탁(69.4%)’이 가장 선호되는 방법이나 ‘완전 공개경쟁’의 비율도 22%로 나타났다. 심사의 기준은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공통심사 기준표’를 그대로 적용한다는 응답이 52.2%로 가장 높았고, 기준표를 기초로 평가를 위한 기타 보완 기준을 추가로 적용하는 경우도 25.4%로 많아 선행연구 조사 시 보다 바람직한 추세로 변화 또는 강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IV.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적절성 검토

4장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관리 기준을 제시하는 2014 보육사업안내에 제시된 현행 선정관리 기준에 대한 적절성을 검토한다. 구체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체 선정관리를 위한 법적 기준에 준하여 보육사업안내에 제시한 '위탁체 선정관리 권장 표준안'의 내용과 그 기준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공통 심사 기준표'와 세부항목별 평가 기준안의 내용에 대해 고찰하고 그 개선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업무를 실행하는 전국 시군구 국공립어린이집 관련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선정기준 적절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기초로 보육전문가의 자문내용을 반영하였다.

1.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기준

2014 보육사업안내(pp.14~16)에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권장 표준안' 선정관련 기준으로 제시한 항목별로 현재 기준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와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가. 적절성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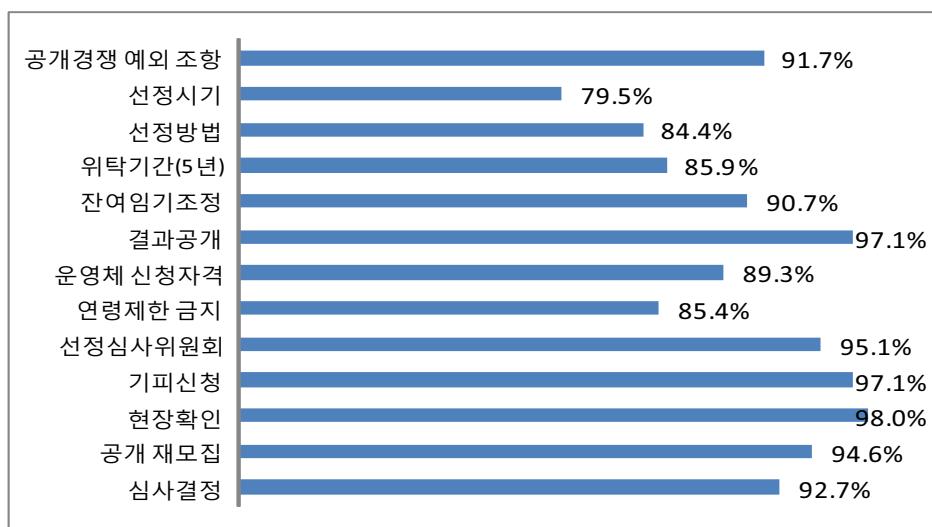
시군구 보육담당자에게 국공립어린이집 위탁관련 업무를 담당한 경험에 기초하여 현재 선정관리 기준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묻고 그 동의비율을 산출하였다.

<표 IV-1-1>과 같이 심사 시 현장 확인 실시(98%), 위탁관련 절차와 방법, 결과를 공개하는 것(97.1%)과 신청 운영체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기피신청이 가능하다는 부분(97.1%)에 대해 적절하다는 비율이 월등히 높았다. 그에 반해 선정시기(79.5%), 선정방법(84.4%), 과도한 연령제한 금지(85.4%), 위탁기간(85.9%) 등의 현 기준은 상대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표 IV-1-1〉 국공립어린이집 선정기준별 적절성 동의율

단위: 명(%)

구분	적절성 동의	구분	적절성 동의
공개경쟁 예외 조항	188(91.7)	연령제한 금지	175(85.4)
선정시기	163(79.5)	운영조건	181(88.6)
선정방법	173(84.4)	선정심사위원회	195(95.1)
결과공개	199(97.1)	(기피신청)	199(97.1)
위탁기간(5년)	176(85.9)	(심사원칙)	201(98.0)
잔여임기조정	186(90.7)	(공개 재모집)	194(94.6)
운영체 신청자격	183(89.3)	심사결정	190(92.7)



[그림 IV-1-1] 국공립어린이집 선정기준별 적절성 동의율

나. 항목별 개선요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권장 표준안'(2014 보육사업안내 2014:14~16)에 제시한 선정관련 기준 항목별로 현행 기준에 대한 개선 요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공개경쟁예외 조항

최초 위탁은 공개경쟁 방법에 의하나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2항 단서의 대상은 예외로 하는 규정이다.

- ① 민간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로 전환하는 경우 기부채납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
- ②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
- ③ '주택법'에 따라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하기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

전국 시군구 보육담당자인 응답자 205명 중 91.7%는 이 규정이 적절하다는 의견에 동의하였고,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동의 근거

- 기부채납자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라고 생각함.
- 민간매입인 경우 부지를 기부하고 건물 값만 감정 평가하여 매입하기 때문에 부지 건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전 설치운영자에게 위탁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됨.

나) 개선요구

- 어린이집을 운영하던자가 아니므로 기본적인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결정하며 최소한의 자격기준을 정할 것.
- 어린이집 시설을 기부채납 하는 것과 운영권은 별개로 운영권에 대해서는 전문성에 기반하여 공개경쟁이 적합하다고 봄.
- 기득권보다 운영 능력 등이 고려되어야 하므로 공개경쟁을 권장함.
- 국공립어린이집보다는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설치, 운영하는 것이 적절해보임. 또한, 기부채납한 운영자가 3년 뒤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위탁하지 못한 경우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음.
- ②항을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 또는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의 직계가족 1세대로 국한할 것.
- ③항의 경우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할 경우 주민의 요구에 의해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사례로 신규처럼 공개경쟁으로 위탁체를 선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 ③항은 삭제해야 함. ①, ②항은 각각 본인 재산을 기부 채납하는 형식으로 우선권을 주는 것이 타당할 수 있으나,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의 위탁운영자는 해당 아파트에서 위탁받아 운영하던 계약자에 불과하고 아무런 재산상 기여를 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특혜를 받고 있음. 또한 법 규정에 '설치·운영한 자'라고 명시되어 있어 이에 대한 해석이 논쟁의 소지가 큼. 따라서 ③항을 삭제하고 공동주택 의무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할 시에는 공동주택에서는 무상임대에 동의하고 위탁에 대한 모든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일임하게 하여야 할 필요성이 큼.
- ③항의 경우 전환 시 보상 등이 이루어지므로 공개위탁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2) 선정시기

신축시설의 신규위탁 경우 개원예정일 6개월 이전, 재위탁의 경우 계약 만료일 3개월 이전 심사결정, 변경위탁은 2개월 이전 선정완료

현재의 규정에 79.5%가 적절하다고 동의하여 전체 기준 중 가장 개선에 대한 요구 비율이 높게 나타난 항목이다. 21.5%가 제시한 개선 요구는 선정시기를 단축하자는 의견, 선정시기를 연장하자는 의견, 자체 권리에 맡기자는 의견 등으로 다음과 같다.

가) 선정시기를 미루자는 의견

무엇보다 선정한 시점과 개원 시까지의 기간을 단축하자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실무자의 입장에서는 선정 절차진행을 위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나, 그 기간 동안 인건비의 지원이 어렵기 때문이다.

- 신규위탁의 경우 개원예정일 6개월 이전에 선정하게 되면 위탁에 선정된 원장의 경우 어린이집 신축에 개입하여 시설 운영준비에 만전을 기할 수 있으나, 인건비지원이 되지 않아 어린이집 개원에 온전히 전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신규위탁의 경우 6개월 이전은 예산의 교부 등 애로사항이 있음.

- 신축시설의 경우 어린이집 개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6개월 이전 위탁은 실효성이 떨어지며, 3개월 전 위탁이 타당하다고 사료됨(9건).
- 신축시설 신규위탁의 경우 개원예정일 4개월 이전(4건)
- 신축시설 신규위탁인 경우 개원예정일 3개월~6개월 이내 심사결정(2건)
- 계약 만료일 심사결정 기간이 1개월 이내로 수정(2건)
- 계약만료·변경위탁 2개월로 함(2건).
- 재위탁의 경우 계약만료일 3개월 전부터 2개월 이전까지, 변경위탁은 2개월 이전부터 1개월 이전
- 변경위탁은 재위탁 심사 후 공개경쟁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2개월 전은 축박하니 1개월 이전 선정
- 재위탁과 변경위탁은 동일하게 3개월 이전으로 함.

나) 선정시기 연장 의견

- 신축기간 고려하여 신축시설 신규위탁 경우 개원예정일 1년 이전으로 함.
- 재위탁 대상 어린이집이 많고 재위탁 결정시기가 각기 달라서 1~2개월마다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함. 그러므로 위탁기간이 5년인 점을 감안하여 변경 및 재위탁 결정 시기도 신규위탁과 같이 6개월 이전이 타당하다고 여김.

다) 지자체의 권한으로 두자는 의견

- 지자체의 실정에 맞게 자체적으로 시기 조정 필요(위원의 일정변경, 돌발 변수 등 감안 2건)
- 자율적인 권한 부여(보육지침을 알고 있는 민원인으로부터 이의 제기, 선거 기간 등)
- 선정시기는 예외 조항으로 지자체 형편에 의해 조절할 수 있도록 함.

3) 선정방법 및 결과공개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규위탁 및 변경위탁은 반드시 공개경쟁으로 하고 재위탁은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 위탁관련 일체의 절차 및 방법을 공개하고, 위탁업무의 공정성, 투명성을 위해 심의결과는 공개 |
|--|

선정방법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응답자 84.4%의 동의가 나타났다. 결과를 공개하자는 부분에는 97.1%의 동의를 보였다. 관련 의견은 다음과 같다. 재위탁도 공개경쟁으로 하자는 의견과 재위탁 횟수를 제한하고 새로운 추가 기준을 두자는 의견이다.

- 재위탁을 공개경쟁으로 변경(17건)
-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원장이 한번 선정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속해서 위탁함이 일반적임. 1회에 한하여 재위탁(3년) 또는 공개경쟁 시 가산점 부여하는 방법
- 현재 재위탁자 기간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계속할 경우 나태하게 운영할 수 있고 상부기관의 지도감독이 없기에 원장 임의로 운영할 우려가 있으며, 새로운 보육인의 참여 기회가 적어질 수 있음.
- 재위탁의 경우 기존 수탁자라는 이유로 투명한 심사를 보장하기 어려우므로 재위탁도 전면 공개경쟁이 바람직함.
- 재위탁 한도 설정이 필요함.
- 재위탁은 1회로 제한하고, 2회 이상 재위탁 시 공개 경쟁함(3건).
(재 위탁시 1회에 한하여 공개경쟁 면제)
-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재위탁을 결정하는 것은 타당하나 재위탁의 횟수 제한 또는 몇 회 이상은 반드시 공개경쟁을 통한 위탁체 선정. 재위탁 시 시설 이용자의 만족도 등 평가결과 반영이 필요함.
- 공개경쟁 후 지원자가 없을 시 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함.
- 변경위탁은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함.
- 재위탁 조항(기간이나 방법 등)에 대하여 자자체별 조례를 다르게 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광역시의 경우 같은 시안에서 자자체별 다르게 운용되어 법의 신뢰성이 떨어지므로 최소한 같은 광역시 안에서는 통일된 (조례)표준안이 필요함.
- 신규, 변경 위탁만 절차 및 방법공개, 재위탁은 선정결과만 공개함.

4) 위탁기간 및 원장 임기 조정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탁기간은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함 • 다만, 원장의 잔여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등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 가능함. |
|--|

현재의 5년 위탁기간에 대해서는 응답자 중 85.9%가 동의하였고, 원장 임기에 대한 의견에는 90.7%가 적절하다고 하였다. 먼저 위탁기간에 대한 개선 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 위탁기간 개선요구

(1) 축소 의견

- 신규위탁은 위탁자 검증을 위해 3년으로 함.
최초 3년, 재위탁 5년 (보육담당자보다 근무기간이 길어 재위탁 배제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움)
- 최초 공개경쟁으로 선정된 수탁자가 어린이집 경험이 없는 경우 검증을 위한 제한이 필요함.
- 위탁기간을 4년으로 변경함.
- 재위탁의 경우 5년이면 최초 위탁까지 10년으로 '안정'의 역효과로 무사안일이 나타날 수도 있음.
- 재위탁 경우 총 기간이 10년으로 너무 길므로 재위탁은 3년으로 함(15건).
- 지역사회의 안정을 도모하고 후배양성을 위해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재위탁 가능. 최대 10년만 위탁 가능하게 했으면 함(4건).

(2) 상향 조정 의견

비록 소수이지만 위탁기간을 상향 조정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 안정적 운영을 위해선 최소 10년으로 상향 조정이 필요함.

(3) 지자체의 권한으로 두자는 의견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정하자는 견해도 있다.

- 3~5년 범위 내에서 지자체가 위탁기간을 정했으면 함.

나) 원장의 임기조정

원장 임기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 '사유에 해당하는' 삭제
-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2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공개모집으로 신규위탁자 재선정함. 다만 기부체납자(토지, 건물)가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지자체

보육 정책위원회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로 개선

- 원장의 잔여 임기가 '5년 미만'을 '2년 이상 4년 이내'로 수정
- 많은 지자체에서 3년으로 위탁하고 있어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이 어려움. 5년으로 위탁이 적절함.
- 위탁자 변경 사유가 발생 시 잔여기간보다는 신규로 판단하여 위탁기간을 산정함이 타당함.
-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잔여기간 5년 미만 위탁 금지 조항을 추가함.

5) 운영체 신청자격 및 연령제한

- 사회복지법인, 단체(육아종합지원센터 등 포함) 또는 개인
 - 인건비 지원 상한 연령을 감안하여 과도한 연령제한 금지

가) 운영체에 대한 의견

응답자의 89.3%가 적절하다고 답한 현행 기준에 대해 현재 운영체로 신청 가능한 자격을 사회복지법인, 단체, 개인으로 설정함에 대한 의견이다.

- 다만, 기초의원, 광역의원 등이 대표자인 법인·단체 배제 규정 신설
- 시대적 대세인 '사회적 협동조합'을 명기했으면 함.
- 개인은 신청자격에서 제외함(3건). 개인 위탁 시 사유화되는 경향이 있으며 시설 및 보조금 등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임.
- 개인 단서조항의 추가
 - 개인이 위탁을 받을 시 친인척의 채용을 제한 조건 전제 추가
 - 개인이 운영 시 전문성 확보를 위한 요건 강화가 필요함.
- 단체를 제외함. 사회복지법인, 개인으로 한정함(2건).
- 단체 등은 보육업무와 사회복지업무를 포함할 경우만 인정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단체의 경우 위탁받은 시설수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함.
- 보육사업 만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을 설치한 개인법인의 경우 위탁 시설 수 제한이 필요함.
-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제외함(3건).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경우 지원기관의 역

할을 하는 기관이 어린이집 운영까지 실시하게 되면 센터운영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단체로 인정될 수 있는지의 문제와 센터 위탁자체도 법인, 단체가 자격인데 그 센터가 단체 자격으로 신청자격을 갖는 것은 이상함.
- 비영리법인에서도 위탁 가능하게 변경 필요함(2건).
 - 신청자격에 비영리법인 중 정관 사업에 보육사업이 있으면 신청 가능하도록 함. 이 부분을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법안으로 한정하였으면 함. 보육사업은 절대로 영리사업이 될 수 없음.
- 운영체의 범위에 사업자동록을 한 기업체 포함(푸르니보육재단 등 기업체가 별도의 재단이 아니라도 직장어린이집과는 별도로 사회사업 차원의 어린이집 운영 인정 필요).
- 개인으로 한정함. 현재 보육에 재직하고 있는 교사에게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의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 법인이나 단체 등은 위탁을 받을 시 다시 법인 내에서 원장을 채용하는 경우 비리가 발생할 수 있으며, 행정처분 시 개인 원장이 처분을 받고 대표자인 법인은 방관할 수 있음.
 - 지도점검 시 지출의 부적정한 사례가 법인이나 단체 쪽에서 지시하여 부정하게 지출하는 경우 등이 다수 발생되어 법인 살림을 부풀리는 형태가 이루어지고 있음.
 - 법인에서 원장을 선정하여 운영하다 보니 행정 지시를 서로가 회피하는 경우 등이 발생되어 사명감과 책임이 결여되기 쉬움.

나) 연령제한에 대한 의견

과도한 연령제한 금지에 대한 의견이다. 이 기준이 적절하다고 동의하는 비율은 85.4%이다. 공무원 정년 연령과 비례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된다는 근거도 제시되었다. 또한 ‘과도한’이라는 모호한 표현이 아닌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자는 것으로 개선의견은 다음과 같다.

연령제한을 현행보다 낮추자는 의견이다. 제한의 근거로는 연령 제한을 통한 타 시설과 형평성 제고를 제시한다.

- 인건비 지원 상한 연령까지만 위탁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4건)
 - 보조금 부정행위 미연에 방지

- 문구 삭제, 인건비 지원 상한 연령을 감안하여 연령 제한이 필요함(8건).
 - 연령 제한은 시설운영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됨.
- 현재 신청자가 5년 이후 60세 이상자는 신청 제한
- 연령 50세 미만으로 한정
- 연령 60세 이하로 제한 필요(2건)
- 연령 62세 이하로 제한 필요
- 공무원 퇴직기준과 동일한 정년제 도입함(4건).
 - 연령 제한이 없을 경우 압력 및 청탁의 요인이 될 수 있음.

6) 운영조건

신규 및 변경위탁, 재위탁 심사 시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른 취약보육(영아 · 장애아 · 시간연장 · 다문화아동 보육) 중 2개 이상 실시를 전제로 하되, 장애아, 시간 연장 보육을 권장
 - 취약보육을 2개 이상 실시하지 못할 경우,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보육수요 조사 를 실시 후 그 적용여부를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

88.6%가 적절하다고 답한 현행 운영조건에 대한 개선요구는 다음과 같다.

가)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함에 대한 의견

- 취약보육 실시 여부를 보육정책위원회 결정으로 시행하는 것보다는 어린 이집 운영의 자율성 및 보육환경 변화에 따른 유동적 운영을 위하여 원장에게 자율성을 부여하되 정부 시책 등에 부합할 수 있도록 감독 부서와 협조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규정 정비가 필요함.
- 취약보육을 2개 이상 못할 경우,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도 아니며 강제할 사항도 아님. 단지 지역여건에 따라 할 수 있는 사항임.
- 신규 위탁 전에 취약보육을 2개 이상 실시하지 못할 경우 6개월 이내 실시하고, 6개월 이내 실시하지 못할 경우 그 적용여부를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함.
- 보육수요 조사를 실시 후 그 적용여부를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할 필요가 있을지가 의문임. 심사 시 취약보육부분에 대한 평가항목이 있으므로 심사로 갈음하는 것이 바람직함.

나) 취약 보육에 대한 의견

- 다문화를 취약보육으로 봐야할지가 의문임. 오히려 다문화아동과 일반아동간의 분리 구별을 초래해 통합화를 저해할 것이 우려됨.
- 취약보육 1개 이상 실시로 완화 또는 하향 조정(8건)
 - 입소관리시스템에 의거 아동이 입소됨에 따라 별도 강화할 필요 없음.
 - 취약보육 특히, 장애아, 다문화아동은 수요가 극히 미미하여 2개 이상 실시에 어려움이 있음.
 - 현장에서는 취약보육을 1개 이상으로 실시하는 것이 현실적임.
 - 보육수요가 다양하지 않은 시골에서는 취약보육 조건을 2개 이상 만족시키기 힘듦.
 - 지역에 따라 취약 보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경우 조건을 맞출 수 없음(의무적 조건을 완화할 필요 있음).
- 취약보육에서 영아를 삭제
- 취약보육 운영조건 삭제
 - 국공립어린이집이 취약보육을 우선 실시하여야 하지만 꼭 이러한 제한을 두게 되면 위탁을 받고자하여 부정한 취약보육을 실시하게끔 유도하는 것처럼 보여 취약보육의 운영조건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됨.
- 장애아, 시간연장 보육을 권장한다는 조문 삭제 필요성 있음.
- 취약보육 평균 인원을 보육정원의 10% 이상 등으로 명시할 필요 있음.

다) 기준강화 의견

강화하자는 의견으로 일시보육을 추가하여 3개 이상으로 하자는 의견도 있다.

7) 선정심사위원회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 원칙적으로 심사 • 단,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으며, 그 위원회의 위원이 보육정책위원회의 자격을 갖춘 경우 심사가능(『영유아보육법』제6조 참조) |
|--|

이 기준에는 95.1%가 동의하여 적절하다고 찬성하는 비율이 높은 편이다. 그 개선요구는 다음과 같다.

- 공정성 확보를 위해 수탁자 선정심사위원회를 별도 구성하여 심의함.
 - 부모 대표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심의자로 부적절함(전문성 결여).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사회복지관 위탁 시 어린이집 포함하여 심의 가능하도록 함.
- 심사의 공정성을 위하여 심사위원 일몰제 운영 등 지자체 특성에 맞는 구성 방안 마련
- 보육정책위원회의 경우 위탁신청자들에게 공개되어 있고 지역 출신들로 위탁신청자들과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가 있어 심사의 객관성이 결여될 우려가 있어, 위탁자를 공개모집하는 신규위탁 및 변경위탁의 경우 선정 심사위원회를 별도 구성하여 심사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됨.
 - 자치단체 민간위탁조례의 경우 위탁자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8) 심사원칙

- 신청 운영체와 특수한 관계(배우자, 친족, 이해관계인 등)에 있는 자는 위원제척,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의 기피신청 가능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0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참고)
 - 심사는 집합심사를 하되, 보육정책위원회의 확인이 필요할 시 현장 확인 실시
 - 심사결과, 신청 운영체가 모두 부적격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위탁체 재모집 결정

97.1%, 98%의 동의 의사를 보여 현재 적절하다고 보이는 기준이나, 다음과 같은 개선 의견이 개진되었다.

가) 심사원칙에 대한 의견

- 특수관계, 특히 이해관계인에 대한 정확한 기준 필요함.
- 보육정책위원회 개최 시 상위 법령에 따라 진행하고 있으나, 조례에 조항이 없어 차후 개정 시 반영 예정임. 위탁자 선정성 논란을 사전 차단하기 위함.
- 수탁(신청)자의 경우에는 기피신청의 제도 이용 시 본인에게 불리한 여건을 감안하여 회피하므로 보다 강력한 제도가 필요함.
 - 예를 들어 보육정책위원회와 신청자 서약서 징구로 추후 친족 관계나

이해관계가 밝혀지는 경우 위탁 취소 등 임.

- 필요할 시가 아니라 반드시 현장 확인 실시로 강화함.

나) 재모집에 대한 의견

부적격 판정 시 공개 재모집에 대한 견해(동의율 94.6%)는 다음과 같다.

- 공개모집 결과 1개 운영체가 신청하여도 심사하여 결정하도록 내용추가
- 단서조항에 긴급 시 지자체에서 판단하여 위탁방법 결정
- 현재 보육정책위원회에 '또는 민간위탁심사위원회'를 추가함.
- 심사결과 최다 득점을 받은 운영체로 결정함.
 - 차점자순으로 하여 차점자에게 권한이 승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 어린이집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합리적인 선정을 위해서 차점자에게 재 위탁을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됨.
- 부적격 판정될 경우 보육정책위원회를 경유하지 않고, 담당부서에서 재공 개 모집 결정
 -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해당부서에서 결정할 문제임.
- 재모집을 결정하고 공개모집을 할 경우 기간을 정해주었으면 좋겠음.

(예를 들어 계약 만료 몇 개월 전까지)

2.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신규·변경 공통심사 기준표

정부는 국공립어린이집의 공공성과 위탁체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담보하기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을 위한 공통심사 기준표를 보육사업안내에 제시하고 있다. 신규·변경의 경우는 공통심사 기준표(2014 보육사업안내:20)와 위탁심사 세부항목별 평가기준안(2014 보육사업안내:22~25)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한 전국 시군구 보육담당자의 개선요구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또한 지자체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을 위해 적용하는 별도 지표를 수합하였고, 그 내용을 분석하여 각주에 사례로 첨부하였다.

가. 신규·변경 공통심사 기준표 구성 전반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신규·변경 공통심사 기준표는 어린이집 운영계획(40점), 운영체의 대표 및 원장의 전문성(35점), 운영체의 시설운영 실적(10점), 운영체의 공신력(10점), 운영체의 재정능력(5점) 등 5개 항목의 총점 100점 점수로 구성된다. 배점기준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토대로 선행연구(양미선 외, 2012)에서는 어린이집 운영계획에 대한 점수의 비중을 낮추고, 운영체 시설운영실적과 재정 능력의 배점을 높일 필요가 있음을 제언하였다. 본 연구 과정에서 전문가 대상 심층면담에서는 현재의 기준이 적절하며 다만 평가 항목을 구체적이고 타당하게 보완하자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심사항목 중 운영체와 원장(내정자)의 전문성 항목을 운영체와 원장의 평가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개진되었다. 운영체의 운영능력과 재무능력, 회계의 분리, 인력관리 등을 평가함이 적절한데 특히 법인인 경우 인력의 배치와 재무회계를 독립적으로 운영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나. 신규·변경 공통심사 기준표 심사항목별 개선요구

각 심사항목별 2014 보육사업안내에 제시된 세부항목별 평가기준안¹⁵⁾에 의한 현재 기준과 그에 대한 개선요구를 살펴보았다.

1) 어린이집 운영계획

가) 현재 기준

(1) 보육사업계획

2014 보육사업안내에 제시된 세부항목별 평가기준안에 의하면 표준보육과정에 따른 보육사업계획 및 보육지침에 표기된 법령과 관련 활동 계획, 취약보육 계획 등 계획된 프로그램에 대한 참신성, 전문성, 주민호응성, 실행가능성, 지역 적합성을 중심으로 우수한 경우 20점, 보통인 경우 16점, 미흡한 경우 12점으로 구분하여 점수를 부여한다.

15) 2014 보육사업안내, p. 22~25

(2)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및 평가계획

교육, 영양, 안전, 부모에 대한 서비스, 지역사회와 교류 등에 대해 보육의 기본원칙을 반영하는지의 여부를 평가한다. 운영 및 관리, 평가 계획의 구체성, 타당성, 참신성, 전문성, 이행가능성이 우수한 경우 10점, 보통인 경우 8점, 미흡한 경우 6점으로 점수를 부여하도록 한다.

(3) 예산의 적절성

세입과 세출에 관한 예산이 어린이집에 우수하게 편성된 경우 10점, 보통인 경우 8점, 미흡한 경우 6점을 주도록 제시하였다.

〈표 IV-2-1〉 신규·변경 공통심사 기준표 중 어린이집 운영계획 항목 및 배점

점수	세 부 항 목		배점
40	- 보육사업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보육과정에 따른 보육 사업 계획 • 보육지침에 표기된 법령과 관련한 보육 활동 계획 • 취약보육운영계획 등 	20 16 12
	-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및 평가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반적 시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및 평가계획 	10 8 6
	- 예산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입·세출에 대한 예산편성의 적절성 	10 8 6

나) 개선 요구

첫째, 무엇보다 최저점이 너무 높아 변별력이 없음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 최저점을 현재의 6점 보다 낮추어 4점 정도를 부여함이 적절하다는 의견이다.

둘째, 단일 점수가 아닌 점수 구간을 제시하자는 의견이 있다. 예를 들어, 20점, 16점 보다는 17~20점, 13~16점으로 하자는 것이다.

셋째, 어린이집 운영계획의 세부항목 간 점수배점을 조정하자는 안도 있다. 세부항목 중 '보육사업계획'의 20점이라는 비중을 낮추고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및 평가계획'에 대한 10점의 비중을 늘려 조정하자는 의견이다.

넷째, '취약보육운영계획'을 '보육사업계획'이 아닌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및 평가계획' 항목으로 이동함이 타당하고 그에 따른 배점 조정을 함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취약보육이 무엇인지에 대한 범위의 규정이 필요하

다는 의견도 있다. 또한, 취약보육에 영아보육이 포함됨은 적절치 않으므로 정규보육으로 범주화되어야 함을 제의하였다.

다섯째, 세입·세출에 대한 예산편성에 대한 적절성의 기준이 모호함을 들어 구체적 기준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구체적 기준 마련이 어렵다면 권장 기준의 예를 제시하는 방법¹⁶⁾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2) 운영체의 대표 및 원장의 전문성

가) 현재 기준

(1) 평가인증 참여 여부

원장, 교사로 재직하면서 평가인정 신청을 하고 심의 통과여부에 대해 점수를 차등 부여하는 것으로 참여하여 통과한 경우 10점, 참여 중인 경우 7점, 미참여한 경우 3점으로 구분 부여한다.

〈표 IV-2-2〉 신규변경 공통심사 기준표 중 운영체 대표 및 원장 전문성 항목 및 배점

점수	세 부 항 목		배점
35	- 평가인증 참여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하여 통과 • 참여(중) • 미참여 	10 7 3
	-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년 이상 • 5년 이상~10년 미만 • 3년 이상~5년 미만 	10 8 6
	- 보육관련 표창 또는 연구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창 또는 연구실적 유·무 	5
	- 공모사업 수상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관련 공모사업 수상실적 	4 3
	- 보육사업에 대한 열의 및 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견발표로 운영능력 종합평가 	10
	- 운영의지		8
	- 향후 발전계획		6

(2)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경력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경력이 10년 이상(10점), 5년~10년 미만(8점), 3년~5년 미만(6점)으로 차이를 둔다. 직위별 경력 인정의 기준으로 원장은 100%, 보육교직

16) 예를 들어, 식비는 00-00인 규모의 시설은 1인당... 원 이상으로 책정함. 특별활동비 등 별도항 목은 예산서와 결산서에 각각 별도로 책정하여 분리 관리함(보육전문가 의견임).

원은 70%를 적용한다.

(3) 보육관련 표창 또는 연구실적 및 공모사업 수상 실적

보육관련 표창 또는 연구실적(학위논문 제외) 및 공모사업 수상 실적이 우수한 경우 5점, 보통인 경우 4점, 없는 경우 3점을 부여한다.

(4) 원장(내정자)의 어린이집 운영의 전문성과 운영의지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전문지식, 열의 및 태도, 향후 발전계획이 우수한 경우 10점, 보통인 경우 8점, 미흡한 경우 6점을 부여하며, 소견발표로 종합평가한다.

나) 개선요구

첫째, 평가인증 참여 배점에 대한 하향 조정 요구가 많았다. 대부분의 어린이집에서 평가인증이 이뤄지는 추세임을 감안하여 하며, 신임 원장의 경우 평가인증을 통과한 경우와 비교하여 7점의 차이를 지니므로 경력자를 우선하는 기준으로 여겨진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둘째, 평가인증 참여 배점을 통과점수와 연계하여 반영하자는 의견이다. 대부분의 어린이집이 평가인증을 통과하므로 변별력이 떨어짐을 고려하여 통과점수에 따라 차등을 두자는 의견도 다수 있었다. 즉, 통과(90점 이상) 10점, 참여하여 통과(90점 미만) 8점, 참여 중 6점, 미참여 4점으로 하자는 예도 제시되었다.

셋째,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경력기준에 대한 이견은 비교적 적었으나, 배점을 세분화하여 3년 미만경력의 경우도 4점의 점수를 부여하자는 의견이 있다. 또한 원장의 전문성에 대한 기준으로 보육관련 전공여부를 반영하자는 안도 있었다.

넷째, 보육관련 표창 또는 연구실적(학위논문 제외) 및 공모사업 수상 실적의 우수한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제시한 실적의 우열을 가리기 힘들고, 연구실적¹⁷⁾ 등을 어느 선까지 인정해야하는지 애매하며, 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 3점을 주기에 우수한 경우 5점과의 실질적 변별은 2점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최근 3년 또는 5년 이내처럼 기간의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¹⁸⁾ 공모사업 수상실적 항목은 신청자가 개인일 경우에만 적

17) 연구실적의 기준을 관련 학술지 개재 및 학회 발표로 하자는 의견이 있음.

18) 서울 마포구의 경우는 3년 이내 외부기관(장관, 시장 등) 표창 또는 연구실적, 공모사업 수상 실적 1건 이상(5점), 관할 관청, 연합회, 센터 등 내부 1건 이상(4점), 실적 없음(3점)으로 세부 지침을 적용 중임.

용이 타당하나 개인이 공모하는 경우는 드물고, 개인이 아닌 경우에는 운영체의 시설운영실적과 중복적인 성격이 강하다는 이유를 들어 이 항목을 삭제하자는 안도 있었다.

다섯째, 소견발표로 운영능력을 평가함이 애매하고 그 내용이 상위 3개 항목과 중복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배점을 하향조정하자는 의견이 개진되었다. 이에 반해 원장의 전문성, 인품과 태도, 경영의지 등을 엿볼 수 있는 기회임을 들어 소견발표의 중요성을 강조한 의견도 있다. 지자체에 따라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적용하는 경우¹⁹⁾도 있었다. 또한 이 항목의 최저점이 6점으로 너무 높아 변별력을 기대하기 힘들므로 4점으로 하향 조정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3) 운영체의 시설운영 실적

가) 현재 기준

평가세부항목은 하나로 10점의 배점을 지니나, 평가기준안(2014 보육사업안내: 24)에는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실적과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관련 지역사회 기여도의 배점을 각각 5점씩 구분 제시하였다.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실적은 위탁신청서 상의 내용 중 관련 실적이 우수한 경우(5점), 보통인 경우(4점), 미흡한 경우(3점)을 기준으로 한다.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관련 지역사회 기여도도 우수한 경우(5점), 보통인 경우(4점), 미흡한 경우(3점)로 동일 배점이다.

〈표 IV-2-3〉 신규변경 공통심사 기준표 중 운영체의 시설운영 실적 항목 및 배점

점수	세 부 항 목	배점
10	-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실적 - 복지 및 보육관련 지역사회 기여도	10 8 6

나) 개선요구

첫째, 아무리 미흡해도 본 세부항목에서 6점을 기본으로 얻게 되므로 최저점이 너무 높은 경향이 있어서 그 배점을 하향 조정하자는 견해가 있다.

19) 서울 마포구의 경우 운영목표 및 중점관리계획 수준(1~3점), 원장의 복지부 및 서울시 정책의 이해정도(1~3점), 원장의 운영의지 및 전문지식 수준(2~4점)을 적용 중임.

둘째,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실적에 대해 어린이집 운영 경험이 없는 자에 대한 평가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사업운영평가 실적에 대한 기준을 구체화한 경우²⁰⁾도 있다.

셋째, 복지 및 보육관련 지역사회 기여도를 무엇으로 판단할지 기준이 모호하다.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판단기준이나 어떤 기여가 가능한지에 대한 예시를 제시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4) 운영체의 공신력

가) 현재 기준

운영체의 도덕적·법적 건전성을 기준으로 운영체의 공신력을 가늠한다. 운영체에 대한 법령 위반 및 지도점검 시 지적사항 및 민원 발생에 대한 사후처리 실태를 고려한다. 구체적으로는 어린이집 운영경험이 있는 자로, 지도점검 시 지적사항 및 민원 발생 사항이 없거나 있더라도 처리결과가 우수한 경우로 또는 신청자의 운영목적이 시설을 운영하기에 우수한 경우 10점, 보통인 경우 8점, 미흡한 경우 6점을 부여하는 것이다.

〈표 IV-2-4〉 신규변경 공통심사 기준표 중 운영체의 공신력 항목 및 배점

점수	세 부 항 목	배점
10	- 도덕적·법적 공신력 - 법적 건전성 및 지도점검 지적사항·민원발생에 대한 처리실태 - 운영 목적이 위탁 대상 시설과의 적정성 여부	10 8 6

나) 개선요구

첫째, ‘어린이집 운영 경험이 있는 자’로 단서를 달고 있어서 운영경험이 없는 자에 대해 0점을 부여하는지 최하점인 6점을 부여하는지 애매하므로 최하점에 ‘어린이집 운영경험이 없는 자’를 추가하자는 의견이 있다.

둘째, 운영을 투명성 확보를 위해 운영체의 도덕적 법적 건전성이 중요하므로 이 항목에 대한 배점을 상향 조정하자는 의견도 있다.

20) 서울 마포구의 경우 실적보고서 상의 내용과 평가가 우수한 경우(5~4점), 실적보고서 상의 내용과 평가가 보통인 경우(3~2점), 실적보고서 상의 내용과 평가가 미흡한 경우(1~0점)을 적용 중임.

셋째, 관외시설에서 운영한 경우 해당 부서에서 지적사항 및 민원발생에 대한 처리 실태를 확인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처음 어린이집을 위탁 신청한 경우 민원의 발생 건수가 없어 최고점을 받을 수 있어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넷째, 지자체에 따라서는 기준으로 정량적 요소를 반영하고 세부 평가 기준을 구성 적용하는 경우²¹⁾도 있다.

다섯째, 위탁운영체는 지적사항이나 민원사항, 원장후보자는 지도점검실적 등으로 위탁운영체와 원장후보자의 배점을 분리하자는 의견도 있다.

5) 운영체의 재정능력

가) 현재 기준

기준을 법인의 경우와 단체·개인의 경우로 구분하며, 부채현황은 자산에서 경감한다. 법인은 운영체의 자산이 5억 이상인 경우 5점, 3억~5억 미만은 4점, 3억 미만인 경우는 3점으로 배점한다. 단체·개인의 경우는 자산이 2억 이상인 경우 5점, 1억~2억 미만은 4점, 1억 미만인 경우는 3점이다. 개인은 배우자의 자산의 50%를 인정한다.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조정가능하다.

〈표 IV-2-5〉 신규변경 공통심사 기준표 중 운영체의 재정능력 항목 및 배점

점수	세 부 항 목	배점
5	- 운영체의 자산 및 부채 현황	5, 4, 3

나) 개선요구

첫째, 자산이 포괄하는 범위가 넓어 기준의 적용이 무의미할 수 있다는 것이

21) 서울 마포구의 경우임.

점수	운영체의 공신력	배점	비고
10	- 지도점검 및 민원 발생 건수 없음(5점), 1건 이상(4점), 3건 이상(3점)	3~5	정량
	- 지도점검 및 민원 발생 처리상태 우수(2점), 보통(1점), 미흡(0점)	0~2	
	- 운영체의 형태와 목적이 위탁대상 시설과 적합성 매우 적합(3점), 비교적 적합(2점), 상관관계미비(1점)	1~3	

다. 단체의 경우 건물 하나의 가격만도 5억이 넘으나 실제 유동자산이 아니면 운영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음을 고려하여, 자산에 대한 세부 기준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인지 동산인지 또 동산일 경우 저축만을 의미하는지 보험까지 포함하는지 모호하다는 의견이다.

둘째, 일부 의견으로는 법인의 경우 전입금에 대한 가산항목을 추가하자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대해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주장과 함께 오히려 전출금이 없도록 평가하고, 법인과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반대 의견도 있었다.

3.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재위탁 공통심사 기준표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의 경우는 공통심사 기준표(2014 보육사업안내:21)와 세부항목별 평가 기준안(2014 보육사업안내:26~29)을 권장사항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실제로 적용하여 위탁체 선정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국 시군구 보육담당자의 개선요구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재위탁 공통심사 기준표 구성 전반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공통심사 기준표는 운영체의 시설운영 및 사업 실적(30점), 운영체의 대표 및 원장의 전문성(30점), 어린이집 운영계획(25점), 운영체의 공신력(10점), 운영체의 재정능력(5점)의 5개 심사항목의 총점 100점의 점수로 구성된다. 지자체에 따라서는 이와는 별도로 기준을 두어 재위탁을 심사하기도 한다.²²⁾

첫째, 재위탁 심사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 운영실적을 평가하는 것인므로 운영실적의 비율을 더 높여 40~50%까지 강화하여도 좋다는 의견이 있었다.

22) ① 전북 남원의 경우는 어린이집 운영계획 및 설명회 60점,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30점, 운영체의 재정능력 10점에 기준하여 평가함.

② 경남 합천의 경우는 서면평가 40점(보육근무경력 10점, 보육관련 학력 10점, 지역사회 기여도 5점, 봉사활동 실적 5점, 자격증 및 교육이수 6점, 표창수여 4점), 보육시설 운영계획 평가 40점(표준보육과정운영, 프로그램운영 평가, 재정능력 평가, 위탁기간 사업실적 평가, 예산편성 집행계획 적합성), 심사위원회 평가 20점(책임감, 전문성 시설장으로의 리더십)

둘째, 공통심사기준표에 의한 최저통과기준 70점 미만을 상향 조정하자는 것으로 재위탁 시 현재 운영체 및 원장을 대상으로 이상의 항목 평가 총점이 70점 이상인 경우 재위탁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²³⁾에 대해 80점으로 기준을 강화하자 는 의견이 있다. 재위탁 공통심사 기준표의 각 심사항목별 배점의 최저점을 합산하면 57점임을 고려하면 하한선 70점의 기준이 쉽게 도달할 수 있는 점수임을 알 수 있다. 이 하한기준에 대해서는 공통심사기준표의 배점기준이 세분화되지 않아 70점 미만의 점수가 나오기 어려워 재위탁 받기에 유리한 상황이므로 80점 미만으로 수정하자는 전문가의 의견도 있었다.

나. 재위탁 공통심사 기준표 심사항목별 개선요구

각 심사항목별 2014 보육사업안내에 제시된 세부항목별 평가기준안에 의한 현재 기준과 그에 대한 개선요구를 확인하였다.

1) 운영체의 시설운영 및 사업 실적

가) 현재 기준

신규·변경기준에 10점이었던 비해 본 항목의 점수가 재위탁 시는 20점 상향 조정되어 30점을 부여한다. 이는 재위탁 시는 현재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는 상황에 대한 평가가 상대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이다.

(1) 시설운영관리

어린이집의 관리 및 보육교직원관리, 어린이집운영위원회 운영실적²⁴⁾,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자체평가²⁵⁾ 여부, 입소우선순위 준수여부, 지역사회와의 협조체 제유지정도 등에 대해 상기내용을 포함하는 시설운영 관리 실적이 우수한 경우는 10~9점, 보통인 경우는 8~7점, 미흡한 경우는 6~4점을 부여한다.

(2) 보육사업계획의 이행여부

보육사업 계획대비 이행 실적이 우수한 경우 10~9점, 보통인 경우는 8~7점, 미흡한 경우는 6~4점을 부여함을 기준으로 한다.

23) 재위탁 심사결과 70점 미만일 경우, 부적격 처리하고 변경위탁(공개경쟁)을 추진함.

24)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개회횟수(연 3회 이상)

25) 원장과 보육교사를 포함하는 자체평가(연2회 이상) 및 부모이용 만족도 조사 실시 여부

(3) 회계관리의 적정성

예산과 결산이 적합하고 집행과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져 회계관리가 우수한 경우는 10~9점, 보통인 경우는 8~7점, 미흡한 경우는 6~4점을 부여함을 기준으로 한다.

신규·변경의 경우 이 십사항목이 배점이 10점이었으나 재위탁 시는 운영하였던 실적이 중요하므로 30점으로 강화되고, 배점도 구간으로 제시함으로써 구별된다.

〈표 IV-3-1〉 재위탁 공통심사 기준표 중 운영체의 시설운영 및 사업 실적 배점

점수	세 부 항 목	배점
30	- 시설 운영 관리	10~9 8~7 6~4
		10~9 8~7 6~4
	- 보육사업 계획 대비 실적	10~9 8~7 6~4
		10~9 8~7 6~4
	- 회계 관리의 적절성	10~9 8~7 6~4
		10~9 8~7 6~4

주: 굵은 글씨로 표시된 부분은 신규·변경 위탁 기준과 차이를 보이는 부분임.

나) 개선요구

첫째, 용어에 대한 수정요구가 있다. ‘시설’이라는 용어를 ‘어린이집’으로 수정하여 ‘시설 운영 관리’는 ‘어린이집 운영 관리’로 참고로 첨부된 ‘시설운영위원회’도 ‘어린이집운영위원회’로 수정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평가 기준안에서 기준표와 동일하게 용어를 사용하여 ‘보육사업 계획의 이행여부’보다는 ‘보육사업 계획 대비 실적’으로 표현함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있다.

둘째, 운영체의 운영 및 사업실적에 대한 세부 항목의 예시를 구체화하자²⁶⁾는 의견이다. 특히 항목으로 보육교사의 이직률을 반영하자는 의견²⁷⁾도 있다. 최저점이 너무 높으므로 변별을 위해 최저점을 하향 조정하자는 견해도 있었다.

26) 경남 산청군의 경우 세부항목 평가 기준으로 시설운영위원회 횟수(연3회 이상), 자체평가(원장, 보육교사 연2회, 부모 1회), 평가기간 동안 교사의 이직율(30% 이하)지역사회 연계 사업 실시 여부

27) 재위탁 평가 해당기간에 발생한 이직건별 사유를 기록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자문의견 A).

셋째, 몇몇 지자체의 경우²⁸⁾는 보육사업 계획 대비 실적이 모호하여 실제적 내용이 시설운영관리와 중첩될 수 있다는 이유로 그 배점을 없애고 시설운영관리의 배점을 20점으로 상향조정하기도 한다.

넷째, 회계관리 세부항목이 모호하여 구체화한 기준제시에 대한 요구가 높다. 세부 기준을 개발·적용²⁹⁾하거나, 최근 3개월의 회계 서류를 첨부하기도 한다.

다섯째, 전반적으로 우수, 보통, 미흡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없어 심사위원의 주관성이 개입하기 쉬움에 대한 우려도 있다.

2) 운영체의 대표 및 원장의 전문성

신규·변경기준이 35점이었던 것에 비해 본 항목의 점수가 재위탁 시는 30점으로 5점정도 하향 조정된 점수이다.

가) 현재 기준

운영체 대표 및 원장의 전문성에 대한 기준안은 신규 변경 위탁 시 적용하는 기준과 거의 동일하고, 단지 원장(내정자)의 어린이집 운영의 전문성과 운영의 지의 배점만이 하향 조정되어있다.

(1) 평가인증 참여여부

원장, 교사로 재직하면서 평가인정 신청을 하고 심의 통과여부에 대해 점수를 차등 부여하는 것으로 참여하여 통과한 경우(10점), 참여 중인 경우(7점), 미 참여한 경우(3점)로 구분 부여하여 신규 변경 위탁 시 기준과 동일하다.

(2)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경력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경력이 10년 이상(10점), 5년~10 미만(8점), 3년~5년 미만(6점)으로 차이를 둔다. 직위별 경력 인정의 기준으로 원장은 100%, 보육교직원은 70%를 적용하여 신규 변경 위탁 시 기준과 동일하다.

28) 경남 산청군의 경우임.

29) ① 서울 마포구는 결산 시 잔액사유 적정성(2~4점), 회계감사 시 지적사항 여부(2~4점), 전입금 등 사용 적절성(0~2점)을 기준으로 마련함.
 ② 경남 산청군은 예산서 기한 내 제출여부, 정보공시 포털 자료 업데이트 여부, 기타 필요 경비 정산의 적정성, 추경예산의 편성 여부 등을 고려함.
 ③ 인천 남동구는 재위탁 평가기간의 필요경비 잔액을 일반경비로 전환한 액수총액과 해당연도 예산에서의 비율을 별도 항으로 명시하도록 함.

(3) 보육관련 표창 또는 연구실적 및 공모사업 수상 실적

보육관련 표창 또는 연구실적(학위논문 제외) 및 공모사업 수상 실적이 우수한 경우 5점, 보통인 경우 4점, 없는 경우 3점을 부여하여 신규·변경 위탁 시 기준과 동일하다.

(4) 원장(내정자)의 어린이집 운영의 전문성과 운영의지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전문지식, 열의 및 태도, 향후 발전계획이 우수한 경우 5점, 보통인 경우 4점, 미흡한 경우 3점을 부여한다.

신규·변경 위탁 시 기준과의 차이는 배점이 5점정도 하향 설정되었고, 소견 발표를 명시하지는 않았다.

〈표 IV-3-2〉 재위탁 공통심사 기준표 중 운영체 대표 및 원장의 전문성 배점

점수	세부항목	배점
30	- 평가인증 참여 여부	• 참여하여 통과 10
		• 참여(중) 7
		• 미참여 3
	-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경력	• 10년 이상 10
		• 5년 이상~10년 미만 8
		• 3년 이상~5년 미만 6
	- 보육관련 표창 또는 연구실적	• 표창 또는 연구실적 유·무 5
		• 보육관련 공모사업 수상실적 4
	- 보육사업에 대한 열의 및 태도 - 운영의지 - 향후 발전계획	• 보육관련 공모사업 수상실적 3
		• 운영능력 종합평가 5
		• 운영능력 종합평가 4
		• 운영능력 종합평가 3

주: 굵은 글씨로 표시된 부분은 신규·변경 위탁 기준과 차이를 보이는 부분임.

나) 개선요구

첫째, 평가인증 참여여부에 대해 평가인증 통과여부가 아닌 평가인증 점수를 배점과 연계하여 반영하자는 의견³⁰⁾이 제시되었고 실제로 지자체 기준으로 평가인증 점수에 따른 차이를 두는 경우³¹⁾도 있었다.

30) 평가 인증 점수가 90점 이상은 10점, 85~90점 미만은 7점, 80~85미만이거나 참여 중인 경우는 5점, 미 참여는 3점으로 구분 부여함.

31) 서울 마포구의 경우 평가인증 점수 95점 이상(10점), 90~94점(9점), 89점 이하(8점)로 구분 반영함.

둘째,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경력에 대한 의견으로 3년 미만에 대한 점수 부여 여부를 명확히 하자는 것과 배점에 대한 하향 조정을 제안하여 5, 4, 3점을 부여하자는 의견이 있다.

셋째, 보육관련 표창 또는 연구실적, 공모사업 수상 실적 등에 기준이 모호하다든지, 명확한 기준 제시나 세부기준 예에 대한 제시요구 등 대부분 신규·변경 시 제언과 유사하나,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의 업무량이 과다함으로 재위탁 기준으로 표창 및 연구실적을 요구함이 무리라는 견해도 있었다.

또한, 보육관련 표창 경력이 원장의 전문성에 대한 평가 기준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나왔다. 보육관련 표창이 지자체에서 주관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인맥이 넓거나 외부활동이 많을수록 받을 확률이 높아 오히려 이는 어린이집의 운영에 충실하지 않다는 반증도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런 우려로 인해 재위탁 평가기간 중 원장의 외부업무 현황(수업수강, 출강, 외부회의 등)을 기록하는 란을 두자는 자문진 의견도 있었다.

넷째, 보육사업에 대한 열의 및 태도, 운영의지, 향후 발전계획에 대한 지자체 기준을 마련³²⁾하거나, 신규·변경 시와 달리 소견발표가 삭제됨은 어떤 평가 방법을 사용하라는 것이지 모르겠다는 내용이 있었다. 발전계획에 대한 평가에는 제시한 계획의 구체성과 실행가능성을 고려해야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다섯째, 원장의 리더십이나 재교육 현황을 통한 전문성 평가 기준을 추가할 것에 대한 의견도 있다. 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지속적인 전문성 개발 노력은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 유지와 연관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3) 어린이집 운영계획

가) 현재 기준

신규·변경기준이 40점이었던 것에 비해 본 항목의 점수가 재위탁 시는 15점 하향 조정되어 25점을 부여한다.

32) 강원 철원군의 경우 원장의 전문성에 대한 점수를 15점으로 하여, 원장의 어린이집 운영의 전문성과 운영의지 능력에 10점, 8점, 6점을 부여하고 어린이집원장으로서의 정신자세, 지도능력, 성실성에 5점, 4점, 3점을 부여하는 기준을 둠.

서울 마포구의 경우는 신규·변경과 동일하게 재위탁 시에도 운영목표 및 중점관리계획 수준(1~3점), 원장의 복지부 및 서울시 정책의 이해정도(1~3점), 원장의 운영의지 및 전문지식 수준(2~4점)을 적용 중임.

(1) 보육사업계획

표준보육과정에 따른 보육사업계획 및 보육지침에 표기된 법령과 관련활동 계획, 취약보육계획 등 계획된 프로그램에 대한 참신성, 전문성, 주민호응성, 실행가능성, 지역적합성을 중심으로 한다. 재위탁 시는 이 항목에 대해 신규·변경 기준보다 하향 조정된 우수한 경우(10점), 보통인 경우(8점), 미흡한 경우(6점)로 점수를 부여한다.

(2)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및 평가계획

교육, 영양, 안전, 부모에 대한 서비스, 지역사회와 교류 등에 대해 보육의 기본원칙을 반영하는지의 여부를 평가한다. 운영 및 관리, 평가 계획의 구체성, 타당성, 참신성, 전문성, 이행가능성이 우수한 경우(10점), 보통인 경우(8점), 미흡한 경우(6점)로 점수를 부여하도록 한다. 재위탁 시 기준은 신규·변경기준과 동일하다.

(3) 예산의 적절성

세입과 세출에 관한 예산에 대한 평가로 재위탁 시는 이 항목에 대해 신규·변경기준보다 하향 조정된 우수한 경우(5점), 보통인 경우(4점), 미흡한 경우(3점)로 점수를 부여한다.

〈표 IV-3-3〉 재위탁 공통심사 기준표 중 어린이집 운영계획 배점

점수	세 부 항 목		배점
25	- 보육사업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보육과정에 따른 보육 사업 계획 • 보육지침에 표기된 법령과 관련한 보육 활동 계획 • 취약보육 운영계획 등 	10 8 6
	-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및 평가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반적 시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및 평가계획 	10 8 6
	- 예산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입·세출에 대한 예산편성의 적절성 	5 4 3

주: 굵은 글씨로 표시된 부분은 신규·변경 위탁 기준과 차이를 보이는 부분임.

나) 개선요구

첫째, 보육사업계획과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및 평가계획 대체 서 최저점이 너무 높다는 의견이 많았다.

둘째, 적절성의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한 제시요구가 있다.

셋째, 어린이집 운영·관리 계획 및 평가에 대해서는 위탁기간 중의 현황과 이에 대한 보완노력, 향후 계획이 서술되면 좋겠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다.

4) 운영체의 공신력

가) 현재 기준

재위탁 시 공통심사 기준표의 심사항목 및 세부항목은 신규 및 변경이 경우와 동일하나, 세부항목별 평가기준안의 내용은 그와 차이³³⁾를 보인다.

운영체에 대한 법령 위반 및 지도점검 시 지적사항 및 민원 발생에 대한 사후처리 실태를 고려한다. 구체적으로는 지도점검 시 지적사항 및 민원 발생 사항이 없거나 있더라도 처리결과가 우수하게 처리하고 위탁 시 체결한 약정사항 이행정도가 우수한 경우 10점, 보통인 경우 8점, 미흡한 경우 6점을 부여한다.

약정사항은 취약보육, 정관 목적사업 등재여부, 법인·단체의 경우 원장이 변경되었을 경우 최초 위탁 시 원장이 갖춘 전문성에 준하여야 함을 뜻한다.

〈표 IV-3-4〉 재위탁 공통심사 기준표 중 운영체의 공신력 배점

점수	세 부 항 목	배점
10	- 도덕적·법적 공신력	10
	- 법적 건전성 및 지도점검 지적사항·민원발생에 대한 처리실태	8
	- 최초 위탁 시 약정사항 이행 정도	6

나) 개선요구

첫째, 신규 및 변경 위탁기준에 제시했던 의견과 유사하고 최저점이 6점으로 너무 높다는 지적이 있다. 점수의 폭을 더 두어 변별력을 살리자는 의견이다.

둘째, 운영체의 공신력 평가를 위해 자자체마다 세분화된 지표를 적용³⁴⁾하고 있기도 하다.

33) 재위탁의 경우는 어린이집 운영경험이 있는 자로의 단서가 없고, 위탁 시 체결한 약정사항 이행정도가 반영됨.

34) 서울 동대문구의 경우 재위탁 운영체의 공신력 평가를 위해 ①위탁기간동안 법령위반 및 지도점검 지적사항·민원사항으로 5점, 3~4점, 1~2점으로 부여하고, ②위탁약정사항 이행 및 보고사항 성실이행여부에 대해 안전교육 계획 및 결과보고, 확정예산안, 세입세출 결산보고 등을 기준하여 5~4점, 2~3점, 1점을 부여한다.

5) 운영체의 재정능력

가) 현재 기준

운영체의 재정능력에 대한 공통심사기준과 세부항목별 평가 기준은 신규·변경 위탁기준과 동일하다. 법인과 개인으로 구분하여 자산규모에 차이를 두어 평가하며,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조정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표 IV-3-5〉 재위탁 공통심사 기준표 중 운영체의 재정능력 배점

점수	세 부 항 목	배점
5	- 운영체의 자산 및 부채 현황	5, 4, 3

나) 개선요구

첫째, 위탁기간 동안의 재정적 기여도를 반영하자는 의견이다. 재위탁임을 감안할 때 수탁자의 자산 및 부채현황에 대한 평가보다는 위탁 기간 동안 시설환경 개선 등을 위해 기타운영비를 적립한 실적 등을 평가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는 의견이다.

둘째, 최초 위탁 시 제시한 전입금의 지원계획에 준하여 실제 전입금 이행실적을 포함할 것에 대한 건의가 있다.

셋째, 위탁체의 재정능력 평가 시 자본대비 부채가 과도한 경우 감점하는 기준을 두자는 의견도 나왔다.

V.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공공성 제고 노력

보육수요자들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서비스 제공의 방법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대설치에 대한 요구가 높고, 이에 부응하여 최근 다양한 유형으로 확충 노력이 진행 중이다. 신축과 증개축이라는 일반적인 경우 이외에 설치비용절감을 위해 아파트단지의 민간어린이집 전환, 민간어린이집 및 어린이집이 아닌 건물의 매입 후 리모델링, 민간이 토지나 건물을 제공하고 지자체가 건물의 설치나 그 운영비용을 지원하는 민관연대 방법 등이 추진되고 있다. 이런 경우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과정에서 공개경쟁의 예외 기준을 두는 등 일종의 기득권을 보호하고 있으나, 이 또한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사안이므로 국공립어린이집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장치 마련에 대해 숙고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더불어 최근 사회적협동조합이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로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으로 그 성격이 사회적 목적의 실현이라는 이타적 동기에 기반한 조합으로 이윤창출이 목적이 될 수 없으므로 국공립어린이집의 투명하고 안정성 있는 위탁주체로서의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5장에서는 최근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시 공개경쟁 예외로 고려되는 방법들에 대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시 강점과 우려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 대표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또한 사회적협동조합의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로서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국내외 사례고찰을 통해 살펴본다.

1.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유형별 고려점

신축의 경우는 문제시 되지 않으나 확충 소요비용의 절감을 위해 시도되는 대표적인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유형별 장단점과 사례를 살펴보고, 현재 이러한 어린이집을 위탁하는 원장을 대상으로 한 집단면담의 결과를 반영하여 공공성 확보를 위한 고려점을 고찰하고 한다.

가. 민간 매입의 경우

민간어린이집 매입은 운영이 어렵거나 낙후된 민간어린이집을 매입하여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경우로 신축부지 확보가 곤란하거나 판내 어린이집이 많아 추가로 시설확충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실시된다.

건물 매입비는 예산범위 내에서 국비지원 한도액인 251,460,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기자재 구입비 명목으로 개소 당 2,000만원이 지원된다(보건복지부, 2014b:381,383).

1) 장단점

민간 매입의 경우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새로 신축하는 경우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을 절감하고 지역 주민에게는 저렴한 보육료로 질 좋은 보육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특히, 이 경우는 신축의 경우보다 대략 1/10까지 비용을 줄이면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전환 과정에서 원장 및 교사들의 고용 승계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에 대한 조율이 필요하다. 또한, 이 경우 서문희 외(2007:234)의 연구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가장 큰 어려움은 매입가격의 문제로 사고자하는 지자체는 공시지가를 적용하고자 하고, 팔고자하는 민간어린이집 원장은 그 이상을 희망하여 절충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민간 매입은 농어촌 등 열악한 민간시설을 우선적으로 매입하여 국공립시설로 전환하거나, 국민연금기금 ('94년~'97년)을 받아 설립하였던 어린이집이 우선 검토 대상이 된다(보건복지부, 2014b:381).

“정말 부동산 가치를 생각한다면 아무도 국공립으로 매매할 수 없는 상태예요. 시세와 비교하여 손해가 1억 5천정도 났는데,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가 될까 내려놓을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정말 이 지역사회에서 오래 운영했고,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것을 해주고 싶고, 민간 운영으로서는 너무 어렵고 그렇다면...(원장 A)³⁵⁾”

35) 민간어린이집 원장이었으나,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매도 후 완전공개경쟁을 통해 위탁받은 경우에 해당함.

“이제 운영하는데 너무너무 편해요. 원아모집이라든지, 아, 민간으로 운영할 때 보다 국공립으로 전환했을 때, 그 타이틀 자체 하나가 사람들 마음을 동요시키죠. 정말 원아모집에 신경을 안 쓰고, 운영 면에 있어서 인건비 걱정을 안 한다는 거. 그리고 정말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환경을 줄 수 있다는 거...(원장 A)”

“일단은 구에서 리모델링을 다 해주어, 현집이 새집 되었다고 얘기를 해요. 저희 학부모나 아이들이 바뀐 게 아니잖아요. 그대로인 상태에서 건물만 구에서 매입을 한 상태이고, 새 건물이 되는 과정을 학부모하고 다 지켜본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공간이 너무 좋아지고, 너무 안정적이고, 모든 특기비 등 보육료가 추가로 부과되는 것이 없고, 이러니 학부모들이 너무 행복해지는 거예요(원장 A).”

“교사들은 주변에서 원장님들이 A어린이집 교사들은 로또 맞았다고 했어요. 국공립어린이집 교사로 승계를 다 했으니까요. 승계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죠. 열심히 하는 교사들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그대로 가겠다고 했고, 올 1년을 승계하면서 선생님들의 태도에 대해서 평가를 하겠다고 했고, 더 열심히 해요(원장 A).”

2) 사례

“서울시 여성가족정책, 어떻게 구현되고 있을까요?”

< 7개소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추진 동작구, 주민들의 긍정적 평가 이어져>

동작구가 민간어린이집을 매입해 지난 9월 1일 문을 연 동작구 신대방2동 어린이집의 학부모들은 "집 근처에 국공립어린이집이 생겨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데다 월 보육료도 사립 시설에 비해 훨씬 저렴해 경제적"이라며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다. 동작구는 올해 7개소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에서 82억 8천만원을 보조하고 구비로 12억 1천 7백만원을 부담하여 2014년까지 7개소를 순차적으로 개원할 예정이라고 한다. 동작구는 1동 2개소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목표로 2017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25개소를 추가로 증설하여 현재의 2배 수준까지 늘려 국공립 시설을 30%까지 높여간다는 계획이다.

〈출처〉 서울특별시(2012.12.14.)³⁶⁾

36) 서울특별시(2012.12.14.). 서울시 여성가족정책, 어떻게 구현되고 있을까요?. <http://woman.seoul.go.kr/archives/13923>에서 2014년 6월 17일에 인출.

3) 고려점

첫째, 민간매입을 확대하고자 한다면 적정매입가의 기준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공시지가로 매입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매도자인 민간 원장의 희망가격과는 격차가 크므로 설치지역시세를 고려한 절충적인 적정매입가의 기준설정이 요구된다.

둘째, 매도하는 민간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의 고용승계가 문제시 되는 상황으로 이용자인 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존 운영자가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후 위탁체로의 참여 여부에 반영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나. 리모델링의 경우

리모델링의 경우는 민간어린이집 또는 기존 건물을 매입하여 리모델링하는 경우와 공동주택 어린이집 국공립 전환에 따른 리모델링이 있다(보건복지부, 2014). 공동주택 어린이집 국공립 전환은 공동주택 내 법정어린이집의 공공성 회복을 돋고 각종 인센티브 지원을 통해 국공립화를 유도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리모델링비로 개소당 5,000만원까지 지원되고, 기자재 구입비로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경우 4,000만원이 지원되는 등 총 9,000만원까지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보건복지부, 2014b: 382,383).

1) 장단점

기존 건물을 활용해 어린이집으로 리모델링하는 경우는 건물을 새로 짓는 것보다 훨씬 적은 예산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실제로 서울특별시는 2012년 기존 건물을 최대한 활용해 108개의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했으며 이 때, 1개소 당 국공립어린이집을 신축하는 경우 평균 25억 원이 드는 비용을 평균 17억원 정도 절약하는 효과를 보았다(서울특별시, 2013. 03.11.).³⁷⁾

공동주택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시설로 전환하는 경우는 처음 국공립어린이

37) 서울특별시(2013.03.11). 서울시는 올해도 국공립어린이집 100개소를 확충합니다!
<http://woman.seoul.go.kr/archives/14657>에서 2014년 6월 13일에 인출.

집 위탁 시 기존 위탁체에게 공개경쟁을 예외 해주는 사례에 해당한다. 기존 공동주택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시설로 전환하는 경우는 신축이 아니기 때문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이용하고자 하는 대기 수요는 어느 정도 만족시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동안 정체되었던 어린이집 공급과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영유아 대기자 수요를 해소하는 대안은 될 수는 없다.

이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협의가 도출되어야지 그렇지 않을 경우 조합의 결정시기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시기 및 당사자들이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현재 주민과 운영하는 사람과의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져 민원이 야기될 소지가 있다(주택산업연구원 보도자료, 2014.02.25).³⁸⁾

“저희 아파트가 재개발이 되기 전에 민간어린이집을 운영하고 계셨던 분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분이 새로 아파트가 생기면 어린이집을 임대할 생각이었데요. 그런데 구청에서 국공립으로 설치를 하려다보니 이게 무상임대이니까... 민간에 주면 임대료를 받잖아요. 주민의 몇 %가 찬성해야 국공립으로 되고 민간으로 되고 이러는 와중에 굉장히 많이 싸우셨다고 들었거든요(원장B).³⁹⁾”

현재 공동주택 어린이집을 민간에 임대하는 경우는 대부분 입주자 대표회의에 임대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무상으로 임대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할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 입장에서는 임대수입이 없어지는 것으로 이를 수용하기 힘들다. 이러한 절충점으로 공동주택 입주민 자녀에 대해 입소우선 순위를 부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으나,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냥 민간으로 운영 하면 임대료 그냥 받고... 입주자 측에서는 임대료가 다달이 들어오면 운영비로 쓰는데 그게 안 들어온다는 건 굉장히 타격이에요(원장B).”

이런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최근에는 공동주택 건설사가 자체와 협약으로 시설의 설치는 건설사가 어린이집 내부 인테리어와 초기비용은 자체가 담당하는 경우도 있다.

“OO건설에서 아예 서울시와 협약을 맺었어요. OOO이라는 아파트가 지어질 때

38) 주택산업연구원 보도자료(2014.02.25). 신축 공동주택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활성화를 통해 아동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회분위기 확대 필요.

www.khi.re.kr/module/board/download.php?boardid=pds&b에서 2014년 6월 13일에 인출.

39)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받은 법인의 원장임.

는 그 안에는 국공립이 들어가는 걸 원칙으로 하자. 서울시와 협약을 했는데, 문제는 구에서 싫다고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건설사에서 건물을 지어주지만, 초기비용, 인테리어라던가 기자재 이런 거에 대한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서울시에서도 요구해도 구에서 그 돈은 안낸다고 하면 국공립이 안 생기는 거예요 (원장C).40)"

공동주택 단지내 국공립어린이집이 위탁 운영되는 경우의 강점은 보육수요자인 부모의 만족도 증가로 인해 주택가격의 상승으로 까지 나타나기도 한다.

"적은 예산 가지고 좋은 환경. 부모님들이 굉장히 선호하시고, 안정성. 그리고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 같은 동네의 다른 아파트보다 저희 아파트가 1억 이상이 뛰었대요. 그 이유가 국공립어린이집이 있기 때문이라는 점이 신문에 났었어요. 방송국에서도 촬영을 왔었고... 부모님들께 설문조사를 했을 때 거의 2/3.. 3/5 정도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있기 때문에 이사를 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원장C)."

2) 사례

"낡은 청소년 공부방 국공립 어린이집 변신"

지역 낡은 공부방이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틸바꿈했다. 서울 강서구는 다음 달 2일부터 공항대로 8가길 40 청소년 공부방을 리모델링해 만든 단이슬 어린이집을 본격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1993년 4월 공항동 청소년 공부방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했지만 낡은 시설 탓에 지역 학생들의 발길이 해마다 줄었다. 대안을 고심하던 구는 청소년 공부방을 공항동 주민센터로 옮기고 이곳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신축하기로 했다. 5세 이하 아이들을 대상으로 무상보육을 시행하면서 꾸준히 보육 수요가 늘었기 때문이다. 단이슬 어린이집은 대지 168㎡, 연면적 336㎡ 규모로 들어선다. 모두 11억원이 투자됐다.

〈출처〉 서울신문 자정고(2014.05.30.)⁴¹⁾

"신대방2동 구립어린이집 리모델링 개원에 이어 대방동 국공립 어린이집도 신축 확정"

신대방2동 구립어린이집은 2012년 2월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심의에 통과, 올 3월에 리모델링 공사에 착공하여 지난 9월 10일에 새 단장하여 개원했다. 이번 공사는 서울시로부터 8억 5천 2백만원을 지원받고 동작구가 9천 5백만원을 지출, 9억 4천 7백만원이 소요됐으며 내부 시설은 영유아 41명을 보

40)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받은 법인의 원장임.

육할 수 있는 보육실 5개가 최신식으로 리모델링되었다.

〈출처〉 동작뉴스닷컴(2013.09.24.)⁴²⁾

“성동구, 최초로 민간어린이집 구립으로 전환”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 내 민간어린이집이 전국에서 최초로 구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된다. 성동구는 신규 아파트 단지뿐만 아니라 기존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성동구가 지난달 성수동 강변건영아파트 입주민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 입주민 중 93%가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에 찬성해 오는 8월 전국 최초로 민간에서 국공립으로 전환된 어린이집이 개원할 예정이다. 민간어린이집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에 동의하는 경우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되고 있다. 성동구는 전환된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에게는 최초 3년 위탁 운영 우선권을 부여하고, 보육교직원은 배치 기준과 자격요건이 충족될 경우 고용을 승계할 방침이다. 또한 아파트 단지에 시설 유지·보수비 등을 지원하고, 아파트 입주민 자녀가 어린이집에 우선적으로 입소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고 있다.

성동구는 3년간 아파트 단지 내 24개소를 확충하는데 총 430억 원(시비 358억 원, 구비 72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국공립어린이집 1개 건립 시 토지매입부터 신축 공사비까지 평균 20억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지만, 이러한 방안으로 추진 시 1개소당 약 1억 5,000~2억 원의 예산으로도 설치가 가능해 총 500억 원 이상의 예산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

〈출처〉 베이비뉴스(2012.07.30.)⁴³⁾

41) 서울신문 자정고(2014.05.30.). 낡은 청소년 공부방 국공립 어린이집 변신.

<http://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140530027003>에서 2014년 6월 13일에 인출.

42) 동작뉴스닷컴(2013.09.24.). 신대방2동 구립어린이집 리모델링 개원에 이어 대방동 국공립 어린이집도 신축 확정. http://www.dongjaknews.com/sub_read.html?uid=8255에서 2014년 6월 13일에 인출.

43) 베이비뉴스(2012.07.30.). 성동구, 최초로 민간어린이집 구립으로 전환.

<http://baby.momsdiary.co.kr/news/index.html?mode=view&no=7263>에서 2014년 6월 17일에 인출.

3) 고려점

첫째, 공동주택의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경우, 최초 위탁을 기존 운영자에게 주나 그 기간은 대체로 3년 정도로 제한하고 있는 특징이 있어 공공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공동주택의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경우 임대료 문제 등으로 입주자대표와의 조율이 어려움을 고려하여 신규 단지가 생기는 곳을 중심으로 처음부터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함이 효율적으로 여겨진다.

다. 민관연대 또는 협력을 하는 경우

기업, 종교단체, 학교, 개인 등 민간이 제공하는 부지, 유휴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을 확대하여 비용을 절감하는 경우로 민간이 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하면 공공이 설치비, 운영비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민관연대 및 협력을 하는 경우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에 드는 예산은 평균 4억 5천만원으로 신축 대비 1/4까지 비용을 줄일 수 있다(서울특별시, 2013.11.)⁴⁴⁾.

1) 장단점

적은 비용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으나 종교단체의 경우 종교적 활동이나 차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서울시의 경우는 “△△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특정 종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종교적 활동을 할 수 없으며, 소속 종사자, 이용자와 참여자 등 모두에 대하여 종교적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종교 단체 연대사업자의 종교적 활동이나 차별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표준협약서 내에 관련 규정을 명문화할 것을 추진하여(서울특별시, 2014. 01)⁴⁵⁾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종교시설과 민관연대를 하는 경우에는 부지와 건물 등을 제공받아 지자체에

44) 서울특별시(2013.11.). 경과보고자료: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서울모델” 추진현황.

woman.seoul.go.kr/files/2013/11/5282d1b483dfb4.99250017.hwp에서 2014년 6월 13일에 인출.

45) 서울특별시(2014.01). 내부자료: 2014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추진 계획.

<http://opengov.seoul.go.kr/section/448975?from=settlement&start=15>에서 2014년 6월 17일에 인출.

서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종교적 영향력의 배제를 위한 노력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저희 구는 위탁체 선정 심의를 되게 정확하게 해놓으셨더라고요. 다른 곳에서는 웬만하면 위탁체랑 같이 들어가면 통과를 시키는데 계속 떨어진거죠. 제가 4번째 됐다고 하더라고요. 교회에서도 여기 다니는 신자를 뽑아야 한다는 생각 전혀 안하시고, 저희 교사들도 안다니거든요. 아이들도 10%만 교인이에요. 정확하게 구에서 짚고 넘어가시고 그 계약서가 있다 보니 교회의 터치가 없으세요. 저희는 괜찮은데, 제가 아는 몇 군데 교회에서 힘들대요, 아이나 선생님도 교회 신자를 자꾸 데리고 오려고 하고 위탁할 때 그런 부분에 압력을 오고 그런다고 하시더라고요. 국공립이 되니까 근처에 있는 어머님들이 좋아하시고, 교회 안에 있으니 더 안심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원장 D)⁴⁶⁾.”

기업 등에서 기부하여 지자체와 협력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신규 위탁체 선정 시 공개경쟁을 예외로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기업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투자에 대한 보상으로 기업이미지의 홍보, 기업체 근로자 자녀의 일정비율 우선입소 혜택, 세금감면 등을 기대하고 있다.

“저희도 민관연대잖아요. 국가 입장에서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다 전액을 기부해 주니까. 사실 기업 입장에서도 돈을 투자할 적에는 원가가 있어야 하는데, 그 얹어지는게 구마다 해석이 너무 다른 거예요. 어느 구는 20년 위탁에 40% 혜택이 있고, 이쪽은 그런 게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재단 입장에서도 두 번째 만들고 나니까 또 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는 거예요. 특별한 동기, 이런 게 없는 거지요. 마치 우리가 그쪽에 지어서 상납하는 것처럼(원장 E)⁴⁷⁾.”

“기업도 세금을 내야 할 거 아니에요.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었을 경우에,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탕감을 해준 다던가, 저희는 기부채납을 하는 거잖아요. 이런식의 탕감 정책을 규정은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땅은 구거예요. 서초구 같은 경우는 땅만 해도 엄청난, 80억인가 그렇대요. 그러니까 구 입장에서는 그걸 했고 우리는 건물을 지었고 서로 반반씩의 기여를 한 셈이지요(원장 E).”

“담당 주무관의 역량에 따라서... 담당자들이 개인적인 해석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규정이 없으니까(원장 F)⁴⁸⁾.”

46) 종교시설과 연대 또는 협력하여 설치한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임.

47) 기업과 연대 또는 협력하여 설치한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임.

48) 기존 유휴 공공건물을 활용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 원장임.

2) 사례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212개소 확충…비용절감 모델 73% 확보”

어린이집 신축사업은 1개소 신축하는데 드는 비용이 약 20억원~30억원으로 민관연대에 비해 4.3배, 공동주택에 비해 13배나 높은 비용이 들어 민관연대를 통한 서울모델이 예산 절감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민관연대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난해 10월 개원한 마포 키움어린이집은 원래 교회 교육관으로 사용되던 공간을 마포구 담당 공무원이 해당 교회가 신축해 이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교회를 방문,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방향을 설명하고 시설 무상임대를 요청해 교회에서 이를 흔쾌히 받아들여 이루어진 사례다. 소요된 시 예산은 리모델링비와 기자재비 등 약 1억 7천만 원이며, 주변 주민들의 반응도 좋고, 교회도 지역사회에 기여하게 되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또한 서울시는 올 4월에 학생 감소로 유휴교실 활용이 가능한 학교 전수조사를 실시해, 가능한 학교와 의사를 타진하던 중 성심여고에서 시청각실과 어학실습실 등 279.6㎡의 공간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해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 중에 있다.

이외에도 민간재단과 관련기관의 기부를 통한 사례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서초구립 하나푸르니 반포어린이집은 하나금융공익재단에서 30억 원을 지원해 지난 4월 개원했고, 이외에도 은행연합회,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등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에 적극 기여했다. 육군사관학교는 관사를 새로 건축하면서 관리동을 무상 임대해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자치구에 제안했다.

〈출처〉 뉴스와이어(2013.11.07.)⁴⁹⁾

“민간이 부지 무상임대…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100호점 개원”

3일 서울 구로구 오류초등학교 인근에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100호점인 '구립 새롬마을 어린이집'이 문을 연다. 새롬마을 어린이집은 연면적 599.13㎡(토지면적 344㎡)에 지상 1~4층, 정원 99명 규모로 지난해 8월부터 올해 지난달 말까지 공사가 진행됐다. 기존 공사와 달리 지역 새마을금고에서 어린이집 부지를 15년간 무상제공하고 공사비도 일부 기부한 지역참여형이라는 것이 특징이다. 동시에 민관 협력을 통해 부지매입 없이도 어린이집 확충에 성공한 비용절감형 모델이라는 점도 두드러진다. 지역 새마을금고는 이번 사업 총 소요예산인 15억7400만원 중 약 21% 수준인 3억2600만원을 기부했다.

이외에 시 9억3100만원, 국비 2억1700만원과 구비 1억원이 투입됐다. 이같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은 어린이집 전체 중 89%가 민간 운영일 정도로 이에 의존적인 실정을 개선코자 서울시가 2012년부터 시행한 것이다.

〈출처〉 뉴시스(2014.03.03.)⁵⁰⁾

3) 고려점

첫째, 민관연대의 경우 최초 위탁체 선정 시 공개경쟁예외라는 혜택을 부여하여 공공성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위탁체의 선정과 관리과정에서 공공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지자체 수준에서 보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기업의 경우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을 통해 기업이미지의 홍보, 기업체 근로자 자녀의 일정비율 우선입소 혜택, 세금감면 등을 기대한다.

셋째, 종교시설이나 기업체 등 민간의 협력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는 최초 계약 시 예상되는 영향력의 배제를 문서화할 필요가 있다.

2.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로서 사회적협동조합

국공립어린이집이 확대되면서 보육의 질과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위탁체 선정에 대한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는 가운데 최근 영리추구가 목적이 아닌 사회적협동조합이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로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으로 그 성격이 사회적 목적의 실현이라는 이타적 동기에 기반한 조합으로 이윤창출이 목적이 될 수 없는 국공립어린이집의 투명한 위탁주체로서 고려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49) 뉴스와이어(2013.11.07.).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212개소 확충…비용절감 모델 73% 확보. <http://www.newswire.co.kr/newsRead.php?no=721871>에서 2014년 6월 13일에 인출.

50) 뉴시스(2014.03.03.) 민간이 부지 무상임대…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100호점 개원. http://www.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03022001275909&cID=10200&pID=10200에서 2014년 6월 13일에 인출.

이미 이탈리아나 캐나다, 영국 등에서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어린이집을 운영함으로써 운영과 이용부모, 더 나아가 지역사회에서 역동적으로 기능하는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협동조합 중 사회적협동조합의 개념과 성격이 유사한 사회적 기업등과 비교하여 구체화하고, 현재 국내의 사회적 협동조합의 현황을 간략히 살펴보았다. 또한, 보육을 담당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해외사례들을 중심으로 그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 사회적협동조합의 개념과 특성

1) 사회적협동조합의 태동

사회적협동조합은 1965년 이탈리아의 주제페 필리페니(Giuseppe filippini)가 어려움에 처한 미성년자들을 위해 설립한 사회적 연대 협동조합인 성제마협동조합이 그 기원이다. 이러한 사회연대협동조합에 기원을 두고 이탈리아에서 1991년에 법제화된 사회적협동조합은 1970년대 초 경제위기에서 시작된 사회교육과 직업편입 욕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복지국가의 위기라는 상황에서 생겨났다. 공공부문이 이러한 서비스를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자 민간부문에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시도들이 생기게 되었고, 조합원들이 힘을 모아 공동의 이익(共益)을 만들어가는 이전의 협동조합과 달리 사회적협동조합은 조합 구성원뿐만이 아닌 사회 내의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공익(公益)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그 목적이 확대되었다(김신양, 2012:24; 이희완, 2013:208). 즉, 사회적협동조합은 출현 당시 경제적·사회적 세계화와 고령화, 실업, 여성의 사회 참여 요구라는 사회에 발생한 다양한 문제에 사회 자체가 대처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이를 극복하기 위해 발생한 조합이라고 할 수 있다(김신양, 2012:27~28).

2) 사회적협동조합의 정의

사회적협동조합의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제3호에서는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제1호⁵¹⁾의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리·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

51)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항 :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한다.

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3)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절차⁵²⁾

가) 발기인 모집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을 모집하는 것으로 시작하게 된다. 이 때,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모든 형태의 법인도 가능하며, 외국인등록번호가 있는 외국인도 가능하다. 그리고 외국법인은 외국인 출자규제 관련법률⁵³⁾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조합원이 되는 것이 가능하다. 단,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출자가 제한되기 때문에 조합원이 될 수 없고, 법인격 없는 단체(비영리민간단체 등)의 경우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나) 정관 작성 및 창립총회 개최

발기인 대회 이후에는 정관을 작성하여야 하는데, 정관에는 목적, 명칭, 사업 내용 등을 포함한 14개 항목이 필수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정관 작성 이후에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취지에 동의하는 동의자를 모집하여 창립총회를 개최한다. 창립총회는 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 설립신고 및 인가

창립총회가 의결되면 소관부처의 장에게 설립신고에 필요한 서류⁵⁴⁾를 구비하여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을 신고하게 된다. 이 때, 신고를 접수한 소관 부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인가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처리기간 내 처리가 곤란한 경우 60일 이내에서 1회에 한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52) 협동조합기본법 내용 및 협동조합 홈페이지 (www.cooperative.go.kr)

53)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외국환거래법

54) 정관사본,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사업계획서, 임원명부, 설립동의자명부, 수입·지출 예산서,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별 인수 출자좌수가 기록된 서류,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이며, 법 제56조에 따른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설립의 경우에는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을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협동조합 업무지침, 기획재정부, 2012).

라) 사무인수인계 및 출자금 납입

발기인은 설립인가 시 자체 없이 그 사무를 이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이사장이 사무를 인수하면 기일을 정하여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출자금 납입을 고지하게 되는데, 출자는 현금 또는 현물의 형태로 가능하다.⁵⁵⁾ 조합의 자본금은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으로 한다.

마) 설립등기 및 법인격 부여

설립인가 통보와 조합원의 출자가 완료되면 조합의 주사무소 관할 등기소에 설립등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설립인가 후 21일 이내에 등기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설립인가의 효력은 상실된다. 등기소에서 설립등기신청이 수리되면 해당 사회적협동조합은 법인격(비영리법인)을 부여받고 조합 설립목적에 따른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4)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사회적기업의 비교

가)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은 구성원(조합원 또는 연합회원)의 복지증진과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하며, 구성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수요에 부응한다는 목적에 있어서는 동일하지만(협동조합기본법 제5조), 설립목적 및 영리사업의 가능 여부에 따라 몇 가지 차이를 보인다.

(1) 설립목적 및 법인격 부여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복리증진과 함께 지역사회에 공헌하기 위한 조직으로 금융·보험업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설립이 가능하다. 협동조합은 (영리)법인이나,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은 설립등기와 함께 비영리법인의 법인격을 부여받는다.

(2) 주무부처 및 설립인가

협동조합의 주무부처는 기획재정부이다. 기획재정부 장관은 관계되는 중앙부

55) 조합원 1인당 1좌 이상 출자해야 하며,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30을 넘을 수 없다(협동조합기본법 제22조).

처의 장과 협의해 협동조합정책을 총괄 조정한다. 협동조합은 5인 이상의 발기인(조합원)이 모여 시도지사에게 설립신고 이후 등기를 마치는 것으로 조합설립이 가능하나,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의 인가가 있어야 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⁵⁶⁾

(3) 사업분야

협동조합은 필수적으로 조합원에 대한 교육 및 상담, 협동조합 간 협력, 지역사회 기여 등의 사업을 정관에 포함해야 한다. 이는 사회적협동조합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다만, 일반협동조합과 달리 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은 전체 사업량의 100분의 40 이상 지역사회 복지증진 및 사회서비스 관련 사업이어야 한다.

(4) 회계

매년 결산 결과 잉여금 발생 시에는 이전에 발생되었던 손실을 우선 보전한 이후 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 배당금의 순서로 처리한다. 협동조합은 자기자본의 3배가 될 때 까지 잉여금의 10% 이상을 적립하여야 하며, 이후에는 이용실적 및 출자금에 따른 배당이 가능하다. 그러나 사회적협동조합은 발생 잉여금의 30% 이상을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고, 배당이 불가능하다. 법정적립금의 적립 이후 발생하는 잉여금은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하되 필요 시 이를 사업 준비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5) 해산 및 청산

협동조합기본법에는 협동조합의 합병·분할 및 해산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조합소유 재산의 청산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협동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리가 가능하나,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재산의 처분이 불가능하고 타 법인(비영리 또는 공익) 또는 국고에 귀속해야 한다.

56) 단, 기획재정부장관은 협동조합기본법 제1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하여 일부 권한을 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부·처·청과 감사원,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및 국민권익위원회를 말함)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표 V-2-1〉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의 비교

구분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법인격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설립	시도지사 신고	기획재정부(관계부처) 인가
사업	업종 및 분야제한 없음 (금융 및 보험업 제외)	공익사업 40% 이상 수행(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재생, 주민 권리 증진 등 -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일자리 제공 - 국가·지자체 위탁사업 - 그 밖의 공익증진 사업
법정적립금	잉여금의 10/100 이상	잉여금의 30/100 이상
배당	배당 가능	배당 불가능
청산	정관에 따른 잔여재산 처리	비영리법인·국고 귀속

자료: 이희완(2013). 우리나라 사회적협동조합의 제도적 특성과 과제. 제도와 경제, 7(2), p.217.

나) 사회적협동조합 –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이라고 정의되고 있다. 설립의 목적에 있어서는 사회적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이 비슷하나, 가장 큰 차이는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이라는 점이다.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부터 제공까지 공동으로 영위함으로 조합 구성원의 권익을 위하는 조직인 협동조합과는 달리 사회적기업은 민법 또는 상법에 규정된 조직을 갖추고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하여야 하며, 총 노무비의 100분의 30이상을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에서 충당하여야 한다는 것도 사회적협동조합과의 차이점 중에 하나이다.

나. 국내 사회적협동조합의 현황

1)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이후

2012년 12월 1일에 우리나라에서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되면서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그리고 2013년 1월 15일 기획재정부는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한 ‘행복도시락 사회적협동조합’을 제1

호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인가하였다.⁵⁷⁾

‘행복도시락 사회적협동조합’은 취약계층에게 급식사업을 하는 사회적 기업들이 이에 필요한 식자재 공동구매 등을 위해 설립하였으며, 종전의 SK그룹 산하 행복나눔재단에서 개별 행복도시락센터들에 설립·운영비를 지원하고 각 센터에서 개별적으로 자재구매, 메뉴개발, 급식제공 등의 사업을 운영해왔으나, 앞으로는 행복나눔재단의 출연 및 각 조합원의 출자로 설립한 ‘행복도시락’을 통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한다.

‘행복도시락’은 대기업이 출연한 ‘후원자(행복나눔재단)’와 ‘후원받는곳(사회적 기업)’이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공동으로 운영하는 독특한 형태의 협동조합으로, ‘후원자 조합원(행복나눔재단)’은 협동조합에 대한 출자 등 지원을 통해 영세한 조합원 간의 연대 및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후원 받는 조합원’은 공동구매를 통한 원가절감 및 안정적인 식자재 확보로 질 높은 급식제공과 안정적인 취약계층 고용을 도모한다.

2)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현황

2014년 5월 말 현재 우리나라에 설립된 협동조합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2014년 6월 현재, 협동조합은 4,823개가 인가를 받았고, 그 중 사회적협동조합은 150건이 인가된 상황이다. <표 V-2-2>와 같이 일반 협동조합보다 사회적협동조합의 신청 및 인가는 눈에 띄게 낮은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는 요건만 구비되면 신고로써 설립이 가능한 일반협동조합에 비해 사회적협동조합은 소관 부처의 심사를 통하여 인가로써 설립이 되는 차이점 때문으로 보인다.

<표 V-2-2>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설립 현황 (2014. 5월말 현재)

구분	신청/신고건수	인가/수리건수
사회적협동조합	173	150
일반협동조합	4,682	4,652
일반협동조합 연합회	20	20
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	1	1
총계	4,876	4,823

자료: www.cooperative.go.kr. 주요통계 > 협동조합 설립현황(2014. 5. 31 인출)

소관부처별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신청 및 인가 건수는 <표 V-2-3>과 같다.

57)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기획재정부 제1호 사회적협동조합 탄생”, 2013. 1. 16.

〈표 V-2-3〉 소관부처별 사회적협동조합 설립현황

소관부처	신청/신고건수	인가/수리건수
기획재정부	26	23
교육부	26	22
미래창조과학부	1	1
외교부	2	2
안전행정부	3	3
문화체육관광부	9	7
농림축산식품부	8	8
산업통상자원부	6	6
보건복지부	24	22
환경부	3	3
고용노동부	43	33
여성가족부	8	8
국토교통부	3	3
해양수산부	1	1
금융위원회	1	1
중소기업청	3	3
산림청	6	4
총계	173	150

자료 : www.cooperative.go.kr. 주요통계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현황(2014. 5. 31 인출)

〈표 V-2-4〉는 기획재정부 협동조합 홈페이지 내 협동조합 설립현황에서 보육 또는 육아라는 검색어로 검색한 결과이다. 보육시설운영 및 공동육아를 사업 내용으로 하는 일반협동조합은 18개, 사회적협동조합은 3개 등 총 21개소의 보육관련 협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지역별로는 서울특별시에 6개, 광주광역시 5개, 대전광역시 4개, 세종시 1개, 경기도 3개, 전라남도와 전라북도에 각 1개씩 위치하고 있다.

〈표 V-2-4〉 보육시설운영 및 공동육아를 위한 협동조합 설립현황

연번	지역	조합명	인가(수리)일	비고
1	서울	돌아봄 사회복지협동조합	2013.03.18	
2	서울	신나는 공동육아 협동조합	2013.08.02	
3	서울	물레부모 협동조합	2013.10.10	
4	서울	다같이놀자 공동육아 협동조합	2013.11.06	
5	서울	노원어깨동무 사회적협동조합	2013.11.08	사회적협동조합
6	서울	광진아이누리애 사회적협동조합	2014.02.25	사회적협동조합
7	광주	HVC부모 협동조합	2013.02.20	
8	광주	드림아이 협동조합	2013.03.22	

(표 V-2-4 계속)

연번	지역	조합명	인가(수리)일	비고
9	광주	호반아이꿈 학부모 공동육아 협동조합	2013.05.27	
10	광주	꿈꾸는 협동조합	2013.07.10	
11	광주	방제골육아 협동조합	2013.11.20	
12	대전	소망부모협동조합	2013.06.10	
13	대전	재능키즈부모협동조합	2013.06.27	
14	대전	도로시부모협동조합	2013.06.27	
15	대전	새마음부모협동조합	2013.07.01	
16	세종시	행복나눔협동조합	2013.06.25	
17	경기도	사회적협동조합 성연복지	2013.04.29	사회적협동조합
18	경기도	아이쿱육아 협동조합	2013.07.18	
19	경기도	희솔협동조합	2013.10.07	
20	전라북도	전북생태공동체협동조합	2013.07.19	
21	전라남도	호남철도협동조합	2013.03.28	

주: www.cooperative.go.kr. 사회적협동조합 설립현황(2014. 6. 30 인출)을 토대로 재구성함.

다. 국외 사례

협동조합 중 영유아의 교육 및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적 이익 증진에 기여하는 협동조합의 사례로 이탈리아 볼로냐에 근거지를 두고 보육서비스제공을 주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인 카디아이(CADIAI)와 스페인의 몬드라곤 협동조합 등이 있다. 협동조합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형태는 단일 협동조합에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와 두 개 이상의 협동조합이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경우가 있다. 이탈리아의 볼로냐 인근에 있는 '라치코냐' 어린이집처럼 카라박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3개의 협동조합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국외사례로 이탈리아의 카라박 프로젝트와 캐나다의 보육 협동조합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한다.

1) 이탈리아의 카라박 프로젝트

이탈리아의 볼로냐는 협동조합 수가 8000개⁵⁸⁾에 이를 정도로 협동조합이 활성화 되어 있는 도시이다. 카라박 프로젝트는 이러한 협동조합들이 컨소시엄을 이루고 지방정부가 합작하여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업이다. 구체적으로 건축노

58)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1022207445&code=21010에서 2014년 5월 23일에 인출.

동자 협동조합인 치페아가 어린이집 공사를 맡고, 급식노동자 협동조합인 캄스트가 어린이집에 급식을 지원한다. 그리고 돌봄 및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협동조합인 카디아이가 교육을 담당한다. 여기에 지방정부인 볼로냐시에서 어린이집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부지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형태를 띤다.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집은 2004년에서 2014년까지 볼로냐에 22개⁵⁹⁾가 있다.

입소 가능한 보육 시작 연령은 기관마다 상이하나 36개월까지의 영유아를 돌보고 있으며 오후 6시 30분 또는 오후 8시 30분까지 연장 운영하는 어린이집도 있다. 토요일 오전 보육도 모든 어린이집이 하는 것이 아니라 몇몇 기관만 운영한다. 또한 8월에는 36개월 영유아뿐만 아니라 지역의 만 6세 아동까지 다닐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부록 3-1>로 제시한다.

가) 라치코냐(La Cicogna) 어린이집

우리나라에 많이 소개된 라치코냐(La Cicogna) 어린이집의 운영을 살펴보면, 2009년 1월에 개원했으며 볼로냐의 산 레자(San Lazzaro di Sarena)에 위치해 있다. 12개월에서 36개월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여름캠프는 2세에서 6세 아동을 위해 운영된다. 일상적인 보육 시간은 평일 오후 8시 30분까지이며 토요일 오전에도 개방된다.

나) 아바(Abba) 어린이집

아바 어린이집은 사베나(Savena)에 위치하고 있으며 2005년 9월에 설립·운영되고 있다. 12개월에서 36개월 사이의 아이들이 재원하고 있으며 여름과 크리스마스, 부활절 휴가 시에도 보육 영유아를 위한 활동들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8월 동안에는 지역에 있는 6세 유아들에게도 개방하여 운영된다.

이렇듯 카디아이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36개월까지의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지만 부모의 근무시간 등을 반영하여 오후 8시 30분 혹은 토요일 오전에도 보육하는 등 융통성 있는 운영 시간을 보이고 있다. 또한 방학 때 보육이 필요한 36개월이 넘는 유아도 6세까지 보육한다는 점에서 지역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9) 출처: CADIAI 웹페이지인 http://www.cadiai.it/bambini/nidi_dinfanzia에서 2014년 5월 23일에 인출.

2) 캐나다의 보육협동조합⁶⁰⁾

가) 보육협동조합 수

캐나다는 전 세계에서 협동조합원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로 10명 중 4명이 협동조합 또는 신용조합에 가입되어 있다.

캐나다의 보육협동조합 수를 살펴보면, 2005년 기준으로 등록된 보육협동조합의 수는 410개소에 달하며 유사 보육협동조합 116개소를 포함하여 526개소이다. 주에 따른 보육협동조합의 수는 <표 V-2-5>와 같다.

<표 V-2-5> 주별 보육협동조합 수⁶¹⁾

주	정식 보육협동조합	유사 보육협동조합	총계
브리티시 컬럼비아	0	68	68
앨버타	0	16	16
서스캐처원	104		104
매니토바	42		42
온타리오	238	32	270
퀘벡	15		15
뉴 브런즈윅	3		3
노바 스코샤	3		3
프린스 에드워드섬	1		1
뉴펀들랜드/래브라도	4		4
총계	410	116	526

자료: Anderson, J., Markell, L., Brown, C., & Stuart, M. (2007. 3). Child care co-operatives in Canada 2007. Canadian Co-operative Association.

협동조합의 변화 양상을 보면 1999년과 2004년의 5년간 협동조합의 수가 약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 반면 매출은 1500만 달러 이상으로 증가하는 등 협동조합이 활성화되어 있다(The Co-operatives and Human Resources and Social Development Canada, 2007). OPPCED(The Organization for Parent Participation in Child care and Education, Ontario)는 온타리오에 있는 보육협

60) Anderson, J., Markell, L., Brown, C., & Stuart, M. (2007. 3). Child care co-operatives in Canada 2007. Canadian Co-operative Association.

61) 캐나다 협동조합 사무국(the Co-operatives Secretariat)에서 제시한 통계치(2005년).

본 자료는 2007년 발표한 자료로 그 이후 상황으로 통계자료는 찾기는 어려우나, 제시한 참고 사이트를 찾아 사례의 내용은 최근 자료를 담았음.

동조합을 위한 단체로 세 개의 지역 협회의 자발적이고 독립적인 회원 기관이다. 약 8,000가구가 이를 이용하고 있으며 다양한 교육과 회원 간의 네트워크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나) 보육협동조합 유형

조합원들의 상품, 서비스, 직업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조직되고 운영되는 보육협동조합은 다른 협동조합들이 영리 혹은 비영리를 추구하는 것과는 달리 비영리로 운영되며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잉여자금을 통해서 비용을 충당한다. 장애아를 포함하여 영유아, 취학 전·후 연령의 아동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협동조합은 도시, 시골, 직장 및 대학가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캐나다에서는 유아원 협동조합(preschool co-op)이 가장 일반적인 유형의 보육협동조합이다. 캐나다의 구체적인 보육협동조합 형태는 아래와 같다.

〈표 V-2-6〉 캐나다 보육협동조합 유형

형태	내용
유아원 협동조합(preschool co-ops)	놀이학교, 보육원, 부모참여 유아원으로도 불리며 반나절 프로그램 제공
보육협동조합(Daycare co-ops)	초등학생까지 포함하는 방과전·후 프로그램 및 종일제 프로그램 제공
구매 및 서비스 협동조합 (Purchasing and services co-ops)	보육협동조합과 비영리 단체에 서비스를 제공

자료: Anderson, J., Markell, L., Brown, C., & Stuart, M. (2007. 3). Child care co-operatives in Canada 2007. Canadian Co-operative Association. p. 7.

다) 보육협동조합 모델

보육협동조합은 조합원의 특성에 따라 다섯 가지의 모델로 구분되는데 캐나다에서는 부모들이 자녀의 교육 및 보육에 부모들이 직접 참여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부모가 운영하는 부모-실행(Parent-run)의 보육협동조합이 대부분이다.

몇몇 협동조합에서는 부모들이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도 있다. 현재 캐나다에서는 노동자 모델(worker model)은 운영되고 있지 않으며 여러 이해 관계자 또는 연대 협동조합 모델도 상대적으로 새로 부상되고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보편화되어 있지 않다. 반면, 새로운 혁신으로 구매 또는 서비스 협동조합이 웨베에서 새롭게 시도되고 있는데 이 모델은 비영리 및 협동 보육 센터 모두에 대

해 공동 구매 및 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다.

〈표 V-2-7〉 캐나다 보육 협동조합 모델

모델	내용
부모-실행(Parent-run)	보육서비스를 받는 아동의 부모가 협동조합원임
노동자(Worker)	보육서비스를 운영하는 전문가에 의해 소유됨
여러 이해관계자 또는 연대 협동조합 (Multi-stakeholder or coops de solidarité)	협동조합에 이익을 주고 지원하는 둘 이상의 집단에 속하는 조합원(부모, 노동자, 기타 이해관계자)으로 구성됨(지역단체, 지역서비스기관대표, 시정총, 관심 있는 시민들)
다른 협동조합의 자회사 (Subsidiary of another co-operative)	서로 다른 이름일지라도 아동보육센터가 현재 협동조합에 의해 운영됨
구매 또는 서비스 협동조합 (Purchasing or servicing co-op)	웨백에서만 볼 수 있는 모델로 협동조합원이 서비스와 집단구매를 필요로 하는 아동보육센터임

자료: Anderson, J., Markell, L., Brown, C., & Stuart, M. (2007. 3). Child care co-operatives in Canada 2007. Canadian Co-operative Association. p.8.

라) 어린이집 운영 사례

보육협동조합 모델 중 부모-실행(Parent-run)인 린 벨리 학부모 참여 유아원과 여러 이해 관계자(Multi-stakeholder) 모델인 온타리오에 있는 센트레타운 부모 협동조합 어린이집의 운영 사례를 제시한다.

(1) 린 벨리 부모 참여 유아원⁶²⁾

부모실행의 유형의 사례로 린 벨리 부모참여 유아원(Lynn Valley Parent participation Preschool, British Columbia)은 브리티시컬럼비아에서 가장 오래된 유아원 중 하나로 1945년에 건립되었다.

부모에 의해 설립·유지되고 있는 비영리 기관으로 3·4세 연령별 각 한반씩 총 2반이 있으며 건물 임대료, 보수 및 유지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불하고 있다. 유아를 기관에 보낼 때 지불해야 하는 가입비는 가족 당 \$90이며 수업료는 3세반의 경우 월 \$110, 4세반의 경우는 월 \$145이다. 매우 낮은 교사 대 아동

62) Anderson, J., Markell, L., Brown, C., & Stuart, M. (2007. 3). Child care co-operatives in Canada 2007. 에서의 내용에 기초하여 다음의 사이트를 검색하여 구성함.

Canadian Co-operative Association.; Lynn Valley Parent participation Preschool, British Columbia 웹페이지. <http://www.lvppp.org/s/Home.asp>에서 2014. 5. 24. 인출.

비율로 3세반은 최대 16명, 4세반은 최대 20명을 넘지 않는다. 각 반에는 교사 한명과 3명의 부모가 팀을 이루어 일과가 운영되기 때문에 4:1 또는 5:1의 교사 대 아동 비율을 보인다. 3세반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9시 15분에서 11시 15분까지이며 4세반은 매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오전 9시 15분부터 11시 30분까지이다. 등록한 해 12월 31일까지 3명의 유아가 다니고 있어야 하며 수업은 9월에 공립학교가 시작한 다음주부터 6월 중순까지 운영된다. 재정 지원을 필요로 하는 가족들은 유아원의 교육비 납입을 위해 정부의 보육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유아원 자체적으로도 장학기금이 조성되어 있다. 부모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자녀의 유아원 운영 및 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표 V-2-8>과 같다.

<표 V-2-8> 린 밸리 유아원의 부모참여 종류

종류	내용
오리엔테이션	부모나 양육자가 의무의 날에 참여하기 전에 최소 10시간의 오리엔테이션이 필요하고 오리엔테이션은 월샵, 교실 환경 구성하기, 환영의 커피 파티를 포함하는 등 정보 제공뿐만 아니라 친목의 목적도 있다.
의무의 날 (Duty Days)	부모는 한 달에 두 번 정도 보조 교사를 해야 한다. 보조 교사를 하면서 부모는 일 년 동안 자신의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을 직접 관찰할 수 있다. 부모는 수업 시작 20분 전에 도착해서 수업준비를 위한 담임교사를 돋고 수업에 참여하며 수업이 끝난 후 30분정도 뒷정리를 한다.
월례 회의	매월 첫 째주 수요일에 월례 회의가 있으며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유아원 운영에 대해서 토의한다.
부모 교육	월례 회의 때 같이 진행되며 정보, 개인발달, 아동 발달에 대한 내용과 교실관찰을 통해 부모역할을 증진시키기 위한 생각들을 공유한다. 자격 요구사항은 매달 회의에서 의무를 가진 부모들이 지속적으로 부모 교육을 받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청소의 날	청소의 날은 매달 마지막 수요일 밤에 실시되고 회원인 부모들은 일년에 2~3번은 참여하여야 한다. 청소를 할 수 없는 경우 형제나 다른 사람을 대신 보낼 수 있다.
기금모금	부모들은 적은 수업료를 내는 대신 기금 모금에 참여하게 되며 모금된 기금은 새로운 교육 자료 구입, 건물유지·증축 비용에 사용된다.
유아원 작업	부모들은 기관 관리에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작업 선별은 작업 요구를 실행하기에 유용한 시간뿐만 아니라 부모의 관심에 근거한다.

자료: Lynn Valley Parent participation Preschool, British Columbia 웹페이지.

<http://www.lvppp.org/s/Home.asp>에서 2014. 5. 24. 인출한 자료를 재구성함.

(2) 센트레타운 부모 협동조합 어린이집, 온타리오⁶³⁾

오타와 센트레타운 부모 협동조합 어린이집(Centretown Parents' Cooperative Daycare, Ontario)은 몇 개 안되는 연방정부의 통합 기관 중 하나이고 캐나다에서 유일한 여러 이해 관계자(multi-stakeholder) 보육협동조합이다. 센트레타운은 상호지원의 개념 하에 경제적 빈곤가족을 돋고, 그러한 가족들에게 자신과 보육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책임을 지도록 교육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현재 이곳은 센트레타운 부모 협동조합 어린이집, 센테니얼 공립 학교 내 유아원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센트레타운 부모 협동조합 어린이집, 그리고 센테니얼 공립 학교에서 연장 보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부모들은 수업에 참여하지는 않지만 매주 돌아가면서 청소를 하고 위원회 및 이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V-2-9> 와 같다.

<표 V-2-9> 센트레타운 부모 협동조합 어린이집 프로그램의 대상 및 보육 시간

	보육 연령		보육 시간		
센트레타운 부모 협동조합 어린이집	Infant	6주~18개월	월요일~금요일 오전 7:30~오후 5:30		
	Toddler	18개월~2년 6개월			
센트레타운 부모 협동조합 유아원 프로그램	2년 6개월~3년 10개월		월요일~금요일 오전 7:30~오후 5:30		
센트레타운 부모 협동조합 연장 보육 프로그램	6세~12세/JK와 SK 아동 ⁶⁴⁾ *센테니얼 공립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학기중 (월~금)	방과전	오전 7:30~8:45
			방과후		오후 3:15~5:30
			여름방학 · 봄방학	오전 7:30~오후 5:30 (월~금)	

자료: Centretown Parents' Cooperative Daycare, Ontario 웹페이지.

<http://www.centretowndaycare.ca/>에서 2014. 5. 24. 인출 자료를 재구성함.

센트레타운 부모 협동조합 어린이집은 세인트 앤드류(St. Andrews) 협동조합 어린이집이 1974년 문을 닫은 후에, 부모, 어린이집 교사들과 지역 조합원들이

63) Anderson, J., Markell, L., Brown, C., & Stuart, M. (2007. 3). Child care co-operatives in Canada 2007. Canadian Co-operative Association.; Centretown Parents' Cooperative Daycare, Ontario 웹페이지. <http://www.centretowndaycare.ca/>에서 2014. 5. 24. 인출함.

64) JK아동은 센트레타운 부모 협동조합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 SK아동은 센트레타운 부모 협동조합 유아원 프로그램에 다니는 아동을 일컬음.

오타와 시내에 있는 현재의 건물을 구입하고 지방 교부금과 많은 노력을 한 끝에 1976년 2월에 개원했다. 그 후 1982년 8월에 센테니얼 공립 학교(Centennial Public School)에 유치원을 확장했다. 센트레타운 프로그램은 보육 뿐만 아니라 조합원 가족의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센트레타운 부모 협동조합 어린이집의 대다수의 가족은 캐나다에 온 지 얼마 안 된 이민 가족과 한부모, 혹은 저소득 가정이다. 따라서 어린이집에서는 부모를 지원할 수 있는 지역 사회 파트너, 자원 및 서비스와 관련된 목록들을 구비하고 연계한다.

이사회 구성원은 부모들이 맡고 있으며 이를 통해 영향과 책임감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갖는다. 센트레타운 부모 협동조합 어린이집은 3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영유아의 연령 및 보육 목적에 따라 프로그램 구성이 달라진다. 센트레타운 부모 협동조합 어린이집은 앞에 제시된 린 벨리 학부모 참여 유아원에 비해서 보육비가 상당히 높다. 보육비가 낮게 책정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센트레타운 부모 협동조합 어린이집은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그로 인해 센터는 정치적 행동(Political Action), 재정(Finance), 정책(Policy), 기금모금(Fundraising), 인적 자원(Human Resources)을 담당하는 5개의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만 센터의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사회와 회원들은 주로 기금모금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

〈표 V-2-10〉 센트레타운 부모 협동조합 어린이집 프로그램의 보육비

구분	대상 연령	보육비
보육 프로그램	Infant (6주~18개월)	일 \$76.65 / 월 \$1648
	Toddler (18개월~2년 6개월)	일 \$71.71 / 월 \$1542
	Preschool (2년 6개월~3년 10개월)	일 \$44.88 / 월 \$965
연장 보육 프로그램	JK와 SK 아동	일 \$22 / 월 \$473
	학령기 아동	일 \$20 / 월 \$430

자료: Centretown Parents' Cooperative Daycare, Ontario 웹페이지.

<http://www.centretowndaycare.ca/>에서 2014. 5. 24. 인출 자료를 재구성함.

다.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로서의 사회적협동조합

1) 사회적협동조합의 강점 및 제고사항

선행연구(김현대, 2011; 서울특별시, 2013)를 중심으로 보육협동조합의 이로운 점과 실제 운영 시 어려운 점을 구체화시켜보면 다음과 같다.

가) 사회적협동조합의 강점

(1) 조합원의 헌신과 노력이 최대한 발휘

사회적협동조합은 그 설립 목적이 구성원의 복리 증진과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하여, 조합원 등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수요에 부응하고자 하려는 점(협동조합 기본법 제4조)에 있다. 따라서 조합원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으며 협동조합의 주인이 조합원들이기 때문에 평등한 의결권을 가지고 각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서울특별시, 2013:20).

(2) 부모의 보육에 대한 높은 참여도

사회적협동조합 어린이집은 부모가 자녀의 교육 및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고 의사표시를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려해 볼 가치가 있다. 이는 아동의 발달의 최적화를 위해 가정과 교사, 그리고 아동이 삼박자를 가장 잘 이를 수 있는 형태일 뿐만 아니라 부모가 자녀의 성장하는 모습과 발달을 직접 보육 현장에서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동을 이해하고 부모역할의 기술 습득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가치가 인정된다.

(3) 보육시설의 비영리화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비영리법인⁶⁵⁾이기 때문에 보육시설이 영리화되지 않도록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또한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의 광범위한 이익과 시민들의 사회적 통합을 위해 활동하기 때문에 조합원만을 위한 조직이 아니라 지역을 위해 존재하고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모든 사회 구성원들의 통합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강조한다는 점⁶⁶⁾에서 공공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의 설립 취지와도 가장 부합된다.

(4) 협동조합 간 컨소시엄으로 인한 효과의 극대화

이탈리아 볼로냐의 카라박 프로젝트에서 볼 수 있듯이 각각의 강점을 가진 협동조합들이 컨소시엄을 이루어 어린이집을 운영할 경우 일자리 창출, 사회통합 및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목적 달성뿐만 아니라 혼자서는 어려운 일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서울특별시, 2013:20).

65) 협동조합 기본법 제 4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등은 비영리법인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66) ZingyJ의 사회혁신 이야기(2012. 11). 사회적협동조합의 잠재력을 축발하라.

<http://www.zingyj.com/author/jungwonk/>에서 2014. 5. 22. 인출함.

(5) 잉여금의 재투자

보육협동조합은 기업이 잉여금을 배당하고 영리를 추구하는 것과는 달리 잉여금을 어린이집의 질을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측면에 사용할 수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아동들에게 질 높은 보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으며 보육비를 낮출 수 있는 이점이 있다. 2005년 영국에서 발간된 보고서⁶⁷⁾에 의하면 협동조합으로 운영되는 질 높은 어린이집은 주주들에게 이익을 창출하여 배당금을 나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영리를 추구하는 다른 어린이집에 비해 낮은 보육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보고했다.

나) 사회적협동조합의 제고사항

(1) 안정되지 않은 자본금

사회적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출자금 모집에 한계가 있다. 뿐만 아니라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기 때문에 조합원의 출자금이 언제든지 빠져나갈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다른 국가에서는 출자금 환급 기간 제한, 다양한 출자 제도 인정, 의무적인 협동기금제도 운용, 금융협동조합의 협동조합 대출 및 응자 등을 통해서 자본금의 안정성을 꾀하도록 돋고 있다(서울특별시, 2013:22).

(2) 1인 1표의 더딘 의사결정

조합원 모두에게 의사결정권이 있어서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모든 조합원들의 의사를 반영하고 결정하는 과정을 거쳐야하기 때문에 조합의 규모가 클 경우에는 의견을 수렴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따라서 부모의 요구나 어린이집 운영에 신속하게 반영하고 대처해야 할 안건이 있을 시 더딘 의사결정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김현대, 2011:3).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캐나다는 2007년 캐나다에서 실시되고 있는 보육협동조합의 현황 및 보육협동조합이 잘 운영될 수 있는 지지기반들에 대한 보고서⁶⁸⁾를 발간했다. 그 보고서에 의하면 보육협동조합이 성공적으로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어린이집에 대

67) 출처: Reed, H. & Stanley, K. (2005). Co-operative social enterprise and its potential in public service delivery. IPPR, London.

68) Anderson, J., Markell, L., Brown, C., & Stuart, M. (2007. 3). Child care co-operatives in Canada 2007. Canadian Co-operative Association. p.71

한 정부의 지원, 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정부의 전략 및 계획, 비영리 기관을 위한 지방 정부의 지원, 보육협동조합을 만들기 위한 법적 제도, 보육협동조합을 만들 때 초기 재정 지원, 보육협동조합에 대한 조직적인 지원 및 보육협동조합을 할 수 있는 문화를 구축하는 것 등이라고 제시하였다. 또한 위에 제시된 것들 중에서 특히 협동조합을 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는 것과 조직적인 지원이 가장 중요한 성공요인이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하여 운영하기에 좋은 환경적 여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현재 사회적협동조합의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여건

(1)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의 강한 의지

정부는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 2013년 보건복지부의 육아관련 정책⁶⁹⁾을 살펴보면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사업으로 75개소의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 장애아전담 2개소, 리모델링 19개소에 316억원의 예산을 책정하고 집행했으며 2014년도에는 353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150개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신축하려고 하고 있다⁷⁰⁾.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

다른 국가의 보육협동조합 운영 사례를 살펴보면, 운영 시 재정과 관련된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다. 앞에 사례로 제시된 캐나다의 센트레타운 부모 협동조합 어린이집도 재정난에 부딪히고 있고, 다른 보육협동조합들도 재정마련을 위한 학부모 및 교사들의 기금모금활동이 기관 운영의 큰 축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초기 설치비, 인건비 및 운영과 관련된 비용에 많은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⁷¹⁾.

(3)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허용

우리나라는 사회적협동조합에만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를 허용하고 있다. 이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조합원간의 상호복지증진을 위해 공익 목적으로 조성되었기 때문에 총출자금의 2/3한도 내에서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를 허용하는 것으로

69) 보건복지부(2013). 제 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13년도 시행계획.

70)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2014.1.1.) “2014년도 보건복지부 예산 46조 8,995억원으로 최종 확정”.

71) 보건복지부(2014). 2014년도 보육사업안내.

로 이러한 정책적 지원⁷²⁾은 사회적협동조합이 초기 조합 구축 시 겪을 수 있는 재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되고 있다.

(4)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

우리나라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사회적협동조합에 관련된 법이 제정되어 있어 보육협동조합을 만들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따라서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인가를 받으면 조합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⁷³⁾.

나) 향후 활성화를 위한 노력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보육협동조합이 운영되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크다. 구체적인 제안점은 다음과 같다.

(1) 안정된 자본금 마련을 위한 법적 규제 마련

사회적협동조합은 조합원의 탈퇴가 자유롭기 때문에 출자금이 쉽게 빠져나가 안정된 자본금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89조에 탈퇴 조합원은 탈퇴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출자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고 청구원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고 명시하고는 있다. 그러나 출자금이 짧은 시일 내에 빠져나가는 것을 막고 안정된 자본금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조합원이 탈퇴 시 출자금 환급의 기간을 다음 회계연도가 아닌 2년 정도의 유예 기간을 두는 것으로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2)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시 사회적협동조합에 우선권 제공

국공립어린이집은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종교법인 등 비영리 법인이나 개인에게 위탁이 이루어지고 있다. 양미선 외(2012:202)의 연구에서도 거론되었듯이 시군구 보육담당자들의 36.2%는 비영리로 운영되는 사회복지법인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또한 이탈리아 정부도 공공서비스 용역 사업을 실시할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수주에 우선권을 주는 정책을 펴고 있다⁷⁴⁾. 공공성

72) 기획재정부(2012). 상생과 통합의 미래, 협동조합과 함께-협동조합 자료집.

73) 협동조합 기본법(시행 2012.12.1.)

74) 사회적경제센터(2012. 12. 13.). 사회적협동조합의 잠재력을 촉발하라.

<http://blog.makehope.org>에서 2014. 5. 28. 인출함.

을 추구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사회적 공익을 목표로 비영리로 운영되는 사회적 협동조합에 위탁 시 우선권을 주는 것은 공공성 보장 및 투명한 운영 측면에서도 충분히 고려의 가치가 있다.

(3) 보육협동조합 연합회 설립 및 활성화 지원

우리나라는 아직 보육협동조합의 걸음마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보육협동조합 연합회를 설립하여 보육협동조합의 이익과 권리를 대변하고 보육협동조합 간 운영 정보 교류, 연구 및 이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내에 보육협동조합 관련 부서를 마련하여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육협동조합을 지원해 줄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4)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다양한 세제혜택 제공

우리나라에서 사회적협동조합법이 실행된 후 사회적협동조합 신청(신고)건수/처리 건수는 2014년 5월 31일 기준으로 173/150이다. 일반협동조합의 신청(신고)건수/처리 건수가 4,682/4,652인 것에 비하면 매우 적은 수치이다⁷⁵⁾. 이렇듯 우리나라에서의 사회적협동조합은 걸음마 단계이며 특히 보육관련 사회적협동조합은 불모지나 다름없다. 사회적협동조합이 앞으로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세제혜택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탈리아 정부는 사회적협동조합 후원자들의 세금감면, 사회적협동조합 적립금에 대한 세금감면, 협동조합에 고용된 취약계층 대상 국가보험료 면제, 사회적협동조합이 발행하는 사회연대채권 매입 시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하고 있다⁷⁶⁾. 우리나라에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이 가능하도록 하고는 있으나 원칙적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이 공익사업 이외 영리행위도 60%까지(협동조합기본법 제93조) 수행할 수 있어 공익성이 제한적이므로 모든 사회적협동조합을 지정기부금단체로 하기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⁷⁷⁾. 정부가 사회적협동조합의 부족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 가능한 통로를 열어 놓기는 했지만 사회적협동조합이 활성화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세제 혜택은 필수적 요건이라 할 수 있다.

75) 협동조합 웹페이지(www.cooperative.go.kr) 협동조합현황 > 주요통계 > 통계현황(2014년 5월 말 기준).

76) 사회적경제센터(2012. 12. 13.). 사회적협동조합의 잠재력을 축발하라.

<http://blog.makelhope.org/smallbiz/830?category=47>에서 2014. 5. 28. 인출.

77) 기획재정부(2012). 상생과 통합의 미래, 협동조합과 함께-협동조합 자료집.

(5) 여러 협동조합 간 컨소시엄의 활성화

여러 협동조합이 각각의 장점을 살려 컨소시엄을 이뤄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가장 성공적인 사례가 이탈리아의 카라박 프로젝트일 것이다.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데는 다양한 이해 집단들이 서로 각각의 특성을 잘 발휘하여 화합을 이룰 때 가장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물론 이해 집단 간 갈등이 잠재적으로 내재되어 있을 수 있지만 이해 집단들이 아동의 질 높은 보육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잘 받아들이고 실행한다면 비영리를 추구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국공립어린이집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VI.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기준 개선방안

본 연구는 현행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과 실태를 파악하고, 다양하게 확대되는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 유형별 사례 고찰을 토대로 보육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을 모색함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해 위탁체의 선정관리에 대한 법적 기준을 영유아보육법과 전국 지자체의 보육조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고, 시군구 관련업무 담당자와 보육전문가 대상 의견수렴을 통하여 현재의 선정관리 기준에 대한 적절성을 가늠해보았다.

보육의 질 제고라는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나,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관리를 중심으로 지방정부, 위탁 운영체, 중앙정부라는 관련 주체 사이에 우선점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와 운영관리의 주체인 지방정부는 보육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제한된 예산 범위 안에서 최대한의 국공립어린이집 확대설치를 도모한다. 실제적인 운영체인 위탁체는 운영의 안정성을 추구한다. 중앙정부는 선정과 관리 과정에서의 공공성 확보가 주안점이다. 이러한 우선점 사이의 균형 있는 절충점을 찾는 개선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6장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의 실질적 운영의 주체인 위탁체, 그 위탁체를 선정 관리하는 과정, 그 과정에 사용되는 현행 심사기준표로 구분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의 질 제고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가. 공공성 강화를 위한 비영리 법인 우선 위탁 고려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운영주체의 비영리성을 담보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가장 관건이 된다(서문희 외, 2007:239).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시 공공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개인보다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우선적으로 운영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이는 관련 선행연구들(서문희 외, 2007:239; 양미선 외, 2012:202)에서도 지속적으로 제의되어왔던 내용이다. 서수경 외의 연구(2013:26)

에서 지적하듯 개인 위탁의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이 사유화될 소지를 안고 있고 전문성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보육의 질을 보장할 수 없다는 위험의 소지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양미선 외(2012:202)의 연구에서는 개인 위탁체 선정을 제한해야하는 또 다른 이유로 이행보증보험 의무 가입제도가 폐기됨에 따라 개인 위탁체인 국공립어린이집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를 보장받을 수 있는 안전 장치가 없음을 지적하였다. 본 조사 결과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주체가 개인위탁이 48.8%, 시군구 직영이 3.8%, 사회복지법인 및 법인·단체가 44.6%로 개인 위탁이 여전히 가장 많은 상황임을 고려할 때, 이러한 개인위탁의 안전성과 전문성 부족을 이유로 이미 개인에게 위탁자격을 제한하거나 개인 위탁의 수탁 수상한을 조례에 반영하는 지자체가 있음은 상당히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나. 위탁체의 수탁수 제한에 대한 명문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의 수탁 수 제한에 대한 규정이 보육조례에 명시될 필요가 있다. 본 조사 결과 72.8%인 163건의 지자체 조례에는 위탁체의 수탁 수 제한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있지 않았다. 국공립어린이집이 지니는 공공성과 위탁 운영체의 비영리성 담보를 위해서는 수탁이 특정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편중되어 사유화의 성격이 강화될 수 있음에 대한 선견적 대응이 필요하다. 특히 개인 위탁자의 경우 복수 수탁에 대한 금지가 이루어져야 한다.

조례분석 결과에 따르면 수탁 개수에 대한 제한규정을 조례에 두는 경우는 법인과 단체, 개인으로 구분하여 제한을 달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지자체의 상황을 감안하여 수탁 허용 개수에 대한 융통성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하나, 위탁체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관할구역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수탁 수에 대한 제한 규정을 명문화함은 공공성과 비영리성을 담보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다. 위탁체의 총 위탁 기간제한 규정 마련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통해 위탁기간을 5년으로 제시함에 따라, 전체의 54.9%인 123개 지자체 조례에는 5년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는 2012년 선행연구 (양미선 외:95) 조사시점에서는 위탁기간 3년(88.5%)이 주류를 이루던 상황과 비교할 때 영유아보육법의 개정과 더불어 달라진 부분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재

위탁을 허용 규정을 조례로 명시한 지자체가 199곳으로 88.8%를 차지하여 주류를 이루나, 재위탁 횟수에 대한 규정은 마련하지 않는 경우가 58.5%, 1회로 제한하는 경우가 36.6%로 조사되었다. 이를 종합하여보면, 1회 재위탁 만을 허용하는 경우라도 실제 위탁 기간은 최소 10년 정도가 될 수 있음을 뜻한다.

이렇듯 위탁 운영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 어린이집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도 있으나 그와 동시에 시설 운영의 해이와 사유화 경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갖게 한다. 또한 능력 있는 위탁 희망주체 간 기회를 공유하고, 형평성을 유지한다는 면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기간의 제한을 들 필요가 있다. 즉, 원칙적으로 신규위탁 5년 이후 1회에 한하여 재위탁을 허용하고, 그 이후에는 기존 위탁체도 동일한 조건에서 완전 공개경쟁 하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방안이 합리적으로 보인다. 다른 위탁 주체가 합당하지 못하거나, 지자체의 특성으로 인해 10년 이상의 지속적인 운영이 필요한 상황이더라도 공개경쟁으로 다시 위탁받을 수 있으므로 문제시 되지 않을 것이다.

2. 국공립어린이집 위탁과정

가.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의 선정은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원칙적으로 심사하도록 영유아보육법에 규정하고, 그 비율도 시행령으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선정과정에 있어서 정치적 이해관계가 개입될 소지가 있으며, 보육정책위원회의 대표성, 전문성, 의결권 문제가 제기되었다.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과정 및 결과의 객관성, 투명성, 공정성 유지를 위해 보육현장 경험과 이해,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의 자질을 지닌 보육정책위원회 구성은 그 선결조건이라 볼 수 있다.

첫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제시된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 비율을 조정하자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선행연구(양미선 외, 2012:205)의 제언처럼 본 의견수렴의 과정에서도 정치적 영향력의 배재와 전문성 부족이라는 이유로 현재의 구성 비율에서 보육전문가의 비중을 늘리고 지자체 담당 공무원, 공익을 대표하는 자와 부모, 보육교사의 비중은 낮출 것에 대한 의견이 많았다. 부모대표의 경우

개인차는 있으나 보육에 관한 이해와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점이 지적된다.

둘째, ‘공익을 대표하는 자’의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보육사업안내(2014:154)에는 공익을 대표자로 소비자단체, 시민단체, 법조인단체, 경제인단체, 의료인단체, 언론인단체 등의 종사자로 사회복지 및 보육에 대한 공익을 대표할 수 있는 자 등을 예시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예시한 공익대표가 보육에의 이해나 전문성이 있다고 간주하기는 어렵다. 본 조사과정에서도 이 범주에 대한 해석이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 중 보호자 및 공익대표가 차지하는 비율이 45% 이상으로 위탁체의 선정과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큼을 고려할 때, 최소한 보육사업안내의 예시에 ‘보육 관련 업무나 경험을 지닌 자’라는 문구를 넣어 ‘공익을 대표하는 자’라는 공익의 의미 안에 보육 관련성 여부를 구체화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이미 일부 지자체의 조례에서는 보육정책위원회의 공개모집을 명시한 경우처럼 보육정책위원회의 선정과정과 결과 공개가 요구된다. 서수경 외(2013:100)는 그 구체적 방안으로 보육정책위원회를 구성, 심사, 공표의 3단계로 나누어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구성단계에서 보육정책위원회 3배수를 추천받아 이를 공표하고, 심사단계에서는 이해집단에 속하는 부모 및 시민단체로 구성된 심사단으로 하여금 추천받은 보육정책 위원들의 적격성 여부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지역방송 등을 통해 공표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나. 위탁 심의절차 및 기준, 결과 공개 및 신규 공모 지원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 26조의 2는 업무의 위탁에 관해서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 1항 및 제 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위탁을 하는 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고하고,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을 받은 기관·단체 등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거나 위탁을 하는 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위탁체 모집공고나 심의 결과 및 선정결과의 공개는 전문성을 갖춘 유능한 위탁체가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높이고 위탁체 선정 과정에서 정치적인 영향이나 다른 요인들의 개입을 최소화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객관적이고 중립적이며 투명한 위탁체 선정을 할 수 있도록 돋는다. 그러나 짧은 공모기간과 정보접근에 대한 어려움으로 위탁체 선정 관련 정보를 공개하더라도 현재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을 제외한 보

육교사나 종사자들은 진입이 수월하지는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유능한 위탁체의 참여를 독려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질적 수준의 유지와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신규 진입을 안내하는 역할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의 지원기관을 통해 그 공모내용, 자격, 응모과정준비 등을 관심 있는 위탁 희망 주체들에게 정기적으로 안내하는 기회를 마련할 것을 제언한다.

다. 위탁체 선정 기준 개선 및 강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 24조 4항 및 5항 전단에 따른 보육정책위원회 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항목을 살펴보면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어린이집 운영계획, 대표자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위탁체 선정 심사 시 보육 관련 사업 운영 실적 서류만을 가지고는 보육 사업 이행을 위한 전문성, 공공성, 투명성, 체계성이 보장되지 못함을 지적하였다(서수경 외, 2013:99). 또한 법인 및 단체 위탁처럼 위탁체와 운영주체가 다른 경우 현재의 기준이 운영체의 기준에 초점이 두어져 있고 위탁체 관련 실적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관리체계에 포함되는 정관, 이사회 의결사항, 담당부서 및 담당자의 역할, 인사 및 회계 운영관리, 위탁전입금 지원 계획, 자체평가 등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관련 자료 등 참고기준 자료의 보강이 필요하다.

라. 재위탁체 선정과정의 기준 강화

국공립어린이집의 재위탁은 운영 기회를 개방하여 경쟁을 통한 질관리를 도모할 것인지 또는 운영 경험 평가를 통한 안정성을 우선할 것인지 사이의 균형적 선택과정으로 보인다.

1) 재위탁 심사 시 현장관찰 및 부모의견조사 등 평가 방법의 다변화

재위탁의 경우 단독평가 후 재위탁이 69.4%로 가장 선호되는 방법임을 감안할 때, 단독 평가 대상에 대한 종합적 평가가 보완되어야한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 평가기준으로 현장 관찰과 부모의견조사를 추가할 것을 제언한다.

재위탁은 위탁 기간 종료 전에 운영과정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나 현재의 기

준은 제출하는 서류에만 기초하여 평가가 이루어지므로 현장 관찰 등이 지표로 반영하여야 더욱 실제 운영현장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될 것이라는 점이다. 선행연구(양미선 외, 2012:203)에서는 이 현장관찰을 의무화하자는 의견을 개진하기도 하였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현장 관찰을 이미 지자체의 세부지표로 구성하여 평가에 반영하고 있음은 고무적이다.

재위탁 심사 기준과 관련한 쟁점 중 다른 하나는 현재 재위탁 심사기준표를 적용한 심사에서 간과, 누락된 부분이 이용아동 부모의 평가이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이용 경험자인 부모의견조사 결과를 반영함이 필요해 보인다.

이에 대해 서수경 외(2013)는 한 번의 심사로 당락이 결정되는 현재의 재위탁 방식 대신, 운영기간 동안 평가인증 결과 및 점수, 지도점검 및 안심보육 모니터링 점수, 설문지를 통한 부모 의견 수렴, 현장방문 평가 등의 점수를 골고루 재위탁 심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탁체로 하여금 평소에도 국공립어린이집을 효과적으로 운영 관리할 수 있게 유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2) 재위탁 시 위탁체 선정관리기준표 적용의 문제

현재 신규 위탁 및 변경 위탁은 반드시 공개경쟁을 해야 하지만 재위탁의 경우는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7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하면 공개경쟁 없이 재위탁 됨이 일반적이다. 또한 이 때 사용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재위탁] 공통심사 기준표’는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권장 사용이고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안정적 운영이 강점이기는 하나 국공립어린이집의 재위탁은 제한적인 기회를 특권적으로 제공하는 측면이 있는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기에 재위탁 심사는 기존 위탁체에게 운영권을 재부여할 지역부에 관한 것으로 심사기준이 더욱 엄격할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양미선 외, 2012:203)는 재위탁 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재위탁] 공통심사 기준표’ 적용의 제도화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제의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의 지자체 조례분석 결과와 지자체에서 자체 적용하는 재위탁 지표를 살펴보면 오히려 현장관찰이나 지표내용을 세분화하고 첨부자료를 강화하는 등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재위탁] 공통심사 기준표’보다 강화된 평가 지표를 적용함으로써 보육의 질적 수준 제고를 도모하는 사례들도 있다. 이를 보면 현재의 기준이 의무적용 제도화보다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더욱 실질적이라고 생각되는 면도 있으나, 또 일부에서는 미흡하고 불합리한 기준의 임의

적용이 이루어짐을 감안할 때, 최소 수준을 확보한다는 의미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재위탁] 공통심사 기준표’ 적용의 제도화는 필요하다.

마. 육아종합지원센터 중심의 국공립어린이집 위탁관리 모니터링 강화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의 공공성 확보와 질적 수준의 제고를 위해서 운영체의 운영과정에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언되었다. 양미선 외(2013:205)는 보육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차단하고 위탁체의 보육업무 수행을 지원할 중앙정부 차원의 모니터링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고, 서수경 외(2013:104)는 서울시를 중심으로 자치구 위탁관리 모니터링이라는 간접방식을 통해서 위탁받은 국공립어린이집의 질 관리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 모니터링의 범위와 내용은 위탁체, 보육정책위원회, 위탁과정, 위탁심사지표인 4개의 범주로 정하고 지자체 위탁관리 모니터링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작성, 배포함을 포함한다.

질적 수준의 제고도 좋지만,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와 위탁체 운영관리의 실질적 주체가 지자체임을 감안할 때 자칫 이러한 모니터링은 지자체나 자치구에 대한 중앙 차원의 개입으로 여겨지기 쉽다. 그러므로 질 관리를 위해 평가의 개념이 아닌 지원 개념으로의 모니터링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을 지원의 허브로 전국의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활용함이 적절할 듯하다.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국공립어린이집의 지원요구를 정기적으로 수렴하고, 그 내용을 분석하여 시의 적절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매뉴얼, 동영상 자료 등 보조적 자료를 개발 보급하고, 교육 상담 등을 병행함으로써 질적 수준의 제고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3.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표

합리적인 평가의 기준안을 명시함은 정치적 외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며, 위탁과정의 공정성, 투명성을 증진함으로써 공공성을 확보하는 하나의 방안이다.

현재 사용 중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표의 내용에 대한 의견 수렴결과를 제시한다.

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신규·변경) 공통심사 기준표 개선요구

〈표 VI-3-1〉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신규·변경) 공통심사 기준표 개선요구

합계	총점 100	현제 기준		개선 요구
		세부항목	세부항목에의 의견	
1. 어린이집 운영 체계	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육사업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보육과정에 따른 보육 사업 계획 · 보육자집에 표기된 법령과 관련한 보육 활동 계획 · 취약보육운영계획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약보육운영계획은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및 평가계획’으로 이동이 적절함. -취약보육에 영어보육이 포함됨은 체고기·필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린이집 운영 계획 및 관리에 표기된 법령과 관련한 보육 활동 계획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 -어린이집 운영계획 충침 40점의 비중이 너무 높으니 하향조정 16 12 -12, 6 점이라는 척저점이 높아 변별력이 없으므로 하향조정 10 8 6 -단일점수가 아닌 구간점수를 부여함. 예) 20-17, 16-13 등으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부항목 간 배점 조정 보육사업계획 20점을 하향조정→15점으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및 평가계획 10점을 상향조정→15점으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산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입·세출에 대한 예산편성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산편성의 적절성의 기준이 모호함 -권장기준의 예를 제시할 것

(표 VI-3-1 제속)

현제 기준				개선 요구			
심사항목	총 점	세부 항목	비점	심사항목에의 의견	세부항목에의 의견	세부항목 배점에의 의견	
	100	-평가인증 첨여 외부	· 첨여하여 통과 · 첨여(중) · 미첨여	10 7 3	-대부분의 어린이집이 평가인증을 통과하는 추체이므로 통과점수에 따라 차등점수를 부여함 -비점을 세분화함 -3년 미만의 경력에 대해서 기준이 필요함	-평가인증 첨여비점의 하향 조정 -평가인증점수반영	
		-보육 등 이동 복지 업무경력	· 10년 이상 · 10년 미만 · 5년 이상 · 5년 미만 · 3년 이상 · 5년 미만	10 8 6	-적저점이 높아 변별력이 없으므로 최저점 하향조정 -원장의 전문성이 보육관련 전공여부 주기자 -보육관련 표창 항목 삭제	-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의 배점 기준 제시 -설득없음을 0점을 부여하는지 또는 3점을 부여하는지 기준	
2. 운영체계표 및 원장 전문성	35	-보육관련 표창 또는 연구실적 -공모사업 수상 실적	· 표창 또는 연구실적 유무 · 보육관련 공모사업 수상 실적	5 4 3	-보육관련 표창 항목 삭제 -이 항목은 상위 3개 항목과 중복되는 정향이 있으므로 배점을 하향조정 -원장의 전문성 평가 가능한 기회이므로 상향조정	-설득없음을 0점을 부여하는지 또는 3점을 부여하는지 기준 -설득없음을 0점을 부여하는지 또는 3점을 부여하는지 기준 -설득없음을 0점을 부여하는지 또는 3점을 부여하는지 기준 -설득없음을 0점을 부여하는지 또는 3점을 부여하는지 기준	
		-보육사업에 대한 열의 및 태도 -운영의지 -향후 발전계획	· 소견발표로 운영능력 증명 · 평가	10 8 6		-최저점 4점으로 하향 조정	

(표 VI-3-1 제속)

현제 기준				개선 요구	
심사항목	총 점	세부 항목	배점	심사항목에의 의견	세부항목에의 의견
합계	100			-사업운영 실적 진척 없는 경우 의 배점 기준 제시 -기여도 판단기준 모호.	-사업운영 실적 기준 마련 -기여도 예시 마련
3. 운영체의 시설 운영 실적	10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 실적 -복지 및 보육관련 지역사회 기여도	10 8 6	-최저점이 높아 불법성이 없으므로 최저점 하향조정	-‘어린이집 운영 경험’ 있는 자, 인 경우 접수부여 기준 모호(점 포는 6점)
4. 운영체의 공신력	10	-도덕적 법적 공신력 -법적 건전성 및 지도점검 지적사항·민원발생에 대한 처리실태 -운영 목적이 위탁 대상 시설과의 적정성 여부	10 8 6	-관외시설의 경우 해당부서에서 지적사항·민원발생 처리실태 확인 어려움 -정당적 요소 반영한 구체적인 기준마련이 필요함 원장후보자의 배점 분리	-‘어린이집 운영 경험’ 없는 자, 예 최하점 제시 -도덕성 중요하므로 배점 상향 조정→ 15점으로
5. 운영체의 재정 능력	5	-운영체의 자산 및 부채 현황	5 4 3	-기관에 대한 세부기준 제시 -법인의 경우 득점운영 장치 확인 필요함	

주: 본 개선요구는 전국 지자체의 보육담당자와 보육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요약한 것입니다.

추가지침

- 위원별 배점 결과,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운영체를 위탁 선정함.
단, 평균점수는 소수점 이하 두 자릿수 까지 계산하고 70점 이상으로 함.
- 동점자인 경우 심사항목 중 시설장의 전문성, 지역사회 기여도, 어린이집 운영계획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함.

추가지침에의 개선요구

- '70점 이상으로'
현재의 배점기준으로는 모든 항목에서 가장 최하점을 부여받아도 57점을 받음.
변별력 확보를 위해서는 현재의 세부항목별 배점 최하점을 하향조정하거나
'70점'의 기준을 '80점'정도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음.

나.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재위탁) 공통심사 기준표 개선요구

<표 VI-3-2>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재위탁) 공통심사 기준표 개선요구

현제 기준				개선 요구			
심사항목	총점	세부 항목	비첨	심사항목에의 의견	세부항목에의 의견	세부항목 폐점에의 의견	
합계	100	-시설운영 관리	10-9 8-7 6-4	-운영체의 시설 운영 및 사업 실적 세부항목의 구체화. -교사 이직률 반영 필요함. -취직점이 높아 변별력이 없으므로 취직점 하향조정	-용어의 수장:시설→어린이집 -기준표와 세부항목별 평가 기준인의 용어통일	-평가기준안의 우수, 보통, 미흡에의 기준제시	
1. 운영체의 시설 운영 및 사업 실적	30	-보육사업 계획의 이해 여부	10-9 8-7 6-4	-보육사업 계획의 이해여부는 실체로 시설운영관리와 중첩 부분 많이 합산하여 >20점	-평가기준안의 우수, 보통, 미흡에의 기준제시		
		-회계관리의 적정성	10-9 8-7 6-4	-세부항목에 대한 구체적 기준 제시 필요함. -최근 3개월간의 회계 서류 첨부 추가	-평가기준안의 우수, 보통, 미흡에의 기준제시		

(표 VI-3-2 제속)

		현제 기준		개선 요구		
설사항목	총점	세부 항목	배점	심사항목에의 의견	세부항목 배점에의 의견	
합계	100					
2 운영체계 표명 및 원장의 전문성	30	-평기인증 참여 여부 · 평기인증 참여 · 참여여부 · 미참여 -교육 등 아동복지 업무정책 · 10년 이상 · 5년 이상~10년 미만 · 3년 이상~5년 미만 -보육관련 표장 또는 연구실적 · 표장 또는 연구실적 · 유·무 -공모사업 수상 실적 · 보육관련 공모사업 수상 실적 -보육사업에 대한 설명 및 태도 · 운영능력 · 운영방법 -운영의지 -후후 -별전개혁	10 7 3 10 8 6 5 4 3 5 4 3 5 4 3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 의 점수배점 하향 조정 ‘보육사업에 대한 열의 및 태도, 운영의지, 향후 계획, 배점상향 의견 제기 -보육관련 표장 경력이 원장의 전문성 평가기준으로 부적절한 위탁 기간 중 원장의 외부활 동 현황 반영여부(이점) 본연 의 업무에 충실 유도 -위탁기간 중 원장의 교육 현황 평가기준에 추가 -운영능력 종합평가 · 운영능력 종합평가 -운영의지 -후후 -별전개혁	-평가인증 점수와 연계하여 세분화 필요함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정책 3년 미만의 점수 배점기준 -보육 활동에 무리가 있으므로 보육활동에 무리를 야기하거나 향목을 삽제하거나 하향조정 필요 -이 향목의 준비를 위해 실체 보육활동에 무리를 야기하거나 향목을 삽제하거나 하향조정 필요 -배점의 삽제 또는 하향조정 필요 -소신발표 없이 평가하기 어려움	-점수 95점이상→10점 94~90점→9점 89점이하→8점 -배점의 하향조정 의견 (5점, 4점, 3점으로) -배점의 상향조정 의견 (10점, 8점, 6점으로)

(표 VI-3-2 계속)

현체 기준				개선 요구		
실사항목	총점	세부 항목	비점	실사항목에의 의견	세부항목에의 의견	세부항목 평점에의 의견
3. 어린이집 운영체계 25	100	-보육사업계획	· 표준보육과정에 따른 보육 사업 계획 · 보육지침에 표기된 법령과 관련한 보육 활동 계획 · 치악보육운영계획 등	10 8 6	-최저점이 높아 변별력이 없으므로 최저점 하향조정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및 평가 계획	· 전반적 시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및 평가 계획	10 8	-위탁기간 중의 현황 중심	
		-예산의 적절성	· 세입세출에 대한 예산편성의 적절성	5 4 3	-적절성의 기준 모호	
4. 운영체계 공신력 10		-도덕적·법적 공신력	-법적 진전성 및 지도점검 지적사항·민원발생에 대한 처리실태	10 8 6	-정량적 요소 반영한 구체적 기준 마련이 필요함	
		-운영 목적이 위탁 대상 시설과의 적정성 여부		-최저점이 높아 변별력이 없으므로 최저점 하향조정		
5. 운영체계 체계능력 5		-운영체계의 자산 및 부채 현황	5 4 3	-위탁 기간 동안의 재정적 기여도 반영	-전입금을 제시하였다면 실제 이행여부 반영	-자본대비 부채가 과도한 경우 감점

주: 본 개선요구는 전국 지자체의 보육담당자와 보육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요약한 것입니다.

추가지침

- 재위탁 심사결과 70점 미만일 경우, 부적격 처리, 변경 위탁(공개경쟁)을 추진함.

추가지침에의 개선요구

- '70점 이상으로'

현재의 배점기준으로는 모든 항목에서 가장 최하점을 부여받을 경우 51점을 받음.

현재기준으로 모두 중간 배점을 받을 경우는 79점임.

변별력 확보를 위해서는 현재의 세부항목별 배점 최하점을 하향조정하거나 '75점'의 기준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음.

참고문헌

- 기획재정부(2012). 상생과 통합의 미래, 협동조합과 함께-협동조합 자료집.
- 기획재정부(2012.12.1). 협동조합 업무지침.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3. 1. 16.), 기획재정부 “제1호” 사회적협동조합 탄생.
- 김기태(2013). 협동조합 유형과 모델 및 설립·전환 절차. 지방자치 통권 292호, 미래한국재단.
- 김신양(2012).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열린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생협평론 제7호, ICOOP협동조합연구소.
- 김현대(2011). 자본주의 위기의 대안 협동조합으로 기업하기-유럽의 협동조합에 서 배운다-. 서울: 한겨레경제연구소.
- 박윤자·이대균(2013). 위탁 어린이집 임용원장의 어려움과 대처하기. 열린유아육 연구, 18(3), 151-177.
- 박윤자·이대균(2014). 어린이집 원장의 위탁운영과정 탐색. 유아교육학논집, 18(1), 297-322.
- 보건복지부(2013).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13년도 시행계획.
- 보건복지부(2014a). 영유아보육법령집.
- 보건복지부(2014b). 2014년도 보육사업안내.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4.1.1.). 2014년 보건복지부 예산 46조 8,995억원으로 최종 확정.
- 서문희·신나리·유은영(2007).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및 기능 강화 방안. 육아정책 개발센터.
- 서문희·이상현·임유경(2001). 국공립보육시설 위탁운영의 현황과 개선방안. 한국 영유아보육학, 25, 165-187.
- 서수경·유정민(2013).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개선방안 연구.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 서울특별시(2013). 함께 만드는 협동조합 알아보기: 협동조합 운영 사례집.

양미선·임지희(2012).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이희완(2013). 우리나라 사회적협동조합의 제도적 특성과 과제, 제도와 경제 제7권 제2호, 한국제도·경제학회.

주택산업연구원 보도자료(2014.02.25). 신축 공동주택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활성화를 통해 아동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회분위기 확대 필요.

최윤선·김미정(2013). 공보육 질 제고를 위한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활용가능성 모색.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현정훈(2006). 사회적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간 특성비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Anderson, J., Markell, L., Brown, C., & Stuart, M. (2007. 3). Child care co-operatives in Canada 2007. Canadian Co-operative Association.

Reed, H. & Stanley, K. (2005). Co-operative social enterprise and its potential in public service delivery. IPPR, London.

<온라인 자료>

경향신문(2013. 1. 2). 이탈리아 볼로냐에선 집짓기·연극관람·육아까지 조합 통해 해결. http://news.khan.co.kr/kh_news에서 2014. 5. 22. 인출.

사회적경제센터(2012.12.13.). 사회적협동조합의 잠재력을 촉발하라. <http://blog.makehope.org>에서 2014. 5. 28. 인출.

신나는 조합 웹페이지. '협동조합 신고 및 인가현황(2월 말 기준)'. http://joyfulunion.or.kr/new/xe/coop_02/14970에서 2014. 5. 24. 인출.

협동조합 웹페이지. www.cooperative.go.kr에서 2014. 5. 28. 인출.

ZingyJ의 사회혁신 이야기(2012. 11). 사회적협동조합의 잠재력을 촉발하라. <http://www.zingyj.com/author/jungwonk/>에서 2014. 5. 22. 인출.

CADIAI 웹페이지. http://www.cadiai.it/bambini/nidi_dinfanzia에서 2014. 5. 23. 인출.

Centretown Parents' Cooperative Daycare, Ontario 웹페이지. <http://www.centretowndaycare.ca>에서 2014. 5. 24. 인출.

Lynn Valley Parent participation Preschool, British Columbia 웹페이지. <http://www.lvppp.org/s/Home.asp>에서 2014. 5. 24. 인출.

부 록

부록 1. 전국 시군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업무 담당자 대상 조사
설문지

부록 2. 국공립어린이집 관련 전국 시군구 현황조사 결과

부록 3. 이탈리아 보육 협동조합사례

부록 1. 전국 시군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업무 담당자 대상 조사 설문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기준 개선방안 연구」 수행을 위한 지자체 국공립어린이집 위탁관련 조사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는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국가정책연구기관으로 우리나라 육아정책연구를 보다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본 조사는 최근 다양한 유형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이 확충됨에 따라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현재 위탁체의 선정 기준을 검토하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전국의 국공립어린이집 위탁관련 현황 파악을 위해 시군구 위탁업무 담당자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조사내용은 통계법 제 33조 및 제 34조에 의하여 통계자료로만 이용 됩니다.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5월 육아정책연구소장

조사관련 문의

권미경 부연구위원 ☎ 02-398-7775, mkkwon@kicce.re.kr

김길숙 부연구위원 ☎ 02-398-7772, gskim@kicce.re.kr

소속시군구			
	①대도시	②중소도시	③읍면지역



육 아 정 책 연 구 소

❖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조사로 다음 자료를 요청합니다.

1. 귀 지자체의 국공립어린이집 위탁관련 보육조례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2. 귀 지자체에서 최적의 위탁체 선정을 위해 ‘위탁체 공통심사기준표’ 이외에 **보완** 또는 **특화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심사지표가 있다면 첨부하여 주십시오.

❖ 다음의 자료를 구성하여 주십시오.

3. 귀 지자체의 보육정책위원회 구성 현황을 기록하여 주십시오. 전국적인 통계를 위한 자료로 간략한 소속, 재임 기간만 기록하고, 개인 성함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구분	소속	위원회 재임기간
보호자 및 공익대표 (명) 예) 영유아 부모, 소비자단체대표, 시민단체대표,	예) 영유아 부모	1년 년 년
보육전문가 (명) 예) 대학교 교수, 연구소 연구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장,	예) 대학교 교수	2년 년 년
관계공무원(명) 예) 보육담당 공무원, 부구청장,	예) 지자체 담당공무원	2년 년 년
어린이집 원장(명) 예)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원장, 민간어린이집원장, 가정어린이집 원장	예) 민간어린이집 원장	2년 년 년
보육교사(명) 예) 국공립어린이집 교사,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교사, 민간어린이집 교사, 가정어린이집 교사	예) 국공립어린이집 교사	1년 년 년
기타		년
전체	명	

4. 귀 지자체의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현황을 기록하여 주십시오(2014년 5월 1일 기준).

* 사회적 협동조합의 경우 명칭과 운영어린이집 개소수를 기록하여 주십시오.

사회적협동조합명: ()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5. 귀지자체의 2012년부터 2015년 말까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계획을 기록하여 주십시오.

전체	신축	증개축	민간매입	민관연대	리모델링	기타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6. 최근 3년 동안 공개경쟁 예외 조항에 해당하여 최초 위탁 시 공개 경쟁하지 않고 위탁 한 사례 수를 기록하여 주십시오.

예외조항	사례
① 민간어린이집을 기부채납하는 경우 이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함	건
②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부지 또는 건물을 기부채납하거나 무상 사용하게 함	건
③ 주택법'에 따라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시 전환하기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함	건
④ 기타 (사유:)	

7. 귀 지자체에서 사용하는 재위탁 방법을 표시하여 주십시오.

- ① 단독 평가 후 재위탁 ② 자동 재위탁 ③ 공개경쟁이며 가산점부여
 ④ 완전 공개경쟁 ⑤ 기타()

8. 귀 지자체에서 사용하는 재위탁 기준을 제시하여주십시오.

❖ 현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관련 업무를 담당한 경험에 기초하여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은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만약 개선이 필요하다면 구체적인 내용을 적어주십시오.

9. 공개경쟁 예외 조항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2항 단서 조항입니다.

최초 위탁은 공개경쟁 방법에 의하나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2항 단서의 대상은 예외로 함

- ① 민간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로 전환하는 경우 기부채납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
- ②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
- ③ '주택법'에 따라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하기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

적절 개선 :

10. 선정시기

신축시설의 신규위탁 경우 개원예정일 6개월 이전, 재위탁의 경우 계약 만료일 3개월 이전 심사결정, 변경위탁은 2개월 이전 선정완료

적절 개선 :

11. 선정방법

신규위탁 및 변경위탁은 반드시 공개경쟁으로 하고 재위탁은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

적절 개선 :

12. 결과공개

위탁관련 일체의 절차 및 방법을 공개하고, 위탁업무의 공정성, 투명성을 위해 심의결과는 공개

적절 개선 :

13. 위탁기간

위탁기간은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함

적절 개선 :

다만, 원장의 임기 5년 미만인 경우 등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 가능

적절 개선 :

14. 운영체(법인·단체·개인) 신청자격

사회복지법인, 단체(육아종합지원센터 등 포함) 또는 개인

적절 개선 :

인건비 지원 상한 연령을 감안하여 과도한 연령제한 금지

적절 개선 :

15. 운영조건

신규 및 변경위탁, 재위탁 심사시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른 취약보육(영아·장애아·시간연장·다문화아동 보육) 중 2개 이상 실시를 전제로 하되, 장애아, 시간연장 보육을 권장

- 취약보육을 2개 이상 실시하지 못할 경우,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보육수요 조사를 실시 후 그 적용여부를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

적절 개선 :

16. 선정심사위원회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 원칙적으로 심사
- 단,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으며, 그 위원회의 위원이 보육정책위원회의 자격을 갖춘 경우 심사가능(「영유아보육법」제6조 참조)

적절 개선 :

17. 심사원칙

신청 운영체와 특수한 관계(배우자, 친족, 이해관계인 등)에 있는 자는 위원 제척,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의 기피신청 가능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0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참고)

적절 개선 :

심사는 집합심사를 하되, 보육정책위원회의 확인이 필요할 시 현장 확인 실시

적절 개선 :

심사결과, 신청 운영체가 모두 부적격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위탁체 재모집 결정하고, 다시 공개 모집을 위탁체를 결정

적절 개선 :

18. 심사결정

- 개별위원 점수의 최고·최저점수는 점수합산에서 제외하고 70점 이상의 최다 득점을 받은 운영체로 결정
- 결과 점수가 동점이 나온 경우에는 어린이집 운영계획, 원장의 전문성, 시설 운영 실적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심사결과는 공정성·투명성·책임성 확보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을 활용, 공개를 원칙

적절 개선 :

- ❖ 다음은 현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신규·변경] 공통심사 기준표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재위탁] 공통심사 기준표입니다. 선정관리 기준개선을 위해 심사항목 및 배점수정을 요하는 부분을 붉은색 또는 푸른색으로 표시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여 주십시오(제시된 표에 작성해 주십시오).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신규 · 변경) 공통심사 기준표

심사항목	총 점	세 부 항 목	배점
합 계	100		
1. 어린이집 운영계획	40	- 보육사업계획 • 표준보육과정에 따른 보육 사업 계획 • 보육지침에 표기된 법령과 관련한 보육 활동 계획 • 취약보육운영계획 등	20 16 12
		-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및 평가계획 • 전반적 시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및 평가계획	10 8 6
		- 예산의 적절성 • 세입 · 세출에 대한 예산편성의 적절성	10 8 6
2. 운영체 대표 및 원장 전문성	35	- 평가인증 참여 여부 • 참여하여 통과 • 참여(종) • 미참여	10 7 3
		-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경력 • 10년 이상 • 5년 이상~10년 미만 • 3년 이상~5년 미만	10 8 6
		- 보육관련 표창 또는 연구 실적 - 공모사업 수상실적 • 표창 또는 연구실적 유·무 • 보육관련 공모사업 수상실적	5 4 3
		- 보육사업에 대한 열의 및 태도 - 운영의지 - 향후 발전계획 • 소견발표로 운영능력 종합평가	10 8 6
		-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실적 - 복지 및 보육관련 지역사회 기여도	10 8 6
3. 운영체의 시설 운영 실적	10		
4. 운영체의 공신력	10	- 도덕적·법적 공신력 - 법적 건전성 및 지도점검 자적사항·민원발생에 대한 처리실태 - 운영 목적이 위탁 대상 시설과의 적정성 여부	10 8 6
5. 운영체의 재정능력	5	- 운영체의 자산 및 부채 현황	5 4 3

- 위원별 배점 결과,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운영체를 위탁선정함. 단, 평균점수는 소수점 이하 두자리 수까지 계산하고 70점 이상으로 함.
- 동점자인 경우 심사항목 중 시설장의 전문성, 지역사회 기여도, 어린이집 운영계획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함.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재위탁) 공통심사 기준표

심사항목 합 계	총점 100	세 부 항 목	배점
1. 운영체의 시설 운영 및 사업 실적	30	- 시설운영 관리	10~9 8~7 6~4
		- 보육사업 계획의 이행 여부	10~9 8~7 6~4
		- 회계관리의 적정성	10~9 8~7 6~4
2. 운영체 대표 및 원장의 전문성	30	- 평가인증 참여 여부 • 참여하여 통과 • 참여(중) • 미참여	10 7 3
		- 보육 등 아동복지 업 무경력 • 10년 이상 • 5년 이상~10년 미만 • 3년 이상~5년 미만	10 8 6
		- 보육관련 표창 또는 연구실적 - 공모사업 수상실적 • 표창 또는 연구실적 유·무 • 보육관련 공모사업 수상실적	5 4 3
		- 보육사업에 대한 열의 및 태도 - 운영의지 - 향후 발전계획 • 소견발표로 운영능력 종합평가	5 4 3
		- 보육사업계획 • 표준보육과정에 따른 보육 사업 계획 • 보육지침에 표기된 법령과 관련한 보육 활동 계획 • 취약보육운영계획 등	10 8 6
		-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에 관한 계획 및 평 가계획 • 전반적 시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및 평가계획	10 8 6
		- 예산의 적절성 • 세입·세출에 대한 예산편성의 적 절성	5 4 3
4. 운영체의 공신력	10	- 도덕적·법적 공신력 - 법적 건전성 및 지도점검 지적사항·민원발생에 대한 처리실태 - 운영 목적이 위탁 대상 시설과의 적정성 여부	10 8 6
5. 운영체의 재정능력	5	- 운영체의 자산 및 부채 현황	5 4 3

· 재위탁 심사결과 70점 미만일 경우, 부적격 처리, 변경 위탁(공개경쟁)을 추진함.

부록 2. 국공립어린이집 관련 전국 시군구 현황조사 결과

〈부록 표 2-1〉 전국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유형별 개소수

단위: 개소(%)										
지역	직영	사회 복지 법인	학교 법인	종교 법인	재단 법인	단체	개인	사회적 협동 조합	기타	계
전체	83 (3.8)	340 (15.8)	100 (4.6)	259 (12.1)	123 (5.7)	139 (6.4)	1,046 (48.8)	9 (0.4)	41 (1.9)	2,140 (100.0)
서울	.	200	43	175	84	65	103	6	21	697
부산	.	32	5	1	5	9	85	.	1	138
대구	.	10	.	4	10	.	14	.	.	38
인천	.	3	5	8	4	6	71	2	1	100
광주	1	2	.	2	.	.	10	.	.	15
대전	.	16	1	3	2	.	1	.	.	23
울산	.	2	6	.	.	5	45	.	.	58
세종	.	.	2	.	.	.	5	.	.	7
경기		31	27	34	8	38	338	1	10	487
강원	15	7	56	.	.	78
충북	.	3	.	6	.	1	40	.	.	50
충남	1	4	3	4	.	2	51	.	2	67
전북	2	8	1	6	1	2	38	.	.	58
전남	3	.	.	3	3	4	54	.	6	73
경북	29	18	2	8	2	.	54	.	.	113
경남	32	4	3	5	4	4	63	.	.	115
제주	.	.	2	.	.	3	18	.	.	23
대도시 N=65	1 (0)	264 (25.2)	55 (5.2)	193 (18.4)	105 (10.0)	80 (7.6)	315 (30.1)	8 (0.7)	23 (2.2)	1,044 (100.0)
중소 도시 N=80	53 (5.8)	56 (6.2)	43 (4.7)	51 (5.6)	17 (1.8)	59 (6.5)	606 (67.2)	1 (0.1)	15 (1.6)	901 (100.0)
읍면 지역 N=60	29 (14.8)	20 (10.2)	2 (1.0)	15 (7.6)	1 (0.5)	.	125 (64.1)	.	3 (1.5)	195 (100.0)

〈부록 표 2-2〉 전국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유형별 설치 및 계획(2012~2015)

지역	년도	신축	증개축	민간 매입	민관 연대	리모델링	기타	계
전체	2012	37	5	2	14	24	12	94
	2013	44	8	7	28	31	23	141
	2014	79	13	10	35	38	14	189
	2015	70	8	1	26	24	12	141
	합계	230	34	20	103	117	61	565
	(40.7)	(6.0)	(3.5)	(18.2)	(20.7)	(10.8)	(100.0)	
서울	2012	8	2	1	10	8	5	34
	2013	6	1	7	26	5	18	63
	2014	22	2	4	28	21	6	83
	2015	28	0	1	18	3	5	55
	계	64	5	13	82	37	34	235
부산	2012	2	0	0	0	2	1	5
	2013	0	0	0	0	2	1	3
	2014	2	0	1	0	2	1	6
	2015	2	1	0	0	1	0	4
	계	6	1	1	0	7	3	18
대구	2012	0	0	0	1	1	0	2
	2013	0	0	0	0	0	0	0
	2014	0	0	1	2	1	0	4
	2015	2	0	0	1	4	1	8
	계	2	0	1	4	6	1	14
인천	2012	4	0	0	0	1	0	5
	2013	7	0	0	0	6	0	13
	2014	5	0	0	0	2	0	7
	2015	0	0	0	1	3	0	4
	계	16	0	0	1	12	0	29
광주	2012	0	0	0	0	0	0	0
	2013	0	0	0	0	0	0	0
	2014	0	0	0	0	0	0	0
	2015	0	0	0	0	0	0	0
	계	0	0	0	0	0	0	0
대전	2012	0	0	0	0	0	0	0
	2013	0	0	0	0	0	0	0
	2014	1	1	0	0	0	0	2
	2015	0	0	0	0	0	0	0
	계	1	1	0	0	0	0	2

(부록 표 2-2 계속)

지역	년도	신축	증개축	민간 매입	민관 연대	리모 델링	기타	계
울산	2012	1	0	0	2	1	0	4
	2013	1	0	0	1	0	0	2
	2014	0	0	0	0	0	0	0
	2015	5	0	0	0	2	1	8
	계	7	0	0	3	3	1	14
세종	2012	2	0	0	0	0	0	2
	2013	2	0	0	0	0	0	2
	2014	3	0	0	0	0	0	3
	2015	2	0	0	0	0	0	2
	계	9	0	0	0	0	0	9
경기	2012	10	1	0	1	3	2	17
	2013	15	1	0	0	7	1	24
	2014	27	2	0	3	9	1	42
	2015	20	2	0	1	4	2	29
	계	72	6	0	5	23	6	112
강원	2012	2	0	0	0	2	0	4
	2013	0	1	0	0	0	2	3
	2014	3	2	0	2	1	1	9
	2015	0	0	0	3	0	0	3
	계	5	3	0	5	3	3	19
충북	2012	0	0	0	0	0	1	1
	2013	2	0	0	0	2	1	5
	2014	1	0	0	0	1	0	2
	2015	1	2	0	0	0	0	3
	계	4	2	0	0	3	2	11
충남	2012	1	0	0	0	1	0	2
	2013	1	2	0	1	1	0	5
	2014	3	2	0	0	0	2	7
	2015	2	1	0	1	1	2	7
	계	7	5	0	2	3	4	21
전북	2012	1	0	0	0	2	0	3
	2013	1	0	0	0	0	0	1
	2014	2	0	0	0	0	1	3
	2015	1	0	0	0	1	0	2
	계	5	0	0	0	3	1	9

(부록 표 2-2 계속)

지역	년도	신축	증개축	민간 매입	민관 연대	리모 델링	기타	계
전남	2012	2	1	1	0	1	3	8
	2013	4	1	0	0	5	0	10
	2014	5	1	1	0	0	1	8
	2015	3	1	0	0	0	1	5
	계	14	4	2	0	6	5	31
경북	2012	0	0	0	0	0	0	0
	2013	3	0	0	0	2	0	5
	2014	0	2	0	0	0	1	3
	2015	2	1	0	0	1	0	4
	계	5	3	0	0	3	1	12
경남	2012	1	1	0	0	1	0	3
	2013	2	2	0	0	1	0	5
	2014	4	1	0	0	1	0	6
	2015	2	0	0	0	2	0	4
	계	9	4	0	0	5	0	18
제주	2012	0	0	0	0	0	0	0
	2013	0	0	0	0	0	0	0
	2014	1	0	3	0	0	0	4
	2015	0	0	0	0	0	0	0
	계	1	0	3	0	0	0	4
대도시	2012	15	2	1	11	12	6	47
	2013	14	1	7	26	13	20	81
	2014	30	3	6	30	26	7	102
	2015	35	1	1	21	15	7	80
	계	94	7	15	88	66	40	310
중소 도시	2012	17	2	0	3	8	4	34
	2013	24	5	0	2	16	2	49
	2014	41	9	3	5	10	6	74
	2015	31	5	0	5	6	4	51
	계	113	21	3	15	40	16	208
읍면 도시	2012	5	1	1	0	4	2	13
	2013	6	2	0	0	2	1	11
	2014	8	1	1	0	2	1	13
	2015	4	2	0	0	3	1	10
	계	23	6	2	0	11	5	47

〈부록 표 2-3〉 지방보육정책위원회 구성비율

단위: 명(%)

지역	보호자 및 공익대표	보육 전문가	관계 공무원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기타	계
권장기준	45%이상	20%이하	15%이하	10%이하	10%이하		
전체	1,204 (47.1)	452 (17.7)	383 (15.0)	259 (10.1)	219 (8.6)	40 (1.6)	2,557 (100.0)
서울	144 (47.8)	59 (19.6)	45 (15.0)	30 (10.0)	21 (7.0)	2 (0.7)	301 (100.0)
부산	73 (46.5)	29 (18.5)	24 (15.3)	15 (9.6)	15 (9.6)	1 (0.6)	157 (100.0)
대구	56 (51.4)	18 (16.5)	16 (14.7)	10 (9.2)	8 (7.3)	1 (0.9)	109 (100.0)
인천	39 (39.8)	20 (20.4)	17 (17.3)	10 (10.2)	8 (8.2)	4 (4.1)	98 (100.0)
광주	12 (32.4)	8 (21.6)	7 (18.9)	8 (21.6)	2 (5.4)	0 (0.0)	37 (100.0)
대전	20 (43.5)	9 (19.6)	8 (17.4)	4 (8.7)	4 (8.7)	1 (2.2)	46 (100.0)
울산	37 (54.4)	12 (17.6)	9 (13.2)	5 (7.4)	5 (7.4)	0 (0.0)	68 (100.0)
세종	8 (53.3)	2 (13.3)	3 (20.0)	1 (6.7)	1 (6.7)	0 (0.0)	15 (100.0)
경기	171 (46.2)	71 (19.2)	51 (13.8)	35 (9.5)	35 (9.5)	7 (1.9)	370 (100.0)
강원	112 (50.2)	36 (16.1)	32 (14.3)	20 (9.0)	22 (9.9)	1 (0.4)	223 (100.0)
충북	54 (42.2)	24 (18.8)	17 (13.3)	19 (14.8)	13 (10.2)	1 (0.8)	128 (100.0)
충남	84 (48.8)	30 (17.4)	24 (14.0)	13 (7.6)	14 (8.1)	7 (4.1)	172 (100.0)
전북	75 (49.0)	25 (16.3)	22 (14.4)	16 (10.5)	13 (8.5)	2 (1.3)	153 (100.0)
전남	97 (42.4)	40 (17.5)	41 (17.9)	24 (10.5)	18 (7.9)	9 (3.9)	229 (100.0)
경북	100 (49.3)	28 (13.8)	30 (14.8)	23 (11.3)	18 (8.9)	4 (2.0)	203 (100.0)
경남	110 (50.5)	35 (16.1)	31 (14.2)	22 (10.1)	20 (9.2)	0 (0.0)	218 (100.0)
제주	12 (40.0)	6 (20.0)	6 (20.0)	4 (13.3)	2 (6.7)	0 (0.0)	30 (100.0)

(부록 표 2-3 계속)

지역	보호자 및 공익대표	보육 전문가	관계 공무원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기타	계
권장기준	45%이상	20%이하	15%이하	10%이하	10%이하		
대도시	379 (46.6)	153 (18.8)	125 (15.4)	83 (10.2)	63 (7.7)	10 (1.2)	813 (100.0)
중소도시	508 (48.4)	195 (18.6)	143 (13.6)	99 (9.4)	90 (8.6)	15 (1.4)	1050 (100.0)
읍면지역	317 (45.7)	104 (15.0)	115 (16.6)	77 (11.1)	66 (9.5)	15 (2.2)	694 (100.0)

〈부록 표 2-4〉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 평균 재임 기간

단위: 년

지역	평균(편차)				
	보호자 및 공익대표	보육전문가	관계공무원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전체	1.76(0.52)	1.98(0.60)	1.66(0.65)	1.88(1.3)	1.76(0.75)
서울	1.69(0.68)	2(0.48)	1.8(0.73)	1.69(0.81)	1.71(0.69)
부산	1.5(0.48)	1.8(0.76)	1.25(0.62)	1.53(0.93)	1.52(0.97)
대구	1.45(0.53)	1.84(1.16)	1.5(0.58)	1.59(1.09)	1.53(0.83)
인천	1.75(0.52)	2.22(0.37)	1.48(0.66)	1.83(0.44)	1.87(0.87)
광주	2(0)	2(0)	1.75(0.5)	1.75(0.5)	2(0)
대전	2(0.82)	2.25(1.26)	1.75(0.5)	2.25(1.26)	2.25(1.26)
울산	1.76(0.43)	1.8(0.45)	1.7(0.67)	1.6(0.55)	1.6(0.55)
세종	2(0)	2(0)	2(0)	2(0)	2(0)
경기	1.67(0.5)	1.98(0.63)	1.5(0.61)	1.75(0.57)	1.65(0.56)
강원	2.06(0.27)	2.14(0.41)	1.91(0.3)	2.11(0.47)	2.12(0.6)
충북	1.93(0.5)	0.5(2.09)	2.09(0.3)	0.3(1.9)	1.9(1.03)
충남	1.65(0.44)	2.1(0.8)	1.6(0.59)	1.85(1.07)	1.67(0.68)
전북	1.61(0.55)	1.69(0.48)	1.49(0.61)	1.72(0.57)	1.55(0.57)
전남	1.89(0.47)	2(0.5)	1.93(0.46)	1.94(0.54)	1.87(0.5)
경북	1.64(0.42)	2.07(0.47)	1.54(0.66)	3(3.91)	2(1.25)
경남	1.89(0.6)	1.82(0.66)	1.79(0.79)	1.71(0.84)	1.58(0.86)
제주	2(0)	2(0)	2(0)	2(0)	2(0)
대도시	1.67(0.57)	1.96(0.57)	1.96(0.69)	1.96(0.57)	1.57(0.65)
중소도시	1.74(0.48)	2.02(0.48)	2.02(0.59)	2.02(0.48)	1.65(0.7)
읍면지역	0.87(0.49)	1.94(0.49)	1.94(0.5)	1.94(0.49)	1.77(0.56)

〈부록 표 2-5〉 공개경쟁 예외 위탁현황

단위: 사례 수(%)

지역	민간어린이집 기부채납	국공립어린이집 부지 및 건물 기부채납/무상 사용	주택법에 따른 민간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기타	계
전체	9(11.2)	57(71.3)	11(13.8)	3(3.7)	80(100.0)
서울	5	30	8	1	44
대구	0	4	0	1	5
인천	0	4	0	0	4
경기	1	1	0	.	2
강원	0	2	0	.	2
충남	0	1	3	.	4
전북	0	2	0	1	3
전남	3	7	0	.	10
경북	0	6	0	.	6
대도시	5(9.2)	38(70.4)	8(14.8)	3(0.6)	54(100.0)
중소도시	1(6.6)	11(73.4)	3(20.0)	0	15(100.0)
읍면지역	3(27.2)	8(72.8)	0	0	11(100.0)

〈부록 표 2-6〉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방법

단위: 사례 수(%)

지역	단독평가 후 재위탁	자동 재위탁	공개경쟁 가산점 부여	완전 공개경쟁	기타	계
전체	142(69.4)	3(1.4)	6(2.9)	45(22.0)	9(4.3)	205(100.0)
서울	20	0	1	0	1	22
부산	12	0	1	1	0	14
대구	6	1	0	0	1	8
인천	5	0	0	3	0	8
광주	3	0	0	1	0	4
대전	2	1	0	1	0	4
울산	3	0	0	2	0	5
세종	0	0	0	1	0	1
경기	19	0	0	9	1	29
강원	8	1	1	7	1	18
충북	8	0	0	4	0	12
충남	10	0	0	4	0	14
전북	11	0	1	1	0	13
전남	13	0	0	5	1	19
경북	10	0	1	3	2	16
경남	11	0	1	3	1	16
제주	1	0	0	0	1	2
대도시	50(76.9)	2(3.1)	2(3.1)	9(13.8)	2(3.1)	65(100.0)
중소도시	49(61.3)	0(0)	1(1.2)	26(32.5)	4(5.0)	80(100.0)
읍면지역	43(71.7)	1(1.6)	3(5.0)	10(16.7)	3(5.0)	60(100.0)

부록 3. 이탈리아 보육 협동조합사례

〈부록 표 3-1〉 카디아이 어린이집(카라박 프로젝트)

	위치	보육연령	보육시간	비고
Tintoria	Minerbio	-	-	-
Vita Nuova	Sant'Agata Bolognese	3개월~36개월	오후 4:30까지	-
Giovannino	Savena	3개월~36개월	-	-
Le Nuvole	Comune Cento	3개월~36개월	-	Ferara에 위치
Iolanda Vitali	Bentivoglio	6개월~36개월	-	-
Girotondo	Pianoro (località Rastignano)	12개월~36개월	-	-
Giraluna	Sasso Marconi	12개월~36개월	-	-
Gianni Rodari	Anzola Emilia	3개월~36개월	-	-
Gatto Talete	Castel Maggiore	12개월~36개월	-	-
Aquiloni	Budrio	9개월~36개월	-	-
Maria Trebbi	San Lazzaro di Savena	12개월~36개월	-	토요일 오전 보육
Tana dei Cuccioli	San Lazzaro di Savena	12개월~36개월	-	토요일 오전 보육
Riale	Zola Predosa	-	-	-
Pippi Calzelunghe	Casalecchio di Reno	12개월~36개월	오후 8:30까지	토요일 오전 보육
Ilaria Alpi	Calderara di Reno	-	-	-
La Cicogna	San Lazzaro di Savena	12개월~36개월	오후 8:30까지	토요일 오전 보육
Balenido	Casalecchio di Reno	8개월~36개월	토요일 오전 보육	2006년 개원 5개 협동조합 컨소시엄 토요일 오전 보육
Arcobaleno dei pulcini	Via Vestri 2/1	12개월~36개월	오후 6:30까지	-
Progetto 1-6	Via Pier De' Crescenzi 14/2	12개월~36개월	-	8월에는 6세까지 보육
Pollicino	Navile	3개월~36개월	-	8월 6세까지 보육
Gaia Nido	Saragozza	3개월~36개월	-	2009년 9월 개원 5개 협동조합 컨소시엄 8월에는 6세 보육
Abba	Savena	12개월~36개월	-	2005년 9월 개원 8월에는 6세 보육

자료: 카디아이 웹페이지(<http://www.cadiai.it/bambini/>)에 있는 자료를 재구성함.

연구보고 2014-02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개선방안

발행일 2014년 8월

발행인 이 영

발행처 육아정책연구소

주 소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33 안국빌딩 7층, 8층, 10층, 11층

전화: 02) 398-7700

팩스: 02) 730-3313

<http://www.kicce.re.kr>

인쇄처 대명기획 02) 2273-1292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ISBN 979-11-85941-13-4 93370